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성폭력 무고 담론의 구성

- 언론과 온라인 공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성 세 희

성폭력 무고 담론의 구성

- 언론과 온라인 공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수 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성 세 희

성세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온라인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성폭력 범죄를 무력화하는 담론적 수단으로써 부상하는 성폭력 무고 담론을 탐구했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고소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담론과 성폭력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남성이 무고죄로 방어해야 한다는 상반된 담론의 균열에서 출발했다. 그중에서도 억울한 남성이라는 담론은 '남성-약자' 담론과 결합하면서 성폭력 무고 담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가설 아래 연구를 진행했다.

반(反) 페미니즘적인 말뭉치가 결합해 확산되는 주요 매개체는 언론과 온라인 공간이다. 무고 담론은 온라인 공간과 언론 보도를 오가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해 담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 언론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더 강력한 의제 설정자로 자리 잡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온라인 공간과 언론 보도와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성폭력 무고 담론을 탐구했다. 연구 자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보도된 언론사(4개사) 기사와 해당 기사의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2개)의 게시글과 이용자 댓글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언론사 4개사 중 3개사는 모두 성폭력 피의자를 중심으로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성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에 반대되는 무고 피의자 중심의 대항 담론을 구성했다. 언론은 형식적 객관주의란 허울 아래 무고 담론의 증폭에 가세했다. 일례로 양쪽 균형을 맞춘다는 형식적 객관주의 아래 성폭력 피의자와 무고 피의자의 발화를 모두 인용하거나, 성폭력 피의자의 관점을 투영한 수사기관의 발언 등을 함께 보도한다.

둘째,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 구성되는 성폭력 무고 담론은 언론보다 더 직접적으로 권력이 없는 남성이라는 주체의 위치를 구축한다. 댓글 작성자는 무고 피의자의 주장을 의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대상화한다. 이때 모든 여성을 비난하는 주장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여성 중 '진짜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

식으로 담론이 구성된다.

셋째, 남초 커뮤니티는 진정한 피해자인 남성만이 말할 수 있는 발화 자격을 얻고 여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을 구성한다. 사실관계나 논리보다는 애초에 남성중심적으로 전제한 오류를 신봉하며 여성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른바 '팩트(fact)'를 신봉하는 언표를 활용하나, 막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근거만으로도 주장을 정당화하는 허약한 논리 체계를 보여줬다.

언론은 무고 담론 주체의 위치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피해자 남성'에게 적극적으로 발화 자격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은 여성을 사법기관 등 권력 기관만큼이나 동등한 위치의 권력자로 상정하면서 '권력이 없는 남성'이라는 담론 주체의 위치를 형성했다.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간의 상호 담론이 매개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발화는 담론장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결론적으로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연한 여성 혐오(misogyny) 기반 담론이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무고 담론을 재생산하고 강화함을 확인했다. 언론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은 마치 성폭력을 동일선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사건처럼 대립 구도로 만들었다. 동시에 성폭력 무고 담론은 젠더 기반 폭력인 성폭력의 실재를 부정하는 반 페미니즘 현상임이 드러났다.

주요어 : 성폭력, 무고,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페미니즘

학 번 : 2018-25498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5

1. 성폭력 무고의 개념과 연구 현황 ····· 5

2. ‘남성-약자’ 담론과 반(反)페미니즘 ····· 9

3. 온라인과 언론 간 의제 설정과 파급력 ····· 12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 14

1. 연구 방법 ····· 14

2. 연구 대상 ····· 17

1) 언론 기사와 포털뉴스 댓글 ····· 17

2)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 19

제 2 장 언론보도에 나타난 ‘성폭력 무고’ 담론 ····· 21

제 1 절 언론사별 보도 내용 분석 ····· 21

1. 신문 기사의 유형별 특징 ····· 21

2. 기사 빈출 어휘 분석 ····· 25

3. 언론사 간 정보원 선별의 편차 ····· 28

제 2 절 언론이 구성한 ‘성폭력 무고’ 담론 ····· 31

1. 대상의 형성 : 무고 피의자 대 성폭력 피의자 ····· 31

1) 보수·중도 언론: 무고 피의자 ····· 31

2) 진보 언론: 성폭력 피의자 ····· 36

2. 언표 작용의 양태: 성폭력과 무고 피의자의 발화 지위 ····· 37

1) 보수·중도 언론: 진정한 무고의 ‘피해자’ ····· 37

2) 진보 언론: 성폭력 피의자 발화의 희박화 ····· 42

3. 개념의 형성: ‘맞고소’와 ‘역고소’ ····· 43
1) 보수·중도 언론과 ‘맞고소’ ····· 43
2) 진보 언론의 ‘역고소’ ····· 46
4. 전략의 구성: 남성 보호와 구조적 해결 ····· 47
1) 보수·중도 언론: 펜스룰과 사법 처분의 모순 ····· 47
2) 진보 언론: 젠더 불평등 사회 구조의 개혁 ····· 52
제 3 절 소결 ····· 54

제 3 장 뉴스 댓글에서의 성폭력 무고 담론 ····· 56
제 1 절 포털뉴스 댓글 내용의 분류 ····· 56
제 2 절 댓글 내용이 구성한 성폭력 무고 담론 ····· 60
1. 대상의 형성: 동의를 뒤집는 여성 ····· 60
2. 언표 작용의 양태: 권력이 없는 남성 ····· 64
3. 개념의 형성: 거짓말로 조작된 범죄 ····· 69
4. 전략의 형성: 무고죄 처벌강화와 자력 구제 ····· 73
제 3 절 소결 ····· 77

제 4 장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폭력 무고 담론 ····· 79
제 1 절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 분석 ····· 79
1. 커뮤니티 게시글의 유형 ····· 79
2. 게시글의 주요 형식 ····· 82
3. 게시글과 댓글 내용의 범주 ····· 85
제 2 절 ‘남초 커뮤’가 구성한 무고 담론 ····· 88
1. 대상의 형성: 발화가 금지된 꽃뱀 ····· 88
2. 언표 작용의 양태: 진정한 피해자인 남성 ····· 91
3. 개념의 형성: 남성을 파탄낸 중범죄 ····· 95
4. 전략의 형성: 사법기관과 정치권 불신 ····· 97

제 3 절 소결 ····· 102

제 5 장 결론 ····· 104
참 고 문 헌 ····· 108
Abstract ····· 136

표 목 차

[표 1] 2018년~2020년 수집된 언론사별 기사 수와 종류 ····· 19
[표 2] 2018년 - 2020년 언론사 기사 유형 ····· 21
[표 3] '단순보도' 기사의 내용 분류표 ····· 24
[표 4] 연구 대상 기사 내 빈출어휘/주요 인물/정보원 ····· 26
[표 5] 기획해설/칼럼/온라인 특화 기사의 주요 정보원 ····· 29
[표 6] 성폭력 무고 담론의 대상과 연관된 어휘군 ····· 32
[표 7] 성폭력 무고 담론의 주체와 연관된 어휘군 ····· 38
[표 8] 언론사별로 성폭력 무고를 정의하는 어휘군 ····· 43
[표 9] 성폭력 무고 담론의 전략을 서술한 어휘군 ····· 48
[표 10] 언론사별 네이버 뉴스 댓글 100건 이상 기사 건수 ····· 57
[표 11] '성폭력 무고' 기사의 댓글 범주 ····· 57
[표 12] 보배드림과 인벤 게시글 유형 ····· 79
[표 13] 보배드림에 성폭력 무고 경험을 공유한 게시글 ····· 82
[표 14] 보배드림과 인벤 댓글 내용의 범주 ····· 86

그 림 목 차

[그림 1] 보배드림 SNS 갈무리 게시글 예시 ····· 83
[그림 2] 인벤 신문 기사 게시물 예시 ····· 84
[그림 3] '직접 작성' 게시글의 예시 ····· 85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이 연구는 담론 구성의 주요 장(場)인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무고(誣告) 담론이 구성되면서 발생하는 반(反)페미니즘적인 효과를 탐구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담론과 성폭력 범죄 피고소인 중 일부는 무고(無辜)한 피해자이므로 고소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담론이 급부상했다. 이처럼 대립하는 담론의 대두는 성폭력과 무고라는 별개의 단어가 결합하면서 피/가해자 경계를 흐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성폭력 무고[1]란 기표(記票)는 마치 성폭력 사건을 꾸며낸 여성으로 인해 억울한 남성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개념처럼 굳어지는 추세이다(허민숙, 2016).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무고 담론이 부상한 배경을 파악하려면 '성폭력'이라는 개념과 범주를 규정했던 합의 과정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성폭력 범주는 사회 구성원 간 협상 여부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면서 논쟁적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성폭력의 의미는 크게 강간과 아내 구타, 매춘(성매매) 등 여성의 문제를 대변하는 용어였다(변혜정, 2004). 차츰 성폭력은 섹슈얼리티(Sexuality[2])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유·무형의 강제력 행사로서 인간의 성적 자기 결

1) 학계는 성폭력 무고를 "보복성 역고소(김보화, 2018)"나 성폭력에 대항하는 맞고소(박찬성, 2019), 혹은 "성폭력 역고소(이미경, 2012)"로 규정한다. 2016년 페미니즘 재부상 이후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반 페미니즘 진영이 꾸려지자, 성폭력 무고를 재개념화하고 남성을 약자로 정의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김선해, 2020; 김수아, 2020 참고).

2) 섹슈얼리티는 과거에 '성성'이나 '성애' 등으로 번역됐으나 현재는 원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김정혜, 2015). 주로 성적(Sexual)이라고 느끼는 감정, 또는 한 사회에서 성적 경험을 구축하는 모든 성적인 욕망, 행동, 정체성, 의미체계 및 관행의 집합체로서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차원의 구성물(양현아, 2011)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섹슈얼리티는 정치적이며 "권력 체계를 조직(Rubin, 2011)"한다.

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인 ‘협의의 성폭력’과 여기에 가정폭력을 포함한 ‘광의의 성폭력’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발전했다(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992: 변혜정, 2004에서 재인용).

그러나 1990년대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려던 여러 여성단체는 논의 과정에서 광의의 성폭력 대신 협의의 성폭력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수렴했다(신상숙, 2018). 이후 성폭력 개념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율권 침해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겪은 역사적이고 폭력적인 차별 경험을 의미화하는 전략적 언어 자원이자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으로 진화했다(엄혜진, 2009; 신상숙, 2018). 이처럼 성폭력은 사회의 불평등한 젠더 위계 속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적 피해임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추세이다.

성폭력 개념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반대로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여성단체는 일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현실을 감지하였다(강경화, 2012). 여기에 신자유주의 기조와 맞물려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은 성인이라면 누구든 자발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실천한다는 의미로 오역되었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젠더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여성) 개인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책임을 전가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아동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자원화하도록 부추기는 사회 구조 속에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성 보호주의 담론이 결합되었다(민가영, 2017)

이런 흐름 속에서 상당수 남성에게는 (특히 성인) 여성이 한국 사회의 약자라는 의식이 없다(천정환, 2016). 동시에 남성은 스스로 사회적 약자로 인식한다(박무늬·민혜영·장태훈, 2019). 약자로 정체화한 남성 집단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투운동(#Me, Too movement[3]) 초반부터

3) 국내에서는 2016년 10월 전후부터 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현실을 폭로하는 “해시태그 말하기”가 미투 시작이라는 의견(김효인, 2017)도 있다. 본래 미투운동은 2006년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여성과 아동 성폭력 생존자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다. 이후 미국에서는 2017년 말부터 본격적인 미투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JTBC에 직접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터뷰하면서 미

성폭력 고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인 남초 커뮤니티[4]가 보수 언론보다도 먼저 무고죄의 억울함이나 미투운동을 싫어하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홍찬숙·한정숙·오현미·김보명, 2019). 미투운동 초기부터 피해자다움의 신화가 재소환되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사되는 복잡한 맥락은 생략되었다(홍찬숙 외, 2019).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과 같은 담론이 부상한 배경에는 언론 보도의 영향력도 무시하기 어렵다. 국내 언론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비된다. 수많은 언론사가 저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경쟁한 결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배치 등이 일어난다(김위근·황용석(2020). 젠더 기반 폭력인 성폭력 사건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서의 언론사 간 경쟁 속에서 선정적으로 소비되었다. 2018년 전후의 미투운동 시기는 언론의 선정적인 성폭력 사건 보도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때였다. 이 시기 성폭력 피의자는 고소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 등 이른바 성폭력 역고소를 전개(김보화, 2019)했다. 이러한 성폭력 피소와 무고 고소 사건은 언론을 통해 자극적인 방식으로 중개되었다.

언론은 대체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그 의미를 (재)구성하여 가부장적인 젠더 질서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재현한다(김은경·이나영, 2015). 대중은 성폭력 무고를 인식할 때 이처럼 가부장적 젠더 질서에 부합하는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동시에 언론 보도와 상호작용하는 뉴스 이용자의 댓글도 언론 보도와 함께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김은미·조윤용·임영호·송보영, 2015). 최근에는 언론이 상호 참조하는 강력한 매체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부상 중이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남초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여성 혐오 기반 담론을 가벼이 여기기 어렵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담론이 언론의 보도로 다시 전파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투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심현정·라광현, 2018).

4) 온라인 커뮤니티는 흔히 '남초 커뮤니티' 또는 '여초 커뮤니티'로 나뉜다. 각 커뮤니티가 성별로 커뮤니티 활동을 제한하진 않지만, 대체로 커뮤니티 이용자가 한쪽 성별로 쏠린다.

한국기자협회가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 KINDS)에 2021년 1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커뮤니티 사이트”란 단어로 검색한 결과, 54개 언론사 기준 기사 1만 1821건이 집계되었다[5]. 단순 계산해도 하루 평균 커뮤니티를 인용한 언론 기사가 70건 가까이 보도된다는 의미이다. 빅카인즈 미등록 언론사가 몇백 배[6]로 많은 점을 고려하면, 커뮤니티 이용자가 아닌 뉴스 이용자도 커뮤니티가 구성하는 담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고죄가 성폭력 범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님에도, 마치 일부 거짓말하는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로만 인식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담론 구조가 형성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맥락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2018년 미투운동 시기부터 나타난 언론 보도와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 무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핀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과 무고라는 두 가지 열쇳말을 통해 검색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7].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언론은 성폭력 무고 담론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여기에는 언론이 어떤 발화자의 말뭉치를 강조하거나 배제하는지, 어떻게 성폭력과 무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유포하는지를 포함한다. 둘째,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댓글은 어떻게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성하는가? 여기에는 뉴스 내용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떤 보도 내용을 주로 인지하여 부각하고 어떤 발화가 강조되는지, 반대로 어떤 발화를 배제함으로써 언론 보도에서 구성된 무고의 담론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는 성폭력 무고 담론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여기에는 남초 커뮤니티가 무고 담론의 대상으로 형성하는 과정

---

5) 한국기자협회보, 2021년 6월 22일, ‘실검 보도’ 사라진 자리 꿰찬 ‘온라인 커뮤니티 보도’

6) 국내 언론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4,322개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언론 매체 수는 총 6,031개 사(일간지, 주간지 및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와 통신사 모두 포함)로 집계되었다(한국언론재단, 2020).

7) 이 시기 언론에 보도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라간 성폭력 사건은 수없이 많지만, 무고가 언급된 자료로 분석 대상을 좁혔다. 대표적인 사건은 유명 연예인이나 영화감독,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 및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등이다.

에서 어떤 화자의 발화가 금지되거나 강조되는지, 특정 화자의 발화 자격을 부여하는 공통의 정서 구조와 이를 형성하는 내부의 정동이 무엇인지를 포함했다. 넷째, 언론과 뉴스 댓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성된 담론은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는가? 여기에는 각자 다른 담론장에서 구성된 성폭력 무고 담론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 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공간과 언론 보도와의 상호작용을 탐구했다. 연구 대상이 된 언론 보도와 뉴스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폭력 무고 담론을 증폭시키는 주요 장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무고 담론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거나 확산되며 재생산되는지 분석했다.

제 2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성폭력 무고의 개념과 연구 현황

원래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서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8]”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형법상 무고죄는 누군가를 거짓으로 모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만약 무고죄 고소를 당한 사람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면 무고 피의자 중 대다수는 여성이며, 무고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대다수는 남성으로 나타난다(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 2019).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2017)은 “성폭력 가해자가 피소 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통칭해 성폭력 역고소[9]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8) 형법 156조 전문 (국가법령전문센터, 2021년 5월 2일 검색)
9) 김보화(2021)는 성폭력 역고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세밀하게 분류했다. 성폭

위의 의미에서 성폭력 무고는 성폭력 역고소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허민숙(2018)이 명명한 성폭력 무고는 증언 부정의에서 비롯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성폭력 (여성)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성폭력 역고소를 성폭력 무고와 비슷한 범주로 사용(김보화, 2018)하거나 검찰 발표 자료에서 인용한 성범죄 무고와 성폭력 무고란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추지현, 2017).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 고소인이 무고죄로 피소되었거나 피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무고 피의자’로 명명했다. 반대로 성폭력 범죄 혐의를 받고 고소당하거나 고소 위기에 처한 사람을 ‘성폭력 피의자’로 정리했다.

국내 학계에서 성폭력 무고와 관련된 연구가 등장한 시점은 2010년대 이후부터였다(강경화, 2012; 이미경, 2012; 강문봉, 2017; 정은경, 2017; 김보화, 2018, 2021; 허민숙, 2016, 2018, 2019; 김보화, 2021). 성폭력 무고 연구가 2010년대 집중된 배경에는 성폭력 법률의 변천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제정 시기가 1994년으로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성폭력 범죄 신고가 활발해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렸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 등이 규정하는 형법상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최협의설[10]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성폭력 범죄는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에 착수하거나 처벌하는 친고죄였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성폭력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다. 그러다 2013년 6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형법과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

력 역고소 또는 보복성 역고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을 고소한 후 가해자나 검사가 피해자를 무고·위증 등으로 고소·기소하거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 주변인이 피해자를 비롯해 피해자 주변인 등을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의미한다.

10) 법원이 성폭력 재판 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아니라, 폭행과 협박에 ‘사력을 다해’ 저항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현재까지도 성폭력 판결 전반에 위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미경, 2007).

여 개 조항을 신설 및 개정했다.[11] 이후 성폭력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 중 하나로 무고죄 고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보화(2018)는 이를 성폭력 "가해자들의 연대"로 지칭하고, 변호사업계에서 성폭력 피의자 변호가어떤 범죄보다 돈이 되는 분야라고 지적한다.

국내 성폭력 무고 연구는 무고 피의자가 실제 경험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의 성 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비판하는 연구(강경화, 2012; 정은경, 2017; 허민숙, 2016, 2017)가 주를 이뤘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성폭력 고소인이 피의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겪은 폭력이나 절차상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사건이라는 특수한 사례 안에서 성폭력 무고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을 탐지하는 건 어려웠다.

다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무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이다. 2차 가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성범죄 수사 개선 방향으로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 절차를 주장한 연구(소병도, 2017)나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처벌강화 분위기로 경찰이나 검찰의 무고 인지 수사가 증가했는지를 실증하는 연구(장다혜 외, 2015)가 이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의 과오나 대응 방식 등을 판단하는 데에는 이점이 있는 연구였으나, 마찬가지로 담론 구성에서 드러나는 대상이나 주체, 전략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성폭력 무고와 관련된 통계 등 실증 연구는 성폭력 무고 담론과 일부 연결되어 있다.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무고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성폭력 신고율이 높다는 실증 자료로 성폭력 불기소 통계를 거론하기 때문이다. 통계로 봤을 때 성폭력 범죄가 재판까지 갈 확률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낮은 편이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비율은 평균 36.17%로, 전체 형사 범죄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비율인 24.86%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12].

---

11) 법률신문, 2013년 6월 18일,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 객체 '부녀→사람'"

12) 남궁석, 20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4481호)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 사건에서의 높은 불기소율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히 고소인 개인의 도덕성과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은 최협의설처럼 형법상 강간 등 성폭력의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진다. 이로 인해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3개 중 1개꼴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영미권 학계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성폭력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한다. 이런 배경 아래 성폭력 신고가 허위일 확률을 최하 0.1%에서 최대 10% 이하일 것으로 추정한다(Belknap, 2006; Weiser, 2017). 그런데 수사 대상이 된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무혐의로 끝난다는 통계가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무고 담론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무고 사건을 통계로 실증하는 연구는 무고죄 원사건인 성폭력 사건 통계 등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17년부터 2년간 국내 성폭력 무고 단일범 사례를 분석해 실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무고 기소 비율이 낮음을 통계로 실증했다(윤덕경 외, 2019). 리삭(Lisak, 2010) 등은 10년간 성폭력 사건 136건 가운데 8건(5.9%)만이 허위신고였다는 점을 증명했다. 듀몽과 미어(Du Mont & Myhr, 2000)도 캐나다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이 대다수 실제로 벌어졌음에도 절반에서 4분의 3이 무혐의로 처리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실증 연구는 성폭력 고소 취하나 혐의없음(Unfounded Rape Allegation)을 곧 무고로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Du Mont & Myhr, 2000; Lisak & Gardinier & Nicksa & Cote, 2010; Applegate, 2013; Weiser, 2017)를 통해 성폭력 고소인을 향한 비난을 경계한다. 위의 통계 연구는 실제 성폭력 무고를 통한 2차 피해(Secondary victimization[13])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외에는 수사기관이나 일반 대중이 성폭력 무고를 인지하는데 성폭력 통념이 미치는 영향력을 설문조사로 분석한 연구(강문봉, 2017) 등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간접적으로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성폭력

13)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행동과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행위자가 행하는 (잘못된) 관행 등 성폭력 생존자에게 정신적 외상을 심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Campbell & Wasco & Ahrens & Sefl & Barnes, 2001).

통념이 성폭력 무고 담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성폭력 무고 관련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무고로 피소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경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는 수사기관의 성폭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성폭력 무고 통계 등 실증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다. 그러나 성폭력 무고 담론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2. '남성-약자' 담론과 반(反)페미니즘

한국 사회에서 청년 남성을 사회적 약자로 상정한 담론이 부상한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 이후로 보인다. 1990년대 말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시장 우위적 제도화 및 신자유주의적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 남성의 생애 전망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고도성장기 삶의 재생산 체계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했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깨졌고, 사랑과 섹슈얼리티의 연결도 취약해졌다(배은경, 2019).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남성이 여성을 정의하는 권력을 누렸던 역사적 상황과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예나 지금이나 남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남성이 권력관계에서 여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권능의 장소를 차지했다(Weeks, 1986).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층적인 맥락과 구조 속에서 '남성-약자' 담론이 부상했다. 주변화된 남성은 주류로 재편되지 못한다는 좌절감과 함께 남성성을 재구성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위치를 약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다가(多賀, 2016)는 근대사회가 능력에 따라 직무를 배분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 원리에 따라 '남성적 능력'에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하자 대다수 여성과 일부 남성은 '남자가 되지 못한 자'로 주변화되면서 노동 시장에서 남성 지배 체제의 하위 계층으로 재편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적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보유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부 남성, 그중에서도

청년 남성은 사회적 약자로 위치짓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상욱(2011)은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청년 남성의 남성성이 재편된 결과, '루저 문화'가 구성됐다고 분석한다. 청년 남성과 같은 주변화된 남성은 프레카리아트(The Precariat)로서 스스로 주류 정책 등에 의해 밀려난 희생자인 동시에 영웅이라는 모순된 정체성을 구현한다(Standing, 2011).

엄기호(2017)는 현재 "한국의 남성이 속물, 동물, 그리고 괴물"로 분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평등'은 사실상 남자 '간'의 평등 요구의 도착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 이용자들의 여성을 향한 분노는 사회적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안과 공포가 중첩되고, 착종(錯綜)된 결과(김학준, 2014)로 볼 수 있다.

김보명(2018)의 지적대로 신자유주의 시대 혐오의 정동 경제학은 주체와 타자, 다수자와 소수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적 대항 구도를 넘어서는 다층적인 맥락과 구조를 가로지른다. 여성 혐오 담론을 형성하는 남성 주체가 공유하는 온라인 담론 공간은 확증편향의 장소이며, 남성 중심 커뮤니티는 서사 구조 구축 과정을 통해 선량한 '남성-약자'와 '여성-범죄자'를 대비시키는 담론을 구축했다(김수아·이예슬, 2017).

'남성-약자' 담론은 성폭력 서사와 결합하면서 담론적 파괴력을 갖는다. 2018년 미투운동 이후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성된 담론은 '펜스룰(The Mike Pence Rule)[14]'을 필요로 하는 남성에 대한 위협이며, 무고 사건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김수아, 2018). 특히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미투운동 초기부터 무고·펜스룰·꽃뱀과 같은 단어가 여러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 등장했다.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사용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여성을 비난했다(홍찬숙 외, 2019).

---

14) 2002년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는 목사 빌리 그레이엄(Reverend Billy Graham)과 비슷한 철학을 받아들여 아내를 제외한 그 어떤 여성과 단독으로 식사하거나 음주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철칙을 천명했다(Kreis, 2020).

위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남성이 가해자인 성폭력 범죄는 성적 유혹자인 여성이 초래한 것일 뿐이며, 심지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이 사법 체계를 동원해 순진한 남성에게 덫을 씌우는 것으로 재현된다. 성폭력 범죄에서 여성이 가해자이며, 섹슈얼리티를 무기로 남성에게 권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이다(정인경, 2016). 그로 인해 약자인 남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당당위)[15]'는 성폭력 범죄자로 몰린 남성을 구제하기 위해 시위를 전개했다. 동시에 시위 목표를 '사법 정의의 실현'과 '무죄 추정의 원칙 수호'와 같은 구호로 재구성하였다. 당당위는 이처럼 시위 홍보물부터 시위 현장의 발언까지 모든 활동에서 '남성-약자' 담론을 공고하게 만드는 전략을 채택했다(김선해, 2020).

성폭력 피의자의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발화자로 나서면, 고소인의 성폭력 피해 호소를 무력화하고 '피해자 남성' 구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남승현(2019)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피의자 아내의 발화가 성폭력 피의자의 담론장 내 위치를 사법 폭력의 피해자로 재배치한다고 지적한다. 성폭력 고소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성폭력 피의자의 아내는 범죄사실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가정파괴로 피해를 재구성함으로써 담론장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선점한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반 페미니즘 담론은 '남성-약자' 담론과 긴밀하게 상호 연결된 담론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맥락과 구조 속에서 부상한 '남성-약자' 담론은 재부상한 페미니즘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페미니즘은 성별 위계 체계에 의한 불평등을 직시하고 여성 혐오를 규탄하는 수단이다. 이때 페미니스트가 성폭력을 불평등한 성별 위계 체계에 의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주장하면, 반 페미니즘 발화자는 무고를 거론하며 '남성-약자' 담론을 내세운다.

15) 당당위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안티 페미니즘 단체이다. 2018년 9월 8일 네이버 카페로 시작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당위는 2018년 9월에 신설된 이후 3달 동안 2,745개의 게시물, 2019년도에는 1,077개의 게시물이 게시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한다. 당당위는 설립날짜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총 9번의 시위와 1번의 국회 간담회, 1번의 서울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김선해, 2020).

이를 통해 불평등한 성별 위계 체계 자체를 허구로 상정한다. 이처럼 '남성-약자' 담론을 위시한 반 페미니즘 담론은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 온라인과 언론 간 의제 설정과 파급력

대중매체(Mass media)에 의해 설정된 의제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제 설정 이론(McCombs & Shaw, 1972)은 지난 수십 년간 언론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맥콤스는 매체간 의제 설정(Intermedia agenda-setting) 개념을 통해 뉴욕타임즈와 같이 영향력이 큰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McCombs, 2014: 195)는 연구로 확장했다. 매체 간 의제 설정 이론이 활자 매체 간의 연구에서 온라인 매체로 확장된 시기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된 2000년대 전후부터로 보인다. 특히 세계 선두로 초고속 인터넷 연결망을 구축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공간의 의제 설정 움직임을 포착한 연구가 다수 이뤄졌다(Lee, Lancendorfer, & Lee, 2005; Lim, J., 2006; 김성태·이영환, 2006; 이건호, 2006).

임(Lim, 2006)과 이건호(2006)는 온라인 기반의 실시간 뉴스 통신사(the online wire service)나 온라인 언론사가 신문사나 방송사처럼 언론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 매체 간 의제 설정 범위를 온라인 환경으로 확장했다. 여기에 이 등(Lee et al, 2005)은 한국에서 2000년에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와 활자 매체 간에 서로 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사용자가 여론을 이끌고 언론 매체의 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새로운 의제 설정자(agenda-setter)의 등장을 예고했다. 김성태와 이영환(2006)은 온라인 공간에서 부상한 의제를 기존 매체도 다루는 현상을 '역의제 설정(reversed agenda-setting)'으로 명명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의제 설정자는 기존 대중매체 외에도 다양한 매개체가 등장했다. 그중에서

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전 세계적인 SNS는 기성 매체 만큼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의제 설정 도구가 되었다. 이후 다수 연구(Groshek & Groshek, 2013; Conway, Kenski & Wang, 2015; Rogstad. 2016; Harder, Sevenans & Aelst, 2017; 이동환·강내원·전종우, 2017; Feezell, 2018; Towner & Muñoz, 2018)는 SNS 같은 매체가 기성 언론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고 주장했다.

SNS는 갈수록 의제 설정자로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피젤(Feezell, 2018)은 오늘날의 온라인 환경이 기존 언론의 의제 설정 능력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소 정치와 같은 무거운 의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SNS에서 구성된 의제 설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한 등(Han et al, 2017)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 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세월호 참사 사건의 의제 설정 과정에서 기존 언론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동환 등(2017)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가 영향력을 키우고 의제 설정자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매체의 다양화는 의제 설정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트위터와 같은 SNS는 기존 언론이 등한시한 화두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는 순기능을 보여준다(Rogstad, 2016). 기후 위기나 성평등처럼 주류 언론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주제가 SNS를 통해 의제로 설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효선과 이재국(2021)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등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의제 설정에 전례 없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다양한 의제가 모이고 퍼지는 주요 플랫폼이 되었으며, 기성 언론이 국민청원에 모인 주요 의제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았다. 즉, 의제 설정자가 언론이 아닌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인터넷 발달과 SNS의 등장은 기성 언론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의제 설정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SNS는 비단 기성 언론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성 언론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 분명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주요 매체

는 이제 우리 사회의 담론을 이끄는 의제 설정자로 보아야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푸코(Foucault, 1969; 1971a; 1971b)의 담론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이기형(2006)의 분석에 의하면 푸코는 담론이 다양하게 얽힌 층위에서 사회적 실재와 사건들을 형성한다는 일종의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담론이 주체와 자아, 사회관계와 지식의 체계를 형성하는 방식과 과정에 천착했다.

푸코는 담론(discours)의 기본 단위로 언표(énoncé)를 설정하고 이를 비구조적인 담론 분석의 기표임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언표로부터 출발해 우리가 분석이나 직관으로 그것이 의미를 갖는지나 어떤 규칙에 따라 병치되는지 등을 언어 표현으로 실행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의 기능(fonction d'existence)'을 의미한다(Foucault, 1969: 129). 반대로 언표를 통해 표현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도 담론을 유추할 수 있다. 발화자(voice)가 어떤 것을 말하려 하며, 어떤 것을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도록 통제되는 기제로 담론을 구성해서이다(Fairclough, 2003: 47).

이를 토대로 푸코는 담론 분석에서 네 가지 방향인 대상들과 언표 작용[16]적 법칙(주체적 위치), 개념과 전략적 선택들의 형성을 지향한다(Foucault, 1969: 168). 언표 작용적 양태는 그 지위와 제도적 정위(定位), 상황으로 형성되며, 개념은 계기(繼起)와 공존의 형태들, 그리고 간섭의 과정들을 거쳐 조직화된다(Foucault, 1969: 91-93). 허경(2016)은 푸코가 말한 언표 작용적 양태에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주체의 이런 담론

16) 허경(2016)은 'énonciation'를 '언표 행위'가 아닌 '언표 작용'으로 번역한다. 그 이유는 '언표 행위'라는 말이 여전히 그런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의 존재를 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언표 작용이란 용어는 정확히 이제까지 행위의 주체로 가정되어 왔던 무엇을 언표 작용이 발생시키는 특정한 효과, 결과로 간주하는 표현이다.

을 가능케 한 제도적 정위(定位)는 무엇인지, 또 주체가 발화할 수 있었던 다양한 상황을 질문한다.

담론의 대상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존재 법칙이 있다: 출현의 표면들, 제한의 심급들, 특이화(분화)의 그물로 지표화(Foucault, 1969: 78). 담론의 대상은 특정 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이 갖는 실증적 조건 아래에서만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허경, 2016: 100). 담론의 모든 영역은 주체의 희박화(희소화)로 인해 동등하게 열려 있거나 접근할 수 없다. 어떤 것들은 강력하게 방어되어 있으며, 다른 것들은 거의 모든 접근에 대해 열려 있고, 각자 말하는 주체에 제한 없이 제시되어 있어서다(Foucault, 1971b: 30).

푸코식 담론 분석에서 수행되는 '말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이 '말하는 주체의 위치 혹은 지위'에 관한 질문으로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누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는가'라는 질문은 다름 아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가'라는 질문이다. 푸코(1971a)가 이론화한 배제(exclusion)의 외부적인 과정, 즉 금지(interdit), 분할(partage)과 배척(rejet), 그리고 진위의 대립(l'opposition du vrai et du faux)을 통해 어떤 담론이 강화되거나 배제되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Foucault, 1971a: 14-20). 배제의 외부적인 과정 중에서 가장 명백하고 가장 친숙한 건 금기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 상황에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아무나 무엇에 대해서든 다 말할 수 없다(Foucault, 1971b: 21). 이처럼 푸코의 담론 분석은 말하는 주체의 자격 부여와 형성 과정을 탐구한다(허경, 2016: 106-107).

마지막으로 전략의 형성을 탐구할 때, 푸코는 담론의 가능한 회절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다시 양립 불가능한 점, 등가성의 점, 체계화의 연결점으로 나뉜다. 실제로 현실화된 이론적 선택을 결정하려면 비담론적 실천의 장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 담론의 전유 체계 및 과정, 담론과 관련된 욕망의 가능한 위치를 특징지어야 한다(허경, 2016: 123-125).

페어클로우(Fairclough, 1995; 2001; 2003; 2010)는 푸코의 담론 이론에 영향을 받아 추상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담론 질서의 연속성과 변화에 주목하고, 특정한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바에 관심을 가졌다(Fairclough, 2003: 18). 그중에서도 다양한 장르(genres)와 담론의 결합에 의한 텍스트의 일반적인 불균질성이 구성된다는 상호담론성(interdiscursivity) 개념을 주창했다(Fairclough, 2010: 94). 페어클로우는 장르와 담론이 끝없이 결합하고 재결합하는 상호담론성이 권력과 경합하거나 권력에 의해서 확장성을 제한받는다고 설명한다.

상호담론성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한 측면으로, 어떤 장르나 담론 및 스타일을 끌어들이는지에 따라 어떻게 담론이 실현되는지 보여준다(Fairclough, 2010: 234). 상호담론성은 하나의 사회제도에서 지배적인 담론유형이 이전에는 다른 담론 유형이 지배적이었던 다른 사회 제도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신진욱, 2011).

이 연구에서는 페어클로우의 담론 분석 틀인 '자주 쓰기(overwording)'도 활용했다. 텍스트 속에서 주로 동사(increase, boost, develop 등)를 중심으로 문장 속에서 반복된 단어에 주목했다. 비정상적으로 고급 어휘를 사용했거나 동의어에 가까운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Fairclough, 2001: 96). 주로 분석하려는 말뭉치(text) 속에서 핵심 낱말(keywords)을 찾아내고, 핵심 낱말과 다른 낱말 사이에 변별력 있는 이음말(collocation)을 조사했다(Fairclough, 2003: 26).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직접적인 언어 내적 맥락(co-text)과 발화, 텍스트, 장르, 담론 간 상호텍스트적인 관계에 중점을 둔다. 즉 "어떤 텍스트가 '말한 것(said)'은 '말하지 않았(unsaid)'으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말한 것'(Fairclough, 2003)"이다. 이러한 언어의 조합은 일정 의미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자주 나타나는 어휘와 문법, 결합, 텍스트 구조를 분석해 해당 언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요약하면, 푸코의 담론 분석 방법을 토대로 분석 자료 속에서 어떤 담론을 강화하거나 배제하는지, 또 어떤 형태의 권력과 특정 질서를 재생산하는지 연구했다. 즉,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를 분석하고, 누가 발

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반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희박화된 주체의 위치를 함께 고려했다. 동시에 페어클로우의 담론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이 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와 담론 간의 상호담론성이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이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 의해 발화된 언표가 어떤 담론 효과를 낳는지 드러냈다.

2. 연구 대상

1) 언론 기사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언론 기사와 댓글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17]를 통해 수집됐다. 연구 대상이 된 언론사는 총 네 곳으로 일간지 세 곳과 뉴스통신사 한 곳이다. 일간지는 보도 성향상 보수와 중도, 진보로 분류되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그리고 경향신문이다. 뉴스통신사는 뉴스통신진흥법이 규정한 국가 기간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도 포함했다.

연합뉴스는 국내 언론사 210여 곳,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뉴미디어 110여 곳,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80여 곳, 민간기업 280여 곳에 매일 평균 3,000여 건의 뉴스를 공급한다[18]. 민영 언론사와는 다르게 단신 기사 등을 빠르게 전달하는 뉴스 도매상[19]이지만, 포털 사이트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소매 영업도 병행한다(임종섭, 2019).

연합뉴스 기사는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마다 집계하는 '가장 많이 본 기사' 순위에도 매일 등장한다[20]. 뉴스 도매상인 통신

---

17) 홈페이지 주소: https://www.naver.com/

18) 연합뉴스 회사 소개 https://www.yna.co.kr/aboutus/company

19) 연합뉴스는 통신사로서 신문과 방송 등에 실릴 단신 기사를 유료로 제공하는 언론사이다. 국내 언론사 기자 가운데 80.4%가 매일같이 연합뉴스 원본 기사를 이용(방정배·강형구, 2008; 김은주·방정배, 2010에서 재인용)해 자사 기사를 작성한다.

20) 다만 2021년 7월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연합뉴스가 기업과 홍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를 '콘텐츠 제휴사'에서 '검색 제휴사'로 강등했다. 그 여파로 11월 18일부터 32일간 포털 편집 뉴스 화면에서 연합뉴스 기사 노출이 중단되었다.

사의 특성상 하루 평균 출고된 기사 건수는 일간지나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두세 배 이상 많다[21]. 댓글 분석이 함께 이뤄지는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연합뉴스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기사 검색 기간은 미투운동이 시작한 해인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치이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무고'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이 가운데 성폭력과 관련 없는 내용이거나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했다[22]. 정보 전달 성격이 강한 단순보도 기사는 기사 내용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용 분류를 통해 전체적인 기사 보도 방향 등을 파악했다.[23]

이 기간에 수집된 기사 건수는 총 509건이며, 이 가운데 연합뉴스가 225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동아일보가 112건(22.1%), 한국일보가 96건(18.8%), 경향신문이 76건(15%)으로 집계되었다.

언론사별 기사 건수는 표 1처럼 미투운동이 부상하던 2018년에 211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과 2020년 각 173건(33.8%)과 125건(24.8%)으로 차츰 감소했다. 언론 보도 건수가 2018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원인은 성폭력과 무고 사건을 향한 대중의 관심도와 연결되어 보인다. 2018년 미투운동 시기에 언론 보도 건수가 절정으로 치달은 이후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지면서 차츰 보도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

21) 연합뉴스는 일평균 단신 기사 위주로 3,000건을 보도하는 통신사이다. 이로 인해 균형적 보도와 복합 매체(multimedia)를 기반으로 한 다층적인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 임종섭(2019)은 연합뉴스가 균형적 보도를 중시하면서도 관련 현안을 밀도 있게 다루는 롱폼 저널리즘(long-form journalism)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2) 네이버에 "무고"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고(無辜)한 생명"과 같이 동음이의어로서의 '무고'를 사용한 기사도 초기 검색 결과에 집계됐다. 이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없는 단어이므로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23) '단순보도' 기사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건 보도하는 기사도 존재한다. 예컨대 연합뉴스와 같은 뉴스통신사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같은 내용에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첨부해 기사를 송고한다. 이때 기사 제목 뒤편에 (1보) (2보) (종합) (종합 2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한다. 그러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 등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는 이러한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포털에서 주요 기사로 선정한 기사를 읽게 된다. 별도의 기사로 인지할 확률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런 형태의 기사도 중복 기사로 삭제하지 않고 단순보도 집계에 포함했다.

[표 1] 2018년~2020년 수집된 언론사별 기사 수와 종류(단위: 건, %)

언론사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건)	비율(%)
경향신문	36	19	21	76	15
동아일보	54	35	23	112	22.1
연합뉴스	93	84	48	225	44.1
한국일보	28	35	33	96	18.8
소계	211	173	125	509	100

한편 네이버 댓글 건수 1,000개 이상인 기사(부록 2 참조)는 총 27건이다. 포털 사이트에 달린 뉴스 댓글이 1,000개 이상이라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 27건 중 연합뉴스 기사는 15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한국일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각 4건으로 같았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90년생 김지훈' 등장…男女대결로 몰아가는 '유투 운동'(연합뉴스, 2018년 3월 25일)으로 댓글 수는 1만 7,178건이었다. 그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논·담]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한국일보, 2018년 3월 15일)으로 댓글 수는 7,627건이었다.

2)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온라인 자료는 온라인 커뮤니티[24] 게시물과 댓글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국내 커뮤니티 중 두 곳으로 주요 남초 커뮤니티인 '보배드림[25]'과 '인벤[26]'을 선택했다. 남초 커뮤니티는 모두 공개된 자료로서 누구나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모든 글을 열람할 수 있다. 보배드림은 중고자동차 거래 정보를 공유하던 커뮤니티로 서로 "형님" 혹은 "아재들"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남성연대를 구성한다(남승현, 2019). 위와 같은 호칭과 기혼임을 암시하는 게시글 등을 통해 주 사용

24) 온라인 커뮤니티란 홈페이지나 카페와 같은 특정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것으로, 현실과 유사한 공동체(이헌아·류석진, 2013)를 뜻한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순위를 알 수 있는 '오늘의 베스트' 사이트를 참고해 분석 대상을 선정했다.
25) 보배드림 홈페이지: https://www.bobaedream.co.kr/
26) 인벤 홈페이지: https://www.inven.co.kr/

자가 30대 이상 청장년층 남성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 커뮤니티의 '베스트글-명예의 전당[27]' 게시판에 오른 글 가운데 '성폭력'과 '무고'라는 단어를 포함한 게시물 45건을 수집했다.

'인벤'은 주로 10대부터 20대 이상 컴퓨터 게임 사용자가 모인 커뮤니티이다. 이 커뮤니티는 게임별로 게시판이 나뉘어 있으나, 게임 외의 주제를 논의하는 '오픈 이슈 갤러리(오이갤)'가 존재한다. 오이갤은 보배드림과 같은 베스트글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서 연구자가 특정 수치를 정해 인기 게시글을 추산했다. 보배드림과 같이 '성폭력'과 '무고'를 모두 포함하는 게시글을 검색해 이 가운데 댓글 수 50개 이상, 조회 수 1만 건 이상, 추천 수 50건' 이상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게시물 총 66건을 인기 게시글로 보고 수집했다.

이외에 위의 커뮤니티 두 곳에서 '성폭력'과 '무고'란 단어로 검색했을 때, 스스로 본인이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거나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다는 경험담을 공유한 게시글도 다수 있었다. 일부 작성자는 익명 위주인 온라인 커뮤니티임에도 실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 일례로 C[28] 시인은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자 성폭력 고소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고와 손해배상 소송 과정을 보배드림 등에 게시했다. 이처럼 본인이나 직계가족 등의 성폭력 피소 과정을 공유한 게시글 34건도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

27) 보배드림은 추천+조회 점수를 합산한 100위까지 인기 게시물을 명예의 전당에 등록한다.

28) 이 연구에서는 공인이 아닌 인물의 이름이 언론 보도와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다수 등장한다. 이들의 신원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으나, 개인정보임을 고려해 인용 자료까지 모두 익명 처리했다.

제 2 장 언론보도에 나타난 ‘성폭력 무고’ 담론

제 1 절 언론사별 보도 내용 분석

이 절은 언론사에 따른 기사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전체 기사 안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와 인물, 정보원을 구분해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성하는 어휘의 특징을 분석했다.

1. 신문 기사의 유형별 특징

성폭력 무고 관련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는 표 2와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총 509건이다. 신문 기사의 유형별 범주화는 김수아(2019a)의 분류를 참조했다.

[표 2] 2018년 - 2020년 언론사 기사 유형(단위: 건)

언론사	단순보도	기획해설	온라인 특화	인터뷰	칼럼	총계
경향	49	19	0	2	6	76
동아	66	8	33	1	4	112
연합	206	15	4	0	0	225
한국	71	17	5	1	2	96
총계	392	59	42	4	12	509

‘단순보도’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보도하고 기자의 논평 등을 포함하지 않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뜻한다. ‘기획해설’ 기사는 언론사에서 해설 기사로 분류하였거나 혹은 별도 분류 체계가 없어도 기자의 해석이나 논의가 포함된 기사를 의미한다. 정보원이 뉴스 발화자로서 등장하는 ‘인터뷰’ 기사와 누리꾼 반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TV와 타 언론사 보도 내용을 주요 뉴스 소스로 활용하는 ‘온라인 특화’ 기사, 언론사 구성원 또는 외부 기고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칼럼’ 기사로 분류했다.

수집된 전체 기사 509건 중 '단순보도'가 392건(76.6%)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기획 기사와 온라인 특화 기사가 각 59건(11.7%), 42건(8.4%) 순이었다. '단순보도' 건수가 가장 많은 언론사는 연합뉴스로 206건[29]이었으며, 경향신문은 '기획/해설' 기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특화' 기사는 동아일보(33건)[30]가 가장 많이 보도했다.

이 중에서 '단순보도' 기사를 제외한 '기획해설' 및 '온라인 특화' 기사와 '인터뷰', '칼럼' 기사 내용의 담론을 세부 분석했다. '온라인 특화' 기사는 특정 사건에 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누리꾼 반응, 타 언론사에 보도된 사건 당사자의 인터뷰 등을 재가공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논문은 언론 보도 외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커뮤니티 이용자 반응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했다. 온라인 특화 기사도 언론 보도이면서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을 포함하므로 기사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신 '단순보도' 기사 392건이 성폭력 무고를 어떤 방향으로 보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사 내용을 표 3[31]과 같이 분류했다. 단순보도 기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무고 피소' 기사로 134건(34.2%)이었다. 이와 같은 기사의 범주에는 △성폭력 피의자가 성폭력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무고죄로 기소/불기소된 사건 △무고죄 기소 후 무고 피의자 또는 성폭력 피의자의 재판 참석 등을 보도한 기사를 포괄했다. 연합뉴스 기사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일보(33건), 동아일보(29건), 경향신문(13건) 순이다.

---

29) 연합뉴스는 한국어 외에도 영어와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뉴스를 제작하며, 하루 콘텐츠 생산량이 3000여 건에 달한다. 단신 기사 위주로 송출하는 '숏폼(short-form) 저널리즘'에 특화되어 있다.

30) 동아일보는 지면 기사와 별도로 온라인 기사 전문 회사인 동아닷컴을 운영한다. 동아닷컴 기사를 동아일보 기사와 함께 수집한 이유는 두 곳에서 생산된 기사가 네이버 뉴스 기준으로는 동아일보라는 단일 언론사 기사로 집계되며 댓글도 분리되지 않아서이다. 네이버 뉴스 이용자도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기사를 서로 다른 회사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기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았다.

31) '단순보도' 범주의 기사는 숏폼의 단신 기사로, 기사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2매에서 5매를 넘어가지 않는다. 단순보도 기사는 주로 한 가지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 점에 착안해 비슷한 주제로 작성된 단순보도 기사끼리 묶어서 동일한 범주로 분류했다.

그다음으로 ‘성폭력 가해자 무고 피소’ 기사가 69건(17.6%)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기사는 성폭력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자 무고죄로 가중 처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무고 피소 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 무혐의(무죄 포함)나 유죄판결 기사로 나눠서 볼 수 있었다. 전체 보도된 392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의 무혐의와 유죄 기사 수는 각 43건(11%)과 40건(10.2%)으로 비슷하게 보도되었으나, 성폭력 가해자의 무혐의와 유죄 기사 수는 각 13건(3.3%)과 30건(7.6%)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단신 기사 내용을 통해 각 언론사가 지향하는 보도의 방향성을 일부 추측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은 자사 기사 49건 중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 피소 후 유죄판결 기사를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2차 가해에 주의해야 한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과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여성단체 등의 ‘성폭력 무고 현상 비판’ 기사를 총 8건(16.3%) 실었다. 반면 동아일보는 ‘성폭력 무고 현상 비판’ 기사를 3년간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비판 기사가 주로 여성단체 등의 성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여성단체 등의 발화를 단신 기사로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일보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 유·무죄 기사 비율이 맞춘 듯이 비슷하다. 예컨대 전체 보도 건수로만 봤을 때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 유죄 기사는 무죄 기사보다 2배 이상 많이 보도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일보는 무고 유무죄 기사 수가 각 3건(4.2%), 4건(5.6%)으로 거의 비슷하다.

연합뉴스는 지면에 제약이 있는 세 언론사보다 단순보도 기사 건수 자체가 서너 배 이상 많다. 총 206건 중에서 ‘성폭력 피해자 무고 피소’와 ‘성폭력 가해자 무고 피소’ 기사가 각 59건(28.6%)과 44건(21.3%) 순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성폭력 피해자 무고 유죄’와 ‘성폭력 가해자 무고 유죄’ 기사가 각 30건(14.5%)과 16건(7.7%)으로 보도되었다.

[표 3] ‘단순보도’ 기사의 내용 분류표 (중복 없음, 단위: 건)

언론사	연도	성폭력 피해자 무고 피소	성폭력 가해자 무고 피소	성폭력 피해자 무고 무혐의	성폭력 피해자 무고 유죄	성폭력 가해자 무고 무혐의	성폭력 가해자 무고 유죄	정부/UN 성폭력 무고대응	수사기관 무고 대응	성폭력 무고 현상 비판	기타	합계
경향	2018	4	1	3	0	0	1	3	2	4	1	19
	2019	3	1	3	0	2	3	0	0	4	0	16
	2020	6	1	3	0	0	4	0	0	0	0	14
	소계	13	3	9	0	2	8	3	2	8	1	49
동아	2018	17	2	2	2	1	2	1	0	0	0	27
	2019	5	5	7	1	2	3	0	0	0	0	23
	2020	7	5	2	1	0	1	0	0	0	0	16
	소계	29	12	11	4	3	6	1	0	0	0	66
연합	2018	31	4	4	12	1	4	11	7	8	2	84
	2019	16	27	6	10	2	9	1	3	6	0	80
	2020	12	13	5	8	1	3	0	0	0	0	42
	소계	59	44	15	30	4	16	12	10	14	2	206
한국	2018	8	1	1	3	0	1	0	1	0	0	15
	2019	13	5	3	1	3	0	0	1	3	0	29
	2020	12	4	4	2	1	2	0	1	1	0	27
	소계	33	10	8	6	4	3	0	3	4	0	71
합계		134	69	43	40	13	33	16	15	26	3	392

2. 기사 빈출 어휘 분석

언론사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수단은 바로 기사에 쓰인 어휘이다. 페어클로우(2001)는 담론을 연구할 때 동사 등을 중심으로 특이하게 자주 반복되는 어휘군(동의어 포함)을 분석했다. 이 절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어휘군을 분석해 무고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을 연구했다.

전체 성폭력 무고 기사 509건에 나타난 주요 인물은 표 4와 같이 대체로 '김흥국(29건)', '김건모(24건)'와 같은 연예인이나 '김학의(47건)'과 '오거돈(20건)'처럼 정부 고위 관료인 공인이다. 공인의 성폭력 피소 여부는 대중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공인은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면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중 일부는 성폭력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다[32].

그런데 공인이 아닌 'A[33]'는 2018년(25건)과 2019년(10건) 연속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부터 3년간 총 35건 기사로 보도되었는데, '김학의(50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정부 고위 관료만큼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A가 거짓으로 성폭력 사건을 고소했다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미 언론은 성폭력 고소인을 "거짓말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보복하는 사람"으로, 피의자를 "보복을 감행한 여성에게 비극적으로 기소된 무고한 청년"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Gruber, 2009 참조). 국내 언론도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으로 A에게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B의 유서를

---

32) 동아일보, 2018년 3월 15일, 김흥국 "성폭행·성추행 No, 성관계도 없었다…무고 혐의 법적 대응"

33) 유튜버 A는 2018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 A는 2015년 무렵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 자리에 20명이 넘는 남성 앞에서 원치 않는 사진을 찍혔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연합뉴스, 2018년 5월 17일). 그러나 해당 촬영회를 주도해 A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B는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는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A를 고소했으나, 같은 해 7월 경찰 조사 도중에 투신해 숨졌다(동아일보, 2018년 7월 9일). B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그해 9월 12일 남초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 사건 관련 실장 동생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고 논쟁을 일으켰다(보배드림 자유게시판, 2021년 5월 12일 확인).

인용해 “경찰도 언론도 그쪽(성폭력 고소인) 이야기만 듣는다’[34]”고 보도했다. 그 효과로 성폭력 고소인 A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이와 대비되는 B의 유족은 언론을 통해 발언권을 얻었다.

[표 4] 연구 대상 기사 내 빈출어휘/주요 인물/정보원(중복 코딩, 단위: 건)

	2018년	기사수	2019년	기사수	2020년	기사수
주요 인물	김흥국	29	김학의	47	김건모	24
	A	25	김건모	12	오거돈	20
	정봉주	12	정봉주	11	박원순	15
	김기덕	8	김기덕	10	김재련	5
	이윤택	7	A	10	정봉주	3
	이진욱	7	곰탕	6	김학의	3
주요 정보원	경찰	124	검찰	109	경찰	80
	검찰	107	경찰	87	검찰	63
	SNS	54	판사	56	변호사	45
	판사	47	변호사	35	판사	33
	변호사	39	여성단체	19	유튜브	27
	여성단체	37	국회	17	SNS	17
	여성가족부	15	SNS	13	교수	12
	교수	34	유튜브	11	국회	9
	국회	20	교수	7	여성단체	6
	국민 청원	11	국민 청원	7	국민 청원	5
	온라인 커뮤니티	3	온라인 커뮤니티	4	온라인 커뮤니티	2
	당당위	3	여성가족부	4	여성가족부	2
주요 용어	명예훼손	118	명예훼손	50	명예훼손	42
	미투	67	맞고소	45	맞고소	34
	맞고소	50	무혐의	39	무혐의	23
	2차 피해	42	미투	29	미투	14
	억울	35	억울	15	2차 가해	13
	무혐의	33	역고소	9	2차 피해	12
	역고소	30	2차 피해	6	억울	11
	2차 가해	22	보복	5	꽃뱀	5
	꽃뱀	18	꽃뱀	4	역고소	3
	보복	14	2차 가해	4		
	펜스룰	4				

34) 한국일보, 2018년 7월 9일, ‘억울해’ ‘A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투신

공인과 상관없는 사건임에도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처럼 언론에 총 6건 보도된 '곰탕(곰탕집 성추행)[35]' 사건도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의자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스튜디오 성추행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여성이 마음 먹으면 남성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주요 정보원은 위의 표처럼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혹은 판사와 변호인 등이 등장한다. '검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7건, 109건, 63건, '경찰'은 같은 기간 124건, 87건, 80건 기사에 등장했다. 최근 3년간 집계된 기사가 각 211건, 173건, 126건이었음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기사에 경찰과 검찰이 주류 발화자였다는 의미이다. 언론이 성폭력 무고 사건을 보도할 때 사실상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기사를 보도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여성 폭력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언론 기사에서 비주류 발화자였다.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 인용 건수는 2018년 미투운동 시기 각 37건과 15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20년 기준 각 6건과 2건에 그친다. 전체 기사 건수가 절반 정도 줄어들었음을 고려해도 인용 수치가 6분의 1에서 7분의 1가량 대폭 축소되었다.

주요 정보원 중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 인용 비중도 큰 편이다. SNS 인용 횟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53건, 17건이며, 유튜브는 2019년과 2020년 각 11건, 27건이었다. SNS가 주로 익명을 담보로 특정 사안에 의견을 내는 도구라면, 유튜브는 주로 개인이 얼굴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도구이다. 언론은 일반 대중의 의견을

35) 2017년 11월 모처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시비가 발생하였고,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면서 남성은 2018년 9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보배드림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게시물 내용은 즉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이 지나가던 여성과 부딪쳤는데 남편이 손을 뒤로 뺐음에도 여성이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몰고는 합의금 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아내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한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김선해, 2020). 이 사건은 이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성폭력 무고죄 강화 여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소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나 유튜브를 인용한다. 언론사가 성폭력 무고를 어떤 방향으로 보도하려는 지에 따라 인용 내용도 달라진다.

성폭력 무고와 가장 많이 결합하는 단어는 '명예훼손'과 '맞고소', '무혐의'와 '억울' 등이다. '맞고소'가 성폭력 피의자의 억울함에 맞선다는 의미라면, '역고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인해 역으로 무고 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한다. 단순보도에서는 '맞고소'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 50건, 45건, 34건 쓰였는데, 같은 기간 '역고소'는 각 30건, 9건, 3건 쓰였다. '맞고소'가 주요 언론에서 성폭력 무고를 규정하는 단어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혐의'는 주로 성폭력 피의자의 입장에서 결백을 호소하는 단어로 쓰였다.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판명 나면 성폭력 피의자 중 일부는 고소했던 상대를 무고로 고소한다. 성폭력 피의자가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피해자로 '완벽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반면 무고 피의자 입장에서 '무혐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성폭력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뜻이며 또 하나는 무고로 피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의미이다. 전자는 무고 피의자의 성폭력 고소·고발이 무력화되었으므로 부정적인 의미이며, 후자도 고소·고발의 반발로 발생한 역효과이므로 무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어휘이다.

3. 언론사 간 정보원 선별의 편차

이번 항은 전체 기사 509건 가운데 '단순보도'를 제외한 '기획해설'과 '칼럼' 등 기사 117건에 인용된 정보원(Source)을 분류했다. 언론 보도에 인용된 정보원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성폭력 무고 당사자 집단[36] △국가기관 △전문가 집단 △시민(대중) 이렇게 네 집단이었다. 이는 다시 아래 표 5와 같이 세분했다.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

36) 성폭력 무고 관련 기사는 통상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쪽과 피소된 쪽의 주장 대립으로 나뉜다. 기사에서는 이를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했으므로 발화자를 분류할 때 이를 그대로 따랐다.

자의 목소리가 성폭력 무고 기사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정보원이다. 그러나 언론사 성향에 따라 어떤 목소리에 더 집중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은 '성폭력 피해자(42건)'의 목소리를 성폭력 가해자보다 7배 더 많이 반영하는 데 반해, 보수 성향인 동아일보는 '성폭력 피해자(26건)' 견해를 '성폭력 가해자(17건)' 의견보다 약 1.53배 정도 더 반영했다. 연합뉴스는 성폭력 무고 당사자(성폭력 피해자) 의견을 간접적인 방식(타 언론사 인용 보도 등)으로만 전달했다. 연합뉴스가 통상적으로 진보와 보수 언론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지 않지만, 인용 면에서는 동아일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5] 기획해설/칼럼/온라인 특화 기사의 주요 정보원 (중복 코딩, 단위: 건)

분류	당사자 집단[37]		국가기관[38]				
언론사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행정부	입법부	법조계	검·경찰	외국 기관
경향	42	6	5	4	13	4	4
동아	26	17	11	9	3	4	3
연합	1	2	1	4	8	8	0
한국	8	3	3	10	4	7	1
합계	77	28	20	27	28	23	8

분류	전문가 집단				시민(대중)			
언론사	페미니즘 전문가	여성 전문가	남성 전문가	성별불상 전문가	여성 단체	일반 여성	일반 남성	온라인 소스
경향	11	9	8	4	23	1	0	4
동아	3	6	9	6	3	7	20	34
연합	10	5	8	1	6	6	2	13
한국	6	8	3	4	9	0	0	26
합계	30	28	28	15	41	14	22	77

37) '당사자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성폭력 피/가해자'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 1건(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 피해자, 남성 가해자로 구성된다. 이에 별도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표기했다.

38) '국가기관' 하위 주체인 입법, 사법(법원과 수사기관), 행정, 국제기구는 대체로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출처 표기로 인용되었다. (예: 청와대 관계자, 법원 관계자, 재경지법 부장판사) 일부 성별을 알 수 있는 실명이 언급되나(예: 류호정 정의당 의원), 대체로 익명에 의존하는 기사가 다수라 이 표에서는 따로 성별을 분

언론사 성향과 관련해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제삼자 집단에서 나타난다. 동아일보는 성폭력 무고와 관련된 보도에서 '일반 남성(20건)' 목소리를 '일반 여성(7건)'보다 세 배 가까이 더 실었다. 즉, 성폭력 무고와 관련 기사에서 남성을 주요 정보원으로 인용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앤더슨(Anderson, 2015)이 지적한 대로 남성은 "여성 문제"에서도 주요 발언자로 등장한다는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미국에서 임신 중단 논쟁을 다룬 2012년 선거 기사에서 인용된 의견 중 81%는 남성의 의견이었다. 피임 관련 견해를 물어보는 기사에서도 일반 남성의 의견을 75% 인용했다(Anderson, 2015: 150). 일례로 "탁자 아래로 손 내리지 마라, 마주치는 것은 술잔뿐[39]"과 같은 기사는 마치 성폭력을 경계하는 제목 같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정반대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는 남성을 위한 기사이다. 이 기사는 다수 '일반 남성'의 발화를 인용해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느냐"고 경고한다.

온라인 소스는 언론 보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경향신문(4건)을 제외한 모든 언론사가 두 자릿수로 인용했다. 의제 설정자가 언론에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다. 인용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언론사별로 진보와 보수 언론 간 격차가 크다. 예컨대 경향신문은 '여성단체' 정보원을 23건 인용한 데 반해 동아일보는 단 3건 인용해 8배가량 차이가 난다. 진보 성향 언론은 '성폭력 무고'라는 의제에서 여성단체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원을 인용하는 데 반해, 보수 성향 언론은 이들과 대립되는 정보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아일보가 일반 남성 목소리를 다수 인용한 이유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한국일보는 온라인 소스(26건)와 입법부(10건), 전문가 집단(여성 전문가 등)을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연합뉴스도 온라인 소스 외에 페미니즘 전문가(10건)나 검·경찰과 같은 수사기관(8건) 발화에 더 의존하여 성폭력 무고 사건을 보도했다.

남성 전문가를 더 인용한다고 해서 여성이 대다수인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재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류하지 않았다.

39) 동아일보, 2018년 3월 17일, 탁자 아래로 손 내리지 마라, 마주치는 것은 술잔뿐

성폭력 보도에서도 남성 전문가의 목소리에 더 권위를 실어줌으로써 남성중심적인 보도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나머지 세 언론사가 모두 페미니즘 또는 여성 전문가를 통해 성폭력 무고 현상을 보도하는 점과 비교하면, 동아일보의 보도 방향은 나머지 세 언론사와 다르다.

경향신문은 정보원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42건)'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 일례로 경향신문은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한 한 여성이 "조사·수사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먼저 의심하는 수많은 질문에 시달렸는데,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수상하다는 의심까지 받았다[40]"라는 발언을 통해 무고로 몰리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처럼 경향신문은 성폭력 무고 관련 보도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가장 중요한 발화자로 상정하고 보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 2 절 언론이 구성한 '성폭력 무고' 담론

이번 절은 단순보도를 제외한 신문 기사 117건 본문 내용에서 성폭력 무고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푸코(1971a)의 담론 개념에 근거해 언론에서 발화하는 주체의 위치를 분석하고, 언론 보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무고 담론이 구성되는지 탐구했다.

1. 대상의 형성 : 무고 피의자 대 성폭력 피의자

1) 보수·중도 언론: 무고 피의자

이번 절에서는 표 6처럼 언론사가 성폭력 무고 담론의 대상을 구성하는 어휘군을 분류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담론 안에 일정한 방식으로 규정된 언표 집합을 설정하고, 특정 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이 갖는 실증적 조건 아래 존재하는 대상을 발견했다.

---

40) 경향신문, 2018년 3월 11일, [미투] "7년 전 다 기억하면 천재" 피해자 2번 울리는 '성폭력 통념'

[표 6] 성폭력 무고 담론의 대상과 연관된 어휘군

언론사	무고 피의자 입장	성폭력 피의자 입장
경향	‘여자라서 당했다’, 불평등한 권력관계, 성추행·성희롱해도 되는 자신의 소유물, 가부장적인 성차별 구조, ‘여성의 이해관계를 쥐고 있는 남성 권력자’, 권력형 성폭력, 힘 가진 남성과 상대적 약자인 여성, 성차별이라는 최후의 불균형한 권력관계, 가해자에게만 감정을 이입, 오만, 관용적 태도, 피해자를 회유/협박,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 피해자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법 시스템,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 피해자다움, 의심과 비난	
동아	언제나 의심받는다, 알파걸이라는 굴레,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성차별적 구조를 존속시키려는 무의식적인 노력,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고소, 무죄 나온 걸 내세워 성추행은 없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고 하기엔 후배와 나눈 대화가 의심,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 여성도 잘못한 행동 있다, 금전 등 불순한 의도, 악의를 가지고 거짓 폭로, 9년이나 지난 후 갑자기 고소,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 내 표현이나 행동이 의도와는 다르게 성희롱으로 읽힐 수 있다, 쉽게 돈 벌려고 사진 찍은 거, 합의에 의한 성관계, 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느냐’, 음모론, 성희롱 기준 모호
연합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 여성이 허위 신고를 남발한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는 셈, 분 단위로 (성폭력)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여성들이 허위 신고를 남발한다, ‘미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법부의 유죄 추정, 사법부가 여성의 주장만 받아들여, 미투운동 이후 쌓여온 남성들의 불만,

	‘무고’로 몰아세우는 분위기, 남성 중심 구조에서 ‘객체’인 여성이 ‘발화의 주체’ 자리에 올라서서, 불균형한 젠더 권력에 기반을 둔 성범죄(에) 반발, ‘무고 가해자’로 내모는 사회 구조, 남성 우대 편파 판결,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은 남성, 남성들이 누려온 특권 중 일부가 무너진 것	‘성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 경찰이 무고(無辜)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법이 여성을 더 보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기소, ‘성인지 감수성’은 정립되지 않은 개념, (성폭력)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무고를 막아줄 증거를 못 만들게 한다, 남녀가 헤어지거나 이해관계 엇갈리며 성폭행 누명, 돈을 뜯어낼 목적, 호감을 품은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
한국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편견, 역고소 빌미, 조직 사회가 눈감은 뿌리 깊은 문화, 미투 참여자의 절박함과 결연함에 공감하지 못하는 행태, 남성 중심 문화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남성을 피해자로 간주, 가부장적 문화에 순응할 것을 강요받은 삶 속에서 형성된 관념, 약자에 대한 배려, 일부 남성들의 미투운동에 대한 불안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려는 사람의 입막음 용도로 악용, (성) 범죄 행위를 축소, (진보 정치인도) 일베 등 남성 중심 문화를 똑같이 반복,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박탈감, 여성에 대한 원망과 혐오	“언론과 야당의 위협”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 성폭력 무고 사례 고발,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나도 들춰내면 혹시 모른다.’, ‘성폭력은 허위 신고가 많다’ (성폭력 피의자) 일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했다.”, (무고 피의자가) 성범죄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진술로 무혐의 처리에 빌미, 피해 여성들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 진술의 객관성을 판정하는 전문적인 분석 방법이 부족,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여자가 돌변해서 강간이라고 허위 진술, 한쪽 당사자 말만 들어서는 확실하지 않다, 성범죄 전담이 전문성을 키우는 방편이자 하나의 경영전략, 돈이 되는 장사, 시장으로 간 성폭력, 불법과 합법 사이 경계에서 ‘영업 수단’

보수 계열인 동아일보는 무고 피의자인 여성 집단의 발화를 희박화함으로써 무고 담론의 대상을 형성했다. 여성 집단은 성폭력 무고 담론 안에서 말할 수 없거나 거의 발화하지 못함으로써 배제되었다. 중도 언론

사인 한국일보는 표면적으로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 피의자의 발화를 모두 인용하는 방식을 통해 담론 구조에서 대립되는 발화를 모두 담론장으로 끌어온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한국일보도 권력형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무고 피의자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발화를 배제한다. 다시 말해, 한국일보는 양립 불가능한 발화를 기계적으로 병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아일보와 유사하게 무고 피의자의 발화를 희박화하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의 대상을 구성한다.

동아일보는 주로 성폭력 피의자의 발화를 통해 무고 피의자가 된 여성의 행위를 의심하거나 피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표를 사용한다. 예컨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고 하기엔 후배와 나눈 대화가 의심스러웠다[41]"는 발언을 통해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의 대상(의심스러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출현시킨다. 아니면 "이쪽(성폭력)이 아니면 저쪽(무고)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의 특성[42]"이라는 검찰의 발화를 기사에 반영함으로써, 마치 동등하게 대립하는 갈등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발화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선택한다는 의구심을 표현한다. 수사기관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성폭력 피의자나 주변인(가족)은 언론을 통해 편파적인 수사기관을 비판함으로써 성폭력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하게 된다.

만약 법원에서 무고 재판 결과가 엇갈린다면, 무고 피의자의 발화는 손쉽게 배제된다. 예를 들면 배우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무고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가운데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 씨의 진술이 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43]"는 구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고 피의자의 발화는 담론장에서 배제되었다.

성폭력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성폭력 범죄를 전면 부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인다. 동아일보는 주로 일반 남성의

41) 동아일보, 2018년 1월 24일, "박시후, 성폭행 논란 이후 인간관계 깔끔히 정리"
42) 동아일보, 2018년 2월 8일, "약 먹여 환각상태 빠트려 성폭행 진술 불구, 박근혜 총애받는다고 무혐의"
43) 한국일보, 2018년 2월 7일,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항소심서 유죄

발화를 인용해 허구의 선량한 일반 남성 집단이 언제든지 억울하게 성폭력에 피소될 수 있다는 언표를 기사에 반영한다. “내(남성) 표현이나 행동이 의도와는 다르게 성희롱으로 읽힐 수 있다[44]”라는 문장을 통해 마치 언제든 의도와 상관없이 성범죄자로 지목될 수 있다는 남성의 발화가 담론장에서 채택된다. 동시에 성폭력 무고 피의자의 발화는 (성인)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자율 실현이라는 외부 담론에 의해 배제된다. 무고 피의자의 발화는 “여성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느냐[45]”와 같은 일반 남성의 발화로 대체된다.

한국일보가 무고 담론의 대상을 형성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구성된 정치적 지형인 보수 또는 진보 진영과 연결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의 성폭력 피소 기사나 미투운동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무고 피의자를 발화의 주체로 인정하려고 시도한다. 반면 정치·사회 유력 인물과 연관된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무고 피의자를 비난하는 서술을 통해 발화 주체를 희박화한다.

대표적으로는 고위 공직자였던 김학의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기사에서 나타난다. 한국일보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진술로 무혐의 처리에 빌미를 제공[46]”했다며 피해 여성을 비판한다. 이런 서술 방식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성폭력 문제를 정파 정치로 환원함으로써 젠더적 관점으로부터 이탈하던 습성(엄혜진, 2009: 60)과도 연결된다. 한국일보는 권력형 성범죄 주범인 김학의라는 ‘거악’을 몰아내려면 피해 여성이 ‘올바르게’ 진술해야 하는데, 이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바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피해 여성의 발화는 배제되어 담론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

연합뉴스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말뭉치를 통해 무고 피의자를 무고 담론의 대상으로 구성한다. 예컨대 “남녀가 헤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47]” 생긴 오해라든지 “호감을 품은 상대방(남성)에게 성폭행 누

44) 동아일보, 2018년 3월 17일, “탁자 아래로 손 내리지 마라, 마주치는 것은 술잔뿐”

45) 동아일보, 2018년 3월 10일, 한국판 앙시앵 레짐의 종언… 알파걸이 방아쇠 당겼다

46) 한국일보, 2019년 4월 10일, 김학의 수사 ‘피해 여성 3인 입’에 성패 달렸다

명을 씌웠다[48]"라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이런 문장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서술이다. 담론의 대상은 특정 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이 갖는 실증적 조건들 아래에서만 실제로 존재한다(허경, 2016: 100). 연합뉴스는 수사기관의 발화라는 실증적 조건 아래에서 담론의 대상을 마치 실존하는 보편적인 인물처럼 구성한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일반 남성의 발화보다 더 강력하게 거짓말하는 여성으로써 무고 피의자를 담론의 대상으로 형성된다.

2) 진보 언론: 성폭력 피의자

경향신문은 세 언론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무고 담론의 대상을 구성한다. 주로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위계 구조를 비판하고, 성폭력 통념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여 보도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이 피해자라는 위치를 점유하기도 전에 무고 피의자로 몰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그 원인으로는 "성차별이라는 최후의 불균형한 권력관계[49]"로 주변부에 있는 여성 집단이 가해자의 위치인 무고 피의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한다.

한 사회가 어느 특정 집단을 끊임없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면, 다른 어떤 집단이 그러한 판단을 내릴 일방적 권력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허민숙, 2018). 경향신문은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말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담론의 대상을 구성한다. 성폭력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은 여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2차 가해" 때문에 범죄자이자 '가해자' 위치에 놓인다. 수사기관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말을 더 신뢰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해서이다. 성 이력(성 경험,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기록)이 있는 여성을 의심하는 성폭력 통념은 무고 피의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막는다.

---

47) 연합뉴스, 2018년 12월 13일, 각박한 사회, 무고·모욕 판친다… 법원·검찰은 '철퇴'

48) 위와 같음

49) 경향신문, 2018년 4월 25일,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 (4) 성추행 고발서 남과 여 일상화된 모순 흔드는 바람으로

경향신문은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피의자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50]”라는 기본 전제를 둔다. “피해자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법 시스템[51]”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의 주요 대상을 구성한다. 사법기관은 일부 성폭력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할 책임을 떠맡는다. 경향신문은 성폭력 피의자가 가해자임에도 “불평등한 권력관계[52]” 덕에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를 고소한다는 담론의 대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경향신문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피해자와 같은 성폭력 통념을 일부 드러낸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을 묘사하면서 “저항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53]”거나 “차가운 바닥에 혼자 누워 있었[54]”던 성폭력 피해자의 무력함을 묘사하거나, “지워질 수 없는 ‘불가역적 사실’[55]”과 같이 성폭력을 정의함으로써 이런 피해로서 벗어날 수 없는 공포로 재현하는 우를 범한다. 이 또한 젠더 권력이 비대칭하다는 현상을 드러내기 위해 아이러니하게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는 언표를 활용한다.

2. 언표 작용의 양태: 성폭력과 무고 피의자의 발화 지위

1) 보수·중도 언론: 진정한 무고의 ‘피해자’

푸코는 언표적 장을 그 배치에 따라 말하는 주체들의 가능한 자리가 정의되는 하나의 익명의 장으로 보고 언표 수준의 표면 효과를 분석한다. 이때 ‘말하는 주체’의 형식에 의존해서 언표를 설명하지 않고, 주체를

---

50) 경향신문, 2018년 3월 3일, “내 딸들은 죽었는데 가해자들과 경찰은 잘만 살더라”
51) 경향신문, 2020년 4월 24일, [성범죄법 잔혹사 ⑤] 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52) 경향신문, 2018년 2월 24일, 성폭력 피해자 위한 법, 있지만 없다
53) 위와 같음
54) 위와 같음.
55) 위와 같음.

언표적 장이 발생시킨 하나의 효과로 간주했다(허경, 2016: 162-163). 언론은 실제 누가 말하는지 언표의 형태를 빌리지만, 그것을 통해 특정한 주체의 양태를 구성한다. 즉,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 피의자의 발화를 모두 인용하지만, 발화 속의 언표를 통해 진정한 피해자라는 담론 주체의 양태를 배치한다.

각 언론사는 표 7처럼 지향점에 따라 어떤 집단을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발화할 주체의 위치를 구성하는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성폭력 무고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술한다. 그런데 네 언론사는 무고 피의자든 성폭력 피의자든 비슷한 단어를 통해 '피해자'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보도했다. 즉, 누가 발화할 지위를 부여받았는지, 다시 말해 말하는 주체의 위치를 획득했는지 드러낸다.

주로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억울, 화난다, 힘들었다 등)를 통해 피해자가 된 각 피의자(무고, 성폭력)의 처지를 서술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걸 잃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마치 미국 등 영미권 미디어에서 일부 성폭력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복수심에 불타는 쥐새끼(Gruber, 2009; Belknap, 2010에서 재인용)" 같은 존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반대로 성폭력 피의자는 "순진한 청년이 복수심에 불탄 여성에 의해 비극적으로 (성폭력 범죄자로) 처벌받게" 된 불쌍한 존재로 진정한 피해자가 된다(Belknap, 2010). 보수나 중도 언론도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 피의자를 저울에 올린 뒤 성폭력 피의자가 무고 담론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전제하고 서술했다.

[표 7] 성폭력 무고 담론의 주체와 연관된 어휘군

언론사	무고 피의자 입장	성폭력 피의자 입장
경향	근거 없이 품성이나 능력을 폄하하는 조직구성원들의 '뒷담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심리 상담까지 했다" 직장에서 불이익, (성폭력) 피해는 축소되고 가해자의 변명과 사과는 확대,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 진실을 밝히	

	기가 힘들고, (성폭력) 가해자의 복귀는 정말 쉬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심리상담까지 했다" 권력을 쥔 남성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한 여성, '피해자인 여성의 시각', 더 많은 남성이 집단에 균열을 냈으면 한다.	
동아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야 했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 "정말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 "뻔뻔한 거짓말" 대중의 언덕에 (성폭력 피해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극성 지지자들이 고소인 '신상 털기'	(성폭력 피의자의) 피해가 엄청났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잃었다, 처지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폭로를 당할 경우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움), 모든 것 잃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이미 매장당했고 제 인생은 끝난 것, (성폭력) 폭로만 나와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불이익, 진술/눈물만으로 여러 인생 파탄
연합	(성폭력 피해자) 신변 보복/무분별한 공격에 노출, '신상 털기' 피해자는 딜레마에 직면,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짐, '친밀성의 공간'에서 통용되던 수칙이 과거와 달라지다.	(무고)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억울하다' (무고) 의심은 더해져 악성 댓글, "성범죄 무고당하면 그 여자 죽이는 게 나을 듯", 사회 활동에서 여러 불이익과 제약, 성폭력 의혹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는 사태
한국	성희롱/성폭력을 피한답시고 여성을 꺼리는 남성은 스스로 그런 잠재적 가해자로 낮추는 것, (성폭력) 고소인 신상털이	남성 차별이나 피해를 일으키는 부작용, 무고에 대한 두려움, '변호사만 잘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 이제 이 (무고) 대가는 여성들도 치르게 될 거다, 남자는 아무런 방어책 없이 무조건 구속, "혐의가 불분명한데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

보수 계열인 동아일보는 주로 성폭력 피의자를 비롯해 주변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로 구성한다. 그중에서도 (거짓) 성폭력 피소로 인해 일상이 망가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음을 호소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례로 성폭력 피의자의

사망 이후 피의자 여동생이 무고 피의자를 향해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56]”고 적은 온라인 게시글을 인용 보도했다. 이런 보도는 성폭력 피의자를 성폭력 무고의 ‘피해자’로 드러내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대다수 언론은 피의자 가족의 입을 빌어 감정에 호소하고 무고 피의자를 비판함으로써, 성폭력 피의자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선점하도록 배치한다. 여기에서 ‘정상 가족’ 내의 아내, 딸, 여동생의 발화는 한 가족의 일부로서 성별을 나타내는 언표인 ‘여성’으로서 ‘남성’과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동시에 마치 여론전에 의해 어느 한쪽이 승리해야만 피해자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담론 내에서 발화 주체의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 무고 피의자의 정당성을 흔든다. 특히 “처지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57]”을 할 위기에 놓인 성폭력 피의자의 상황을 서술하거나, “모든 걸 잃었다[58]”는 성폭력 피의자나 주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다. 이를 통해 마치 여성에 의해 인생이 망가지거나 생명마저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성폭력 피의자가 발화 주체의 위치로 구성된다.

동아일보는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아닌 성폭력 사건에서는 성폭력 피의자에게 발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기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보도이다. 성폭력 피의자인 정치인이 무고를 주장하자,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의 발화를 주체의 위치로 상정한다. 또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성폭력) 고소인 ‘신상 털기’[59]”를 감행하는 좌파 성향 지지자의 2차 가해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마치 성폭력 피해자의 위치를 주체처럼 서술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담론이 작동하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전반적으로 무고 피의자를 담론장에서 말할 수 있는 위치로 배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

56) 동아일보, 2018년 9월 12일, 스튜디오 실장 동생 추정 A “A 낚시 사진 경악, 우린 지옥인데…”

57) 동아일보, 2018년 3월 5일,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C 시인, 2년 전 ‘성폭력 누명’ 쓰고 법정 싸움

58) 동아일보, 2018년 9월 12일, 스튜디오 실장 동생 추정 A “A 낚시 사진 경악, 우린 지옥인데…”

59) 동아일보, 2020년 7월 10일, ‘박원순 미투 의혹’ 피해자 신상털이 2차 가해 우려

연합뉴스와 한국일보는 성폭력 피의자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그들의 발화를 인용한다. 두 언론사는 “성범죄 무고당하면 그 여자 죽이는 게 나을 듯[60]”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기사에 반영하거나 “남성 차별이나 피해를 일으키는 부작용[61]”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이들 언론사는 주로 갈등하는 양쪽 의견을 모두 기사에 반영해 누가 더 피해를 경험하는지 경합한 끝에 무고 피의자의 발화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막상 이들 언론사가 발화 자격을 부여했다고 해서 발화자가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고 피의자의 발화는 여전히 상당 부분 배제되거나 희박화되어 담론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이다.

보수나 중도 언론은 마치 양쪽 입장을 어느 정도를 반영하는 보도처럼 보이지만, 실상 양측을 서술하는 단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성폭력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성폭력 의혹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는 사태[62]”나 “(무고)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63]”와 같이 극단적인 표현이 모두 동원된다. 즉, 주로 마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는 단어를 사용한다.

반면 무고 피의자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묘사한 단어는 이보다 수위가 낮다. 무고 피의자가 성폭력 고소 후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64]”된다는 점을 우려하거나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을 보도하는 정도이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인생이 파탄 나는 쪽은 주로 여성이다[65]. 형식적 객관주의라는 명목 아래 작성된 기사

60) 연합뉴스, 2019년 8월 19일, ‘성폭력 복마전’ 대학 익명 커뮤니티…음란물·성희롱 난무

61) 한국일보, 2018년 3월 26일, “당신도 성범죄 무고 피해자 될 수 있다” 유투 운동 논란

62) 연합뉴스, 2020년 10월 17일, ‘미투무고피해’ C “손석희는 지금쯤 어떤 기분일까”

63) 한국일보, 2018년 9월 27일, “성폭행 당했다” 사귀던 직장상사 무고 50대 집행유예

64) 연합뉴스, 2018년 3월 12일, 도 넘은 ‘미투’ 2차 가해…“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변해야”

65) 평생 성폭력 피해율은 여성이 겪는 성추행이나 강간미수, 강간 등 신체적 성폭력 피해는 18.5%였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전체 응답자 중 19.7%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장미혜·이미정·고현승, 2019).

는 극단적으로 몰려 위기를 겪는 쪽이 성폭력 피의자라는 허구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모든 걸 잃는 진정한 피해자로서 성폭력 피의자가 담론의 주체로 위치를 갖게 된다.

2) 진보 언론: 성폭력 피의자 발화의 희박화

경향신문은 무고 피의자를 성폭력 무고의 피해자로 보고 성폭력 피의자의 발화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나머지 세 언론사와 다른 담론 형성에 기여한다. 분석 대상 중에서는 성폭력 피의자나 주변인을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기사가 사실상 없었다. 반대로 성폭력 고소 이후 무고 피의자가 피해자로서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66]"을 겪는다고 보도한다. 철저히 '성폭력 피해자'인 무고 피의자에게 발화 주체의 권리가 있음을 표출한다.

경향신문은 성폭력 "피해는 축소되고 가해자의 변명과 사과는 확대"되는 현상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을 구축한다. 직장 내 성폭력을 예로 들면서 성폭력 신고 이후 무고 피의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데 반해 "(성폭력) 가해자의 (직장 등) 복귀는 정말 쉬운" 상황을 드러낸다. 무고 피의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성폭력 피의자의 발화를 희박화하거나 사실상 금지한다. 성폭력 고소인이 무고 고소를 위협당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성폭력 피의자를 옹호하는 사회의 변혁을 촉구함으로써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무고 담론을 흔들려고 시도한다.

위의 세 언론사와는 다르게 경향신문은 취재원을 무고 피의자와 지지자에게만 집중한다. 예컨대 기사 내용에 "권력을 쥔 남성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한 여성[67]"과 같이 성폭력 사실을 고발했다가 무고로 피소되거나 피소될 위기인 무고 피의자 위주로 보도한다. 혹은 페미니즘을 실천하면서 "더 많은 남성들이 (남성) 집단에 균열을[68]" 내길 바라는 취재원

---

66) 경향신문, 2019년 1월 29일, "미투 '2차 가해' 여전 모든 걸 불살라야 하는 비정상 끝나야"

67) 경향신문, 2018년 4월 25일,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 (4) 성추행 고발서 남과 여 일상화된 모순 흔드는 바람으로

68) 경향신문, 2018년 10월 25일, '곰탕집 성추행' 맞불시위 나선 '남자 페미'들 "남성 집단 안에서 균열 내겠다"

을 통해 이미 구성된 무고 담론에 대항하는 발화자의 목소리를 담는다.

동아일보 등 세 언론은 성폭력 무고 담론으로 구성하면서 무엇이 진실이라고 말하는지, 그 근거와 '진실화(veridiction)'의 과정을 규명(오생근, 1995)할 때 성폭력 통념을 투영한다. 반면 경향신문은 성폭력 통념을 투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을 구성했다. 그중 주요 수단인 성폭력 피의자의 발화를 배제함으로써 담론을 형성할 때 성폭력 무고에서 진실한 발화자로 무고 피의자의 경험에 권위를 실어준다. 이를 통해 무고 피의자 측에 불리하게 형성된 담론 구성을 전복하려고 시도한다.

3. 개념의 형성: '맞고소'와 '역고소'

1) 보수·중도 언론과 '맞고소'

경향신문을 제외한 세 언론이 보도한 기사는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성하는 언표들의 집합을 좌표화했을 때 '범죄 피해자'라는 단어로 수렴되었다. 이 기사는 주로 성폭력이라는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 형태로써 '성폭력 무고'라는 언표를 계열화했다.

[표 8] 언론사별로 성폭력 무고를 정의하는 어휘군

언론사	무고 피의자 입장	성폭력 피의자 입장
경향	(성폭력) 피해자 낙인찍기, 역고소, 피/가해자의 위치를 뒤바꾼다, 가해자들의 '반격' 맞고소, 대응 무기, 재판까지 가지 않는 '행운', 훌륭한 방패, 심각한/예상치 못한 2차 가해/ 피해, 피해자를 오염시키는 전형적인 수법, 가해자를 무고 피해자로 둔갑, 남성의 성폭력에 면죄부,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는' 요인, '꽃뱀 프레임', 처벌 공백, 유일하게 피해자가 의심을 받는 범죄	성폭력 가해자 '마녀사냥', 꽃뱀녀 사기, 무고하게 강간범

동아	(성폭력) 피해자의 이중 고통, 핍박받는 여성, 2차 가해, 여론전의 돌팔매질	미투를 가장한 거짓 폭로, (남성을) 무너뜨리려는 음해/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님 말고' 식의 고소, 보복성 고소, 가짜 뉴스의 피해자, 맞대응
연합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례, '매뉴얼'처럼 자리 잡은 가해자의 역고소, 2차 피해, 여성은 믿지 못하겠다는 또 다른 혐오 발언,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 또 다른 가해	'남성 역차별', (무고) 피해자의 고통과 수모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게 하는 범죄, 아니면 말고의 삶, 가짜 미투, '꽃뱀' 논란, 미투를 가장한 무고
한국	성폭력 고소에 맞고소하는 '가해자 시장', '꽃뱀'이라는 가해자의 역공/맞고소, '무고'라는 공격, '보복성 기획 고소'의 실체, 2차 피해/ 가해	성추행 누명, '무고 미투, 변질된 '미투 운동', 남성이 당하는 역차별을 막기 위한 (행위), 맞고소, 미투 이후 여성과 남성의 대결 구도

성폭력 무고를 정의하는 언표는 대체로 명확하게 "맞고소"라는 언표 아래 규칙적으로 묶였다. 성폭력 피의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무고는 "성범죄" 사건에서 방어하기 위한 "맞고소"이며 성폭력 피의자를 향한 누명으로 나타난다. 미투운동을 가장한 가짜 고소로 억울한 무고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보수 계열인 동아일보는 주로 성폭력 피의자를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로 놓고 성폭력 무고를 개념화했다. 표 8과 같이 주로 성폭력 무고의 개념을 미투를 가장한 거짓 폭로나 성폭력 피의자를 "무너뜨리려는 음해[69]"로 위치 지었다. 물론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이중 고통이나 2차 가해 등으로 명명하는 시도도 있었으나, 여성의 "아님 말고[70]" 식인 보복성 고소인 성폭력 무고로 인해 남성이 고통받는다는 서술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일보나 연합뉴스는 성폭력 무고 보도에서 형식적 객관주의에 근거한 보도 관행(최이숙·김은진, 2019)에 충실하다.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

69) 동아일보, 2018년 4월 17일, 김흥국 2번째 '성추행 폭로자' 입장 번복…누리꾼 "미투 변질"

70) 동아일보, 2018년 7월 19일, 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에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더 면밀한 수사가 타당"

대립하는 의견을 모두 조망하고 한 쪽이나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적 보도 방향을 내세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발화의 희박화가 일어난다. 언론사가 어떤 정보원을 통해 성폭력 무고를 정의하는지에 따라 비판 방향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동아일보가 일반 남성의 발화를 조합해 성폭력 무고 담론의 개념을 형성했다면, 한국일보나 연합뉴스는 주로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통해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 개념을 구성했다.

동아일보가 일반 남성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담론의 개념을 형성했다면, 한국일보나 연합뉴스는 수사기관을 발화 주체의 위치에 둠으로써 무고 담론의 개념을 구성했다. 우선 연합뉴스는 수사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성폭력 무고를 범죄로 정의한다. 성폭력 무고 "피해자의 고통과 수모는 아랑곳하지 않는[71]" 여성이 "(남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게 하는 범죄[72]"로 성폭력 무고의 개념을 조직화한다.

한국일보는 성폭력 피의자와 무고 피의자의 언표가 병존한다. "'꽃뱀'이라는 가해자의 역공[73]"처럼 무고 피의자의 발화나 언표가 무고 담론의 개념을 형성하다가도, "성추행 누명[74]"이라는 성폭력 피의자의 언표가 무고 담론의 개념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성폭력 무고의 원인을 "미투 이후 여성과 남성의 대결 구도[75]"로 대립시키는 형태 또한 형식적 객관주의 보도 관행으로 구성되는 무고 담론으로 볼 수 있다. 미투운동이 성(性) 대결이며, 과도한 미투운동에 파생된 부작용으로 성폭력 무고 담론의 언표를 응집하고 "맞고소" 개념을 구성한다.

이처럼 형식적 객관주의에 근거한 보도는 무고 피의자를 향한 비난 담론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다. 미투운동의 핵심은 상처받은 개인의 목소리가 완고한 권력과 구조의 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희영, 2018)으로 볼

71) 연합뉴스, 2018년 12월 13일, 각박한 사회, 무고·모욕 판친다… 법원·검찰은 '철퇴'
72) 위와 같음.
73) 한국일보, 2018년 2월 6일, [사설] '미투' 결실을 보려면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 많아
74) 한국일보, 2020년 7월 12일, "박원순만한 남사친" "역시 펜스룰"…2차 피해 확산 우려
75) 한국일보, 2018년 10월 8일, [단독] 미투운동 영향 올해 성폭행 신고 14% 증가

수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서 피해자 여성의 발화를 마치 성폭력 피의자와 대등한 위치로 병렬해서 보도하거나, 미투운동의 의도를 의심하는 언론 보도는 실존하는 젠더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성-약자' 담론의 근거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2) 진보 언론의 '역고소'

경향신문은 앞선 세 언론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폭력 무고의 개념을 구성한다. 무고 담론에서 무고 피의자를 말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하므로, 성폭력 무고를 "역고소"라는 좌표로 설정하여 서로 다른 언표를 사용한다. 무고는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자, 어렵게 목소리를 낸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나 수사기관의 2차 가해이다.

성폭력 피해자나 페미니즘 전문가가 담론장에서 발화 주체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이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뒤바꾸는 수단을 성폭력 무고라고 정의하고 "역고소" 개념을 형성한다. 타 언론사가 (주로 남성인) 성폭력 피의자가 사용하는 언표로 서술한 '꽃뱀'이나 성폭력 '누명'과 같은 단어를 성폭력 무고라는 언표 집합으로 배열하는 데 반해, 경향신문은 어떤 남성이라도 "'무고당할 수 있다'는 허황된 공포[76]"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이런 언표를 배제한다.

경향신문은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쓰는 수단으로서 성폭력 무고를 강조한다. 예컨대, 성폭력 피의자가 무고함을 내세움으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는 행운[77]"을 얻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오염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임을 드러낸다. 경향신문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인 성폭력 피의자가 "훌륭한 방패[78]"로 무고 고소를 남용한다고 일갈한다. 또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는' 요인[79]"이자 남성의 성폭력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처벌 공백[80]"이 발생하게 만드는 법적 장치로서 성

76) 경향신문, 2018년 10월 25일, '곰탕집 성추행' 맞불시위 나선 '남자 페미'들 "남성 집단 안에서 균열 내겠다"
77) 경향신문, 2018년 3월 3일, "나는 꽃뱀이 아니다" 2차 가해를 막아라
78) 경향신문, 2018년 3월 3일, "나는 꽃뱀이 아니다" 2차 가해를 막아라
79) 경향신문, 2018년 5월 6일, '성인지 감수성' 결핍된 법정 피해 여성은 두 번 운다

폭력 무고를 정의한다.

요약하면, 경향신문은 사실상 성폭력 피의자의 발화를 희박화하므로 이들의 언표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무고 개념을 구성한다. 무고 피의자의 관점에서 성폭력 고소 이후에 자행된 2차 가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가해자의 "역고소"임을 규정한다. 성폭력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수단으로 성폭력 무고를 사용했음을 드러냈다.

4. 전략의 구성: 남성 보호와 구조적 해결

1) 보수·중도 언론: 펜스룰과 사법 처분의 모순

경향신문을 제외한 세 언론은 성폭력을 불평등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개념이 아닌, 개인 간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무고 담론의 전략적 선택을 주장한다. 푸코가 담론 전략의 형성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담론을 전개하는 다양한 전략 형성의 체계가 정의될 수 있을 때 전략적 선택은 개별화, 구체화된다(허경, 2016: 125). (남성) 성폭력 피의자를 담론장에서 발화 주체의 위치에 놓고 피해자의 위치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 피의자의 발화권은 배제되거나 희소화된다. 이로 인해 무고 담론은 성폭력 해결방안에 관한 담론적 실현방안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담론과 상호담론적으로 결합한다.

'피해자'인 성폭력 피의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펜스룰[81]'을 통해 알아서 조심함으로써 노력해야 한다는 담론이 구성된다. 펜스룰은 단지 아내 외의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업무상 여성과 남성을 차등 대우하는 등 철저한 성별 분리 원칙은 과거 유교의 잔재인

80) 경향신문, 2019년 4월 3일, '강간죄 → 비동의 간음죄' 요구 다시 거세진다

81)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은 수하 직원을 관리할 때에도 철저한 펜스룰 원칙을 세웠다. 남성 보좌관만 야근을 허용하고 여성 보좌관에게는 남성 관리자와 단둘이 출장을 못 가게 하거나 일대일 회의 등을 제한하는 등 성별에 기반한 고려사항(Sex-based considerations)을 적용했다(Kreis, 2020). 일부 언론사가 여성을 일터에서 분리하는 "변질된 펜스룰"을 경계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펜스룰을 주장한 셈이다.

‘남녀칠세부동석’과도 맞물린다. 펜스룰은 마치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 실현 가능한 결정처럼 형성되나, 실제로는 비담론적인 장에서의 실천이자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배제라는 또 다른 담론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표 9] 성폭력 무고 담론의 전략을 서술한 어휘군

언론사	무고 피의자 입장	성폭력 피의자 입장
경향	‘미투’ 이후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 2차 가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장치, 사법 시스템 반성, 상담/법률 지원 기구,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전례, 성폭력 입증에 실패한 조사는 ‘무죄’가 아니라 ‘입증되지 않음’, 침묵이나 저항 없음을 동의로 해석해선 안 된다, 피해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 ‘적극적 동의’, ‘비동의 간음죄[82]’ 신설, ‘사회적 처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 인식,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의 전면적 재검토, 여성 연대, 형법상 ‘강간’의 정의를 바로잡는 일, ‘일상의 혁명’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강간 문화’를 성찰 및 일상의 성차별 개선	
동아	(성폭력) 피해자의 ‘곁’을 지켜주셨던 동행,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무고죄 2차 가해 처벌 법안, 2차 피해 방지	‘펜스룰’, 언행을 조심하는 문화, 의도치 않게 성폭력·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골치 아프니까 여성은 채용하지 말자’ 펜스룰은 일종의 자기방어 수단,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 제발 한 쪽 편만 들지 말자,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 쓰러진 인간에게는 무덤 대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연합	뿌리 깊은 왜곡된 의식을 바꾸는	음해성 무고면 엄중 처벌, 익명성 이용

	것, 정확한 근거 없이 방어 차원에서 역고소(성폭력 피의자)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는 비상식/비인권적 발상을 바로 잡자, 남성중심적으로 짜여있는 사법 체계 손질, 남성 위주로 굴러왔던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헤아려 신빙성을 판단, 정형화한 '성폭력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음, 법률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한 무고에 악용되는 것도 경계, '펜스룰', 여성과 남성의 접촉을 최소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차단,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 달라,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 최소한의 방어 수단, (성폭력인지) 예측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을 제시해달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확실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모든 문제를 남녀 사이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 여성 연대만을 강조하거나 성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지양
	누군가 피해자를 지지할 때, 피해자는 두 배가 아니라 열 배의 힘을 얻게 됩니다, '꽃뱀'으로 보는 시선이라도 뒤집어지면 된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성폭력) 진술을 듣는 자들의 신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과거 성 이력을 가지고 피해자를 재단하지 말아야, '무거운 형량'보다 '확실한 처벌'	펜스룰은 진리다, '여성 비서를 고용하지 말자'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

동아일보는 "쓰러진 인간에게는 무덤 대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83]"고 호도한다. 마치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처럼 포장했으나, "쓰러진 인간"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남성이다. 반대로 음해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게는 엄중히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 여성은 쓰러진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아일보가 구성하는 성폭력 무고 담론의 전략적 선택은 펜스룰을 통한 여성 배제를 형성한다. "펜스룰은 일종의 자기방어 수단[84]"이며, 성폭

82) 이 단어는 '비동의 성폭력' 등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간음(姦淫)은 부부가 아닌 사람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의미한다. 즉 혼외정사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상대도 동의했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83) 동아일보, 2020년 10월 20일, 청산될 수 없는 인간이기에[2030 세상/도진수]

력 무고가 발생한 원인을 원천 차단할 효율적인 수단으로 무고 담론의 장에 출현한다. 그 실천 방식 중 하나로 "'골치 아프니까 (직장에서) 여성은 채용하지 말자[85]'"는 취재원의 말을 인용한다. 마치 미투운동의 부작용을 알리는 발화처럼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무고 담론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비담론적 장의 실천으로 연결된다.

한국일보와 연합뉴스도 동아일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펜스룰을 통한 여성 배제라는 비담론적 장의 실천을 배치한다. 한국일보는 성폭력 기사에서 무고를 우려하는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거의 빠짐없이 인용한다. "여성 비서를 고용하지 말자[86]"와 같은 펜스룰을 지칭하는 언표가 비록 성폭력 기사 안에서는 비판할 어조로 쓰였더라도, 무고 담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이다. 하나의 담론 작용은 어떤 것과 관련하여 결코 외재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허경, 2016: 125). 다시 말해, 성폭력 피의자를 비판하는 동시에 무고 피의자를 비판하는 언표는 양립 불가능하며, 담론의 장에서 모순점으로 표출될 뿐이다. "펜스룰은 진리"라는 성폭력 피의자의 언표는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다. 그렇게 되면 대중은 성폭력 피의자의 언표에 영향을 받고, 무고 피의자를 배제하는 담론을 구성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연합뉴스도 "여성과 남성의 접촉을 최소화[87]"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차단[88]"한다는 남성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일보와 마찬가지로 무고 담론에서의 '진리[89]'가 펜스룰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서술 방

84) 동아일보, 2018년 3월 17일, 희롱 아니면 여성과 말 못 하나? "펜스룰은 울타리가 아니라니까요"

85) 동아일보, 2018년 3월 17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성폭력 은폐, 징역형까지 가능"

86) 한국일보, 2020년 7월 12일, "박원순만한 남사친" "역시 펜스룰"…2차 피해 확산 우려

87) 연합뉴스 2018년 3월 13일, [카드뉴스] "여직원은 내 주변 60㎝ 안에 들어오지 마라"…황당한 '펜스룰'

88) 위와 같음

89) 푸코는 모든 종류의 '보편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작업을 평생에 걸쳐서 진행했다. 이때 '보편성'은 서구에서 시대에 따라 신, 섭리, 은총, 자연, 당연, 이념, 필연성, 필증성, 절대성, 객관성, 중립성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진리'라는 뜻이다. 푸코는 이른바 '진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시공 안에서 구성된 특정한 의미 맥락과 효과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고유

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무고 담론 구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여지가 더 크다.

무고 담론은 개인이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성폭력 범죄를 재개념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의 '접촉'만 줄이면 그만이라는 주장은 무고 담론 바깥의 외부 담론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테면 사회구조적 담론에서 법질서를 부각하고 페미니즘이 도를 넘었다는 담론이 형성된다. 남성 법학자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페미니즘은 조절되어야 하며,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90]" 한다는 언표가 나열된다. 위의 언표 집단은 무고죄 강화를 넘어 "무고죄 특별법[91]"이라는 담론으로 배치된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무고죄가 곧 거짓말하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는 전제도 발견된다[92].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93]"을 받으므로 "성범죄의 무고죄 형량을 높여달라[94]"는 청원 내용은 뒤집어서 보면 무고죄가 남성에게 적용될 리 없다는 강력한 확신 아래 작성된 내용으로 보인다.

언론사는 전반적으로 외부 담론인 법 담론에 지배받는 경향을 보인다.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폭력 범죄와 무고 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외부 담론의 전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비동의 성폭력' 담론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와 대칭되는 주장과 병존한다. 사법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 담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표 집합으로 활용하면서 법 담론이 무고 담론을 전유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명사임을 말하는 것이다(허경, 2016: 128-129).

90) 동아일보, 2020년 7월 22일, 조국, 박원순 사건에…"성범죄 피의자, 유죄추정 안 돼" 한국일보, 2020년 7월 22일, 조국,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유죄추정 안 돼"…'기승전조국' 불쾌감도

91) 동아일보, 2018년 5월 28일, 현직 사진가 "최대 피해자는 A…'비공개 촬영회' 사진사도 처벌해야"

92) 경향신문, 2018년 7월 19일, 청, '성폭력 무고죄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청원에 "적절한 방법 아니다"

93) 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5월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94) 위와 같음.

2) 진보 언론: 젠더 불평등 사회 구조의 개혁

경향신문은 담론장에서 말할 수 있는 발화자로 무고 피의자를 통해 젠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이라는 젠더 기반 폭력을 불식해야 할 근원적인 차원의 담론을 고려한 언표가 배치된다. 주로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보완,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처벌강화라는 담론의 주제 안에서 상호담론성을 모색한다. 연대와 지지를 통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보수 언론이 구성한 무고 담론을 전복하려는 방식으로써 성폭력 통념을 비판한다. 특히 "'강간 문화'를 성찰 및 일상의 성차별 개선[95]"하고 "남성 위주로 굴러왔던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96]"는 등 사회 분위기나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을 재형성하려고 시도한다.

경향신문은 다른 언론사보다는 성폭력 피해자 목소리나 여성단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론의 장 안에 끌어들이고 누가 말할 수 있는 주체인지 명징하게 드러낸다. 이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성폭력 무고를 피해자를 향한 '역고소'로 규정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라는 무고 담론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과 무고로 몰려 기소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손모씨(5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씨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되레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현실이 두렵고 답답했다"며 "미투(#MeToo) 운동이 이런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97].

경향신문은 무고 피의자를 무고 담론의 발화 자격을 부여하고 담론의

95) 경향신문, 2018년 4월 25일,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 (4) '강간 문화'를 성찰 및 일상의 성차별 개선
96) 연합뉴스, 2018년 3월 29일, '미투 운동' 두 달…바뀐 것 그리고 바꿔야 할 것
97) 경향신문, 2018년 2월 27일, [미투] '상사 성추행' 폭로했다 무고 몰린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무죄

주체로 내세운다. 연구 대상이 된 어떤 기사에서도 앞서 모든 언론사에서 등장했던 '펜스룰'이라는 언표는 등장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 담론은 또 다른 공격 방식으로, 펜스룰이라는 비담론적 장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아서다.

요컨대 성폭력 무고라는 담론의 장 안에서 보수 언론 등은 여성을 배제하는 비담론적 장의 실천으로서 '펜스룰'이라는 주장으로 수렴한다. '무고죄 강화'와 같은 담론의 주장은 여성만이 처벌 대상이라는 전제를 표출한다. 반면 경향신문은 담론의 주체인 무고 피의자에게 전적으로 발화 자격을 부여하고 대항 담론을 구축한다.

제 3 절 소결

이 장은 언론이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와 말할 수 없는 대상을 형성하면서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를 비롯한 한국일보와 연합뉴스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의자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축한다. 이와 반대로 무고 피의자를 주체로 두고 대항 담론을 생성하는 언론사는 경향신문뿐이었다.

이런 보도 성향은 언론이 정치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데 그치지 않고 젠더 관련 보도에서도 격차를 보인다는 홍지아(2017)의 연구와 맞닿아있다. 여기에 중도 혹은 특정 논조가 없는 언론사도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보수 언론 쪽에 더 가까웠다. 연구 대상이 된 4개 언론사 가운데에서는 경향신문이 유일하게 차별화된 무고 담론을 구성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3개 언론사는 무고 피의자의 발화를 희박화함으로써 담론의 대상으로 구축한다. 반면 경향신문은 성폭력 통념에 의해 무고 피의자가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진보 계열 언론을 제외한 모든 언론사는 성폭력 피의자로 대표되는 남성중심적 젠더 질서에 기대어 무고 피의자를 담론의 대상으로 구성한다. 동시에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 암묵적으로 무고 피의자라는 언표 아래 전제된 여성 집단을 담론의 대상으로 출현시킨다.

동아일보는 성폭력 피의자를 비롯해 주변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피해자'라는 위치를 구성한다. 경향신문은 동아일보와 반대로 역고소의 피해자로서 무고 피의자를 위치시켜 대항 담론을 구축한다. 한국일보와 연합뉴스는 형식적 객관주의라는 틀을 빌려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 피의자를 모두 발화자로 내세우나, 누가 더 피해자인지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남성중심적 시각을 통해 재단한다.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 "역고소"라는 개념은 무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정립되었다. 반면 성폭력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맞고소"로 통용되며, 성범죄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으로 성폭

력 피의자(남성)를 향한 누명임을 드러낼 때 쓰인다.

성폭력 피의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성폭력 무고 담론은 ‘펜스룰’ 같은 개별 예방책이나 ‘무고죄 강화’와 같은 해결책으로 귀결된다. 반면 경향신문은 ‘펜스룰’이나 무고죄 강화와 같은 담론을 원천 배제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 몰리지 않도록 해결책을 모색한다.

요컨대,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연합뉴스까지 연구 대상이 된 네 언론사 중 세 곳은 모두 성폭력 피의자를 주요 발화자로 구성한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와는 대립하는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폭력 피의자의 입장이나 어휘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식을 택한다.

성폭력 무고 담론이 성폭력 피의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무고 피의자는 담론장에서 대상화되며 피해를 실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까지 함께 진다. 무고라는 법 논리는 성폭력 피해자 대신 무고 피의자라는 위치 전환을 통해 피/가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려던 무고 피의자는 성폭력 피의자와 진실 경쟁을 벌이다가 법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무고 담론은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불평등을 가리고 여/남 관계에서 발생한 개별 책임으로 환원한다.

성폭력 무고는 개별 사건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성폭력과 같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성별 위계 권력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도 부지기수다. 이 같은 병렬식 보도는 무고 피의자가 실제 경험하는 불평등을 삭제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제 3 장 뉴스 댓글에서의 성폭력 무고 담론

이 장은 네이버에서 수집한 신문 기사의 댓글 가운데 공감 수가 많은 댓글의 내용을 검토했다. 단문인 뉴스 댓글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와 배제되는 대상의 규칙적 집합과 같은 언표를 묶어내어 성폭력 무고 담론을 분석했다.

제 1 절 포털뉴스 댓글 내용의 분류

연구 대상이 된 신문 기사 509건 가운데 표 10처럼 네이버에서 100건 이상 댓글이 달린 기사 134건을 간추렸다. 이 가운데 추천 수가 높은 댓글을 기사당 각 세 건씩 수집했다.

댓글 수가 100건 이상인 기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언론사는 연합뉴스(73건, 54.5%)로 과반수를 기록했다[98]. 그 뒤를 이어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사가 각 22건(16.4%), 21건(15.7%), 18건(13.4%)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기사마다 공감[99] 수가 가장 많은 댓글 상위 세 개씩을 선정[100]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댓글 수는 총 402건이다.

---

98)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네이버 기준 기사 수는 총 539만1,000여 건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합뉴스 기사는 총 147만9,000여 건으로 전체 기사량의 27.4%를 차지했다. 반면 일간지는 통신사보다 기사 수가 현저히 적다. 같은 기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량은 각 6만3,349건, 5만5,197건으로 연합뉴스 기사량의 3~4% 수준이다. (빅터뉴스, 2019년 12월 19일)

99) 2016년 4월 21일부터 시작된 네이버의 '통계로 보는 댓글' 서비스는 뉴스에 댓글을 단 이용자의 성별·나이별 통계를 공개한다. 네이버는 특정 기사를 본 이용자의 남녀 비율과 10대부터 50대 이상의 연령대 추이를 백분율로 분석해 제공한다. 통계 그래프는 기사 하단의 댓글 영역에 나타난다. 외부에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으나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한정해 이 그래프가 나타난다(뉴시스, 2016년 4월 22일). 이번 연구에서 댓글 100건 이상 수집된 기사 134건 중 110건(82%)이 '통계로 보는 댓글'에 해당한다. 기사 110건에 달린 전체 댓글 작성자 중 평균 26%만이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평균 74%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평균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26%)와 50대(18%) 순이었다. 네이버 댓글 작성자 중 상당수는 3~40대 남성으로 유추할 수 있다.

100) 네이버는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 아이콘을 통해 다른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평가받는 댓글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뉴스 아래 '순공감순'으로 댓글을 상

[표 10] 언론사별 네이버 뉴스 댓글 100건 이상 기사 건수

언론사	댓글 100건 이상 기사(건)	비율(%)
경향신문	18	13.4
동아일보	21	15.7
연합뉴스	73	54.5
한국일보	22	16.4
합계	134	100

댓글 402건 중 4분의 1가량인 103건은 아래 표 11과 같이 '성폭력 피의자(성폭력 가해자) 비판' 댓글이다. 이와 대비되는 '무고 피의자 비판' 댓글은 53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댓글 내용의 유형은 '정치 비판(52건)'과 '법원/법률 비판(49건)', '일반여성 비판(48건)'과 '검·경 비판(33건)'이 주를 이룬다. 댓글 내용은 성폭력 무고 사건의 당사자인 성폭력 피의자와 무고 피의자를 향한 비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정치인, 사법기관과 같은 권력 주체를 향한 비판이 주요 댓글 내용이었다.

[표 11] '성폭력 무고' 기사의 댓글 범주(중복 없음, 단위: 건)

범주	무고 피의자 비판	성폭력 피의자 비판	언론 비판	검경 비판	법원 법률 비판	정치 비판	일반 여성 비판	일반 남성 비판	해결 방안 제시	기타	총계
총계	53	103	18	33	49	52	48	16	14	16	402

댓글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성폭력 피의자 비판(103건)'의 대상은 주로 연예계 유명인이나 정부 고위 관료였다. 위 유형의 댓글은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이들이 무고로 피해자를 맞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면 이용자가 아래 댓글처럼 비판하는 형태를 취한다.

> 김학의 이 뻔뻔한 인간이 뭐 잘했다고 피해자 여성에게 무고로 고소했다고라? 이런 인간이 무슨 차관이라고? 그 윗선인 무마를 종용한 곽상도

위에 노출한다(오세욱, 2020).

> “황교활(황교안)”을 집중 조사 수사하면 정답이고 이 인간들을 직권남용 동행사로 구속수감 하라! (공감 1405, 비공감 134)[101]

반대로 ‘무고 피의자 비판(53건)’ 댓글은 성폭력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반대로 무고 피의자가 법적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앞 장에서 나왔던 언론 기사의 빈출 인물인 ‘김흥국’ 관련 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의 성폭력 피의자도 다수 언론 보도로 인해 진정한 피해자로서 담론의 우위를 점유한다. 그로 인해 관련 기사의 댓글은 아래와 같이 무고 피의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상당수 차지한다.

> A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사건 초기 주장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고 감금한 남성들은 대체 다 어디가고 스튜디오 실장과 사진유포 남성 1인만 처벌하고 왜 나머지 남성들은 나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까? 애초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음란사진이 유포되자 그거 덮을라고 거짓 폭로한 거 아닙니까 성범죄 피해자라고! (공감 9942, 비공감 780)[102]

불특정 다수를 비판하는 댓글에서는 ‘일반여성 비판(48건)’ 범주의 댓글이 ‘일반 남성 비판(16건)’ 범주에 속하는 댓글 수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남성 추정 댓글 작성자가 적은 “지들이 하는 미투는 착한 미투 남자들이 하는 유투는 나쁜 유투 역겹네 ㅋㅋㅋㅋ(공감 228, 비공감 86)[103]” 같은 댓글이 대표적이다.

‘법원/법률 비판’ 댓글은 주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거나 무고죄 형량 강화를 주장한다. 이 중에서도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자는 정도를 “무고

---

101) 연합뉴스, 2019년 4월 9일, 김학의, 반격 나섰다…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혐의 고소

102) 연합뉴스, 2019년 2월 6일, A,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모욕 고소…“악플은 범죄”

103) 한국일보, 2018년 3월 26일, “당신도 성범죄 무고 피해자 될 수 있다” ‘유투 운동’ 논란

는 성범죄에 준하는 형벌을 줘야 한다[104]"는 주장처럼 성폭력 범죄와 무고죄를 대칭 관계로 인식하고 형량 수준을 논하는 댓글이 주를 이룬다. 이런 댓글은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함으로 인해 '무고 범죄자'인 가해자 여성을 싸고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비판 댓글은 대체로 성폭력 피의자 비판 내용에 더 가깝다. 특히 권력자와 관련된 성폭력 무고 기사에서 댓글 작성자는 성폭력 피의자를 비판하면서 이를 눈감아준 수사기관을 규탄한다. 일례로 정부 고위 관료였던 '김학의' 관련 기사 댓글은 "피해자, 증인, 증거가 김학의가 맞다는데 검찰은 아니라는 희대의 어거지 생쇼(공감 915, 비공감 7)[105]"와 같이 성폭력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이나 경찰을 비판한다.

이외에 '정치 비판(52건)'이나 '언론 비판(18건)' 댓글은 주로 현 정권을 불신하거나 언론 취재의 편향성 등을 지적한다[106]. '정치비판' 댓글의 내용은 아래처럼 기사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정치권이나 청와대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댓글도 있으나, 관련 없는 댓글도 부지기수다.

> 죄를 짓더라도 "더듬어민주당" 을 달고 죄를 지어라 그럼 피해자도 "피해호소인"으로 불린다 16년 이후 대한민국은 내로남불 내편 아니면 죽여야 하는 그런 더러운 정치를 하는 곳으로 변했고 문재인 이라는 희대의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탄생 했다 군사 정권 전두환에 버금가는 거의 최악의 쓰레기다~ (공감 682, 비공감 12)[107]

---

104) 연합뉴스, 2018년 1월 30일,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105) 경향신문, 2020년 3월 11일, 검찰, '김학의 별장 성폭행' 고소 무혐의…무고죄도 불기소

106) 정낙원과 김성욱(2020)은 네이버 뉴스 댓글이 다음 뉴스 댓글보다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고 분석한다. 네이버 댓글 작성자는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번 연구에서 수집된 정치비판 댓글에서도 선행연구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107) 연합뉴스, 2020년 12월 18일, 또 구속 면한 오거돈…다른 성추행 혐의 추가됐는데도 영장 기각(종합2보)

‘언론 비판’ 댓글은 기사를 쓴 기자 개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언론사를 대상에 불만을 토로하는 형식이다. 대체로 아래처럼 기사 본문과 상관없이 특정 언론을 적대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한겨레.....아무튼 이름을 그럴듯하게 지은 것은 속은 무지 썩었더라. 이싯점에 그런기사 만들면 국민이 아그렇구나하고 공감할줄알았더냐. 반드시 진상을 밝혀 10년이상은 살게해야 이런짓들 못한다 (공감 185, 비공감 32)[108]

그런데 기자 성명을 통해 작성자가 여성으로 추정되는 기사라면 ‘언론 비판’ 댓글 내용은 위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댓글은 특정 언론사 비판 대신 아래처럼 ‘일반여성 비판’ 댓글과 유사한 범주로 작성된다. 댓글 작성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기자에게 성별에 기반해 편파 기사를 썼다고 비난한다.

> 이딴 쓰레기 기사내는게 알고보니 여자분이시네요.무고죄 성립하는게얼마나 어려운건대...미투는 개뿔 돈뜯어내려고하다역고소먹는것까지남자탓하려고 이딴기사쓰는건가? (공감 2984, 비공감 1298)[109]

제 2 절 댓글 내용이 구성한 성폭력 무고 담론

1. 대상의 형성: 동의를 뒤집는 여성

포털뉴스 댓글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성폭력 통념에서 파생된 무고 담론의 대상을 드러낸다. 바로 거짓말로 남성에게 고통을 가하는 여성이다. 성관계를 좋아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척하는 여성, 성매매에 동의했으

108) 한국일보, 2019년 10월 14일, ‘윤석열 논란의 진원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109) 한국일보, 2018년 4월 23일, “성폭행, 무죄로 만들어 드려요” 돈벌이 수단된 성범죄

면서 손바닥 뒤집듯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여성, 거짓말로 남성을 곤궁에 빠뜨리는 대상은 담론 외적으로 존재했던 전형적인 꽃뱀과 같은 여성이다.

스스로 신원을 드러내고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한 일부 미투운동 참가자는 무고 담론의 내부로 영입되어 대상으로 형성되었다. 무고로 고소당한 미투운동 참가자는 댓글 작성자로부터 대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유튜버 A는 성폭력 피의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이 성폭력 피의자가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자 A를 향한 비난은 뉴스 댓글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증폭되었다.

> 이건 아니다. 돈 좀 쉽게 벌려고 옷벗고 사진찍다가 일어난 일이다. 그런 일이 위험성이 있다는 걸 A도 알았을텐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음성적인 일에 들어간 잘못도 큰데 자성할 줄은 모르고 남탓만 해? 유투브에 터트릴려면 정확한 사실을 조사-해서 진실만 터트려야지 마구잡이로 터트려서 스투디오 사장을 죽음으로 몬 것은 살인자라고 욕먹을 잘못이 아니냐? (공감 4347, 비공감 489)[110]

댓글 작성자는 A를 진실이 아닌 경험을 “마구잡이로 터트려서” 남성을 죽인 살인자로 규정한다. 이때부터 A는 범죄자로 치환되면서 A의 성폭력 경험이 거짓말로 치부된다. 미투운동 전면에 나선 A는 거짓말쟁이란 낙인과 함께 발화권을 잃어버린다. 성폭력을 고소한 여성은 “미투가 만든 괴물(공감 105, 비공감 2)[111]”로 지칭된다. 무고 담론을 형성하는 언표는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되면서 규칙적 집합을 형성한다. 무고 담론이 형성되면서 미투운동을 통해 가시화한 성폭력 경험은 무화(無化)된다. 무고 피의자는 동의를 뒤집고 거짓말한 여성이므로 담론의 장에서 발화를 금지당한다.

---

110) 연합뉴스 2019년 2월 7일, A 측 “악플러 100여명 이어 추가 고소…공익 차원”
111) 동아일보, 2018년 9월 12일, 스튜디오 실장 동생 추정 A “A 낚시 사진 경악, 우린 지옥인데…”

무고 피의자 비판 댓글 53건 중 A처럼 특정 성폭력 고소인 비판 댓글이 각 23건으로 전체 댓글의 약 43%를 차지한다. 2018년 5월 게시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112)]”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자는 법안명에 A 이름을 붙여 ‘A법’으로 명명할 정도였다. 이처럼 수집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용은 여성 비난이다. 뉴스 댓글 작성자는 무고 피의자의 주장을 의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전반을 담론의 장으로 영입해 거짓말쟁이라는 대상으로 구성한다. 여성 집단을 묶어 비난하는 댓글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폭력이 마치 대립하는 여성과 남성의 주장이 부딪혀 진실 여부를 가리는 사건처럼 상정되기 때문이다. 담론의 장에서 말할 수 있는 주체는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이 성관계 전후로 동의를 뒤집는다고 전제하면, 성폭력을 성립하지 않는 범죄로 재구성할 수 있다.

> 여자와는 백마디말 잘하다가 한번만 실수해도 여자 기분에 따라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가급적 말은 안하는게 좋다 (공감 681, 비공감 125)[113)]

> ㅋㅋ 진짜 저것도 없으면 이제 여자가 말하는게 다 진실이여 맘에 안들면 그냥 아주 소설하나 쓰면 남자하나 보내기 쉽쥬 (공감 215, 비공감 15)[114)]

위의 두 댓글은 A를 비롯한 여성이 동의한 사안을 부인하면서 남성의 인생을 파탄 내는 무고 피의자로 상정한다. 여성은 자기 기분에 따라 거짓말로 “소설 하나 쓰면” 남성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치로 배치된다. 댓글 작성자는 “한 번만 실수해도 여자 기분에 따라”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고 상정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성폭력 무고 담론의 외재적

112) 연합뉴스, 2018년 6월 1일, 유튜버 A 사진 최초촬영자 확인…경찰, 유출 혐의 조사

113) 동아일보, 2018년 3월 17일, “탁자 아래로 손 내리지 마라, 마주치는 것은 술잔뿐”

114) 한국일보, 2020년 11월 23일,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에…“무고 입증 최후 수단” 반발도

장에서 형성된 비동의 성폭력 담론과도 무관치 않다.

본래 1990년대 초중반부터 비동의 성폭력 처벌 여론이 존재했다(이종걸, 1995 참고). 한동안 학계나 여성 운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되던 비동의 성폭력 처벌법은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상대가 비동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안과 형법 일부개정안이 7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장다혜, 2018). 현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115].

이처럼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나면서, 여성은 동의한 성관계도 뒤집는 대상으로 상정되어 담론장에서 발화권을 잃는다. 남성에게는 "정말 어지간히 하셔 한탕을 바라는 사람들(공감 945, 비공감 353)[116]"이므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발화 자체가 금지된다.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했음에도 "한탕을 바라는" 마음으로 허위 고소하는 여성은 무고 담론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이때 모든 여성이 동의를 뒤집는다는 전제는 무고 담론장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진짜 성폭력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을 구성한다. 특히 미투운동 시기 댓글 작성자는 아래처럼 성관계에서 동의했다가 말을 바꾼 여성을 담론의 장에서 진짜 가해자처럼 위치짓는다.

> 미투 피해자들이 왜 그런지 아니? 늘 무고로 나대는 년들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더 보는 거야. 2차 가해자는 남자보단 여자들이 주로 하는 거야 미투 운동해도 꽃뱀년들 덕분에 진짜 피해자들마저 꽃뱀 취급이기나 회사 모임 등에서도 안 좋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중략) 남자 탓 웃기지마 여자가 더욱 여자들을 힘들게 한다. (공감 1837, 비공감 1010)[117]

---

115)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은 "형법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16) 연합뉴스, 2018년 3월 29일, '미투운동' 두 달…바뀐 것 그리고 바꿔야 할 것

117) 동아일보, 2018년 6월 20일, 미투 폭로뒤 실직 40명중 1명만 복직… 생활고에 또 운다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에 있는 댓글 작성자는 담론장에서 일반여성을 꽃뱀과 분리하여 “저런 여자들 때문에 진짜 성폭행당한 여성들이 피해본다[118]”고 우려한다. 꽃뱀은 금전과 같은 물질적 대가를 요구한다는 함의가 깔려 있으므로, 사실상 무고 피의자에게는 ‘창녀 낙인[119]’이 찍힌다. 마치 고대 아시리안 법처럼 베일로 가린 ‘존중받을 만한’ 여성과 매춘부인 베일을 벗은 여성(Lerner, 1986: 240)이 구분되는 원리와 비슷하다. 댓글이 형성하는 무고 담론은 ‘창녀’로 명명된 무고 피의자와 대조되는 ‘진짜 피해자’를 통해 여성 집단 전체를 담론의 대상으로 배치한다.

실제로 (여성) 무고 피의자가 상대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거짓말로 미투하는 여성으로 확장된 ‘꽃뱀’은 무고 담론의 대상으로 형성된다. 수많은 여성이 일상에 만연한 성폭력 경험을 발화해도 이런 문제는 특수한 사례, 또는 극소수인 흉악범과 같은 사회 일탈자나 권력자만이 저지르는 범죄로 좁혀진다. 무고 담론이 구성한 특정한 상황과 조건을 거부하고 일상 속 성폭력 경험을 발화하려는 여성은 거짓말로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대상이므로 담론의 장에서 배제된다.

2. 언표 작용의 양태: 권력이 없는 남성

언론은 형식적 객관주의라는 허울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를 성폭력 피의자와 무고 피의자 양쪽으로 보고 발화나 언표를 규칙적으로 구성한다. 무고 피의자의 발화가 희박화되더라도 무고 담론을 형성하는 성폭력 피의자의 발화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 댓글 작성자 상당수는 스스로 (일반) 남성이라는 위치를 드러내면서 무결한 시민이라는 언표를

118) 연합뉴스, 2019년 12월 17일, 법원 “성폭력 허위고소는 중대 범죄”…항소 기각
119) 원미혜(2011)는 ‘창녀’ 낙인(‘whore’ stigma)을 성매매 여성뿐만이 아니라, 실재가 아닌 표상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낙인찍힌 호명을 사용했다. 무고 피의자도 댓글에서 실제 성매매 여성인지와 관계없이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는 주체로 구성된다.

사용한다.

무고 담론이 구성한 특정 상황과 조건에서만 '진짜 성폭력'이 인정된다. 일부 권력자나 연예인처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거나 조두순[120] 같은 흉악범이 가해자일 때에 한정해서 무고 담론의 장 안에서 성폭력을 범죄로 구성한다. 권력층 남성의 성폭력 피소 기사에서는 "아 진짜...이 넘 진짜 나쁜 넘이던데...기사가 자꾸 없어지네요...(공감 215, 비공감 17)[121]"과 같은 비판 댓글이 나온다. 사회 권력층인 "진짜 나쁜" 성폭력 피의자와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과 같이 '순수한 피해자'일 때 댓글 작성자는 성폭력 가해자를 일반 남성과 철저히 분리하고 공격한다[122]. 성폭력 무고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더라도 뉴스 댓글 내용이 무작정 무고 피의자를 비난하는 기조는 아니다. 오히려 "죄값을 받아야하는데 법이 참으로 이상하다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 개법 언제쯤 개법에서 벗어날수있을까 (공감 1812, 비공감 43)[123]"와 같이 성폭력 처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탄한다. 댓글 작성자는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에서 무고 담론이 용인한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관련 언표를 나열한다.

그러므로 장삼이사의 성폭력 피소 기사가 나오면 댓글 작성자가 사용하는 언표는 달라진다. 마치 죄 없는 일반 남성도 언제든 성폭력으로 피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언표가 사용된다. 대다수 (남성) 댓글 작성자는 무고 담론이 재구성한 권력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권력이 없는 남성'으로 자리매김한다. 댓글 작성자는 담론장에서 권력이 없는 남성이 동의를 뒤집는 여성에 의해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말할 권리

120)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김태명, 2018).

121) 한국일보, 2019년 4월 9일, 김학의의 반격 성폭력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

122) '악마'인 성범죄자를 향한 공격은 비단 담론의 장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조두순은 여러 '일반 남성'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했으며, 2021년 12월 16일 한 20대 남성에 의해 피습되었다. 조두순을 공격한 남성은 범행 동기를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뉴시스, 2021년 12월 20일). 그러나 권력자나 사회 지도층 성범죄자를 향한 물리적 공격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아직 없다.

123) 한국일보, 2018년 3월 8일, "내 잘못이 아니라 '성범죄'였다고 인정해 주세요"

를 갖는다.

>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경찰관과 검찰도 책임을 지게 하고 국가는 손해 배상을 해야만이 옳을 거란 생각이 든다, 억울,, 말로 표현이 안된다 (공감 629, 비공감 0)[124]

위와 같은 댓글이 공감순 댓글 맨 윗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권력이 없는 남성'은 무고 담론 주체의 위치를 전유한다. 주체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표는 담론 대상의 권력화이다. 권력이 없는 남성은 담론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의 위치임에도 국가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논리로 무고 담론을 구성한다.

권력이 없는 남성은 "한남자 인생 망가뜨려놓고 그래도 집유구나 ㅋㅋㅋㅋㅋ 이래서 대한민국 떠나야된다고 ㅋㅋㅋㅋ 펜스룰 (공감 303, 비공감 5)[125]"와 같이 국가를 불신하는 쪽을 택한다. 무고 담론에서 여성은 국가를 등에 업고 남성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라는 대상으로 치환된다. 반대로 남성은 여성의 부당한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방어하는 주체라는 위치를 점유한다.

무고 담론에서 남성은 권력이 없다는 언표로 구성되므로 유일한 주체로서 발언권을 얻는다. 댓글 작성자 중 일부는 아래 댓글처럼 여성을 말할 수 있는 주체로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댓글은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여성을 옹호하는 댓글은 무고 담론의 규칙과 어긋난다고 여겨진다.

> 떳떳하고 당당하면 하던대로 살면 되지 미투운동이 대세가 되니까 이제와서 펜스룰? 평소에 책 잡힐 행동들 많이 하고 사셨나봄~ 이래서 잠재적 성범죄자들이 찔려서 몸 사리는게 펜스룰이라는 비아냥이 맞는듯하네.한

---

124) 동아일보, 2020년 12월 14일, 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 7년 선고

125) 연합뉴스, 2018년, 5월 25일 성매매 혐의 연예인, 경찰에 "성폭행당했다" 거짓 진술

남젠더권력 못 잃고 부들부들하다 마지막 발악으로 또다른 여성차별을 하겠다는게 펜스룰.앞으로 펜스란 말 입에 올리는 남자는 거르세요 (공감 436, 비공감 80)[126]

위와 같은 발화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배제되거나 희박화됨으로써 담론 구성에 주도적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언표는 “진짜 범죄자”와 선을 그은 권력이 없는 남성에게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래 댓글처럼 “잠재적 피해의식”을 근거로 여성을 가해자의 위치로 이전할 정당성을 획득한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남성은 사회 지도층이거나 소수의 흉악한 사람일 뿐이며 권력이 없는 남성과는 무관하다. 반면 성폭행 고소인은 꽃뱀이나 성매매 여성이며, 수사기관에 거짓말함으로써 남성을 궁지에 모는 가해자이자 무고 피의자이다.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데 남자 역시 잠재적 피해의식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 가정을 지키려는 본능이 잘못되었다 할 수 있나? 모대학 학번 여학생 대표가 본인은 남자들 외모평가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여성의 외모평가 하지마라 너 보라고 화장한 게 아니다 라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했지 게다가 성폭력 비난하면서 남자의 XX깨버린다는 성폭언을 내뱉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공감 6461, 비공감 1401)[127]

무고 담론장에서 성폭력 경험을 발화하는 여성은 거짓이므로 말할 수 없는 대상이다. 권력이 없는 남성은 거짓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므로, 말할 권리를 전유한다. 발화 권리 자체가 담론장 내에서 권력을 가졌다는 방증이나, 이를 드러내는 언표는 없다. 권력이 없는 남성의 인생은 망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댓글이 언표의 집합 속에 말뭉치로 모인다. 현

126) 동아 일보, 2018년3월 8일, [세계여성의날] ‘펜스룰’ 갑론을박…“위드유 외치며 펜스룰? 언어도단”

127) 연합뉴스, 2018년 3월 13일, [카드뉴스] “여직원은 내 주변 60㎝ 안에 들어오지 마라”…황당한 ‘펜스 룰’

실에서 인생이 망가지는 건 누구인지, 무엇이 성폭력을 추동하는지는 담론장 안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조작될 수 있다는 공포만이 담론장에서의 언표를 통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 내연관계 있다가 성폭행 신고로 남자는 인생 파탄 났는데. 이게 무고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무고라는거야? (공감 111, 비공감 0)[128]

위 댓글 작성자는 (여성) 무고 피의자에 의해 매장된 사례를 통해 권력이 없는 남성의 위치를 부각한다.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비난 방향은 위 댓글과 같이 무고 피의자를 넘어 여성 전반으로 향한다. 권력이 없는 남성이 성폭력에 피소될 때의 맥락이나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배경은 무고 담론의 언표에서 배제된다.

> 강간으로 재판받은 사람은 인생 망했을 것인데... 근 2년 동안 죽을 고생했을 것인데.. 해도 너무하네. 너무 관대하시네요 (공감 825, 비공감 11)[129]

위의 댓글이 달린 기사는 성폭력으로 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무고 피의자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런 기사는 댓글 작성자에게는 권력이 없는 남성이라는 주체의 위치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효과적인 언표이다. 위와 같은 댓글은 권력이 없는 남성을 국가가 차별하는 증거이자 남성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고 담론의 언표로 형성한다. 성폭력 무고 담론은 권력이 없는 남성, 나아가 남성 전반의 삶을 핍박한다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

128) 한국일보, 2020년 9월 17일, 내연관계 발각되자 성폭행 주장한 여성…대법 “무고 아니다”

129) 연합뉴스, 2018년, 5월 25일, 성매매 혐의 연예인, 경찰에 “성폭행당했다” 거짓 진술

3. 개념의 형성: 거짓말로 조작된 범죄

댓글은 거짓말하는 여성을 처벌할 수단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강구한다. 그러나 무고 담론이 구현한 사법기관은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의 편에만 서는 집단처럼 구성된다. 성폭력 피의자는 사법기관의 편파 판결 때문에 무고로 부당하게 처벌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성폭력 피의자는 결백하다는 발화권을 얻고 담론에서의 주체 위치를 전유할 근거가 생긴다.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와 대상을 설정하면서 언표를 나열하면 '거짓말'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폭력 무고 담론의 개념은 거짓말로 조작된 범죄로 구성된다.

거짓말하는 무고 피의자에게 사법기관이 조력한다는 착시로 인해 권력이 없는 남성 주체의 지위는 공고해진다. 댓글 작성자는 사법기관이 거짓말하는 여성의 주장만을 믿는다는 텍스트를 통해 무력한 남성의 위치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한 여성의 일방적인 구두 증언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보다 위에 있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정한 성차별이다(공감 414, 비공감 7)[130]"이라는 댓글처럼 마치 사법기관이 여성의 "구두 증언", 그러니까 거짓말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위에 둔다고 무고 담론의 상황을 구성한다.

> 여자측의 일관된 진술 다시 말해 잘 짜놓은 거짓말만 있으면 멀쩡한 사람이 강간범으로 처벌됩니다. 심지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냥 여자측이 떼쓰면 증거보다 넘치는 (성 인지)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꼴페미 개판사들이 형량을 마구 때려줍니다. (공감 983, 비공감 24)[131]

기사 제목인 "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 7년 선고"를 보면 여성의 거짓말로 보인다. 기사 내용은 50대

130) 연합뉴스, 2018년 5월 31일, 'A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 매뉴얼 헌법소원

131) 동아일보, 2020년 12월 14일, 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 7년 선고

여성과 성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짜고 두 조카에게 거짓말을 시켜 이웃집 남성을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한 사건이다. 그 두 조카 중 한 명이 지적 장애인이자 성폭력 피해자였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들 가족 사이에서 기사 안에 다 담기지 못한 위력 관계에 의한 유·무형의 폭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이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도 짧은 기사 내용 안에서 알긴 어렵다.

그러나 위의 댓글은 단순보도 기사 내용이나 제목만으로 "여자 측이 떼쓰면" 법원이 여성의 편의에 맞춰서 판결한다는 담론의 상황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뿐이다. 법원은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곳이므로 무고 담론장에서 거짓말로 조작하는 주요 행위자이다. 댓글 작성자는 무고 담론의 현실을 더 납작하게 형성하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감을 얻는다. 그 결과 기사 제목과 댓글이 연결되면서 마치 여성의 한 마디만 믿고 사법부가 죄 없는 남성을 처벌한 사건처럼 재구성된다.

댓글 작성자는 사법부의 법 집행을 비논리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행위로 치부하고, 법적 절차 전반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도 그 '성인지 감수성'인지 뭔지 그거냐? 나라 꼬라지 ㅋㅋㅋ (공감 194. 비공감 7)[132]" 와 같은 댓글처럼 성 인지 감수성을 조롱하고 거짓말하는 여성을 처벌하라는 무고 담론을 증폭한다. 현실 속 "사법부는 (성 인지) 감수성의 과잉이 아니라 과소(양현아, 2011)"하며,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사회 통념[133]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오히려 성차별 판례를 양산한다(김엘림, 2015). 댓글 작성자가 구성하는 담론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표면적인 언표를 반복 나열함으로써 거짓말로 조작된 범죄로 조합한다.

---

132) 연합뉴스, 2020년 9월 17일,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

133) 김엘림(2015)이 지적한 사회통념은 성별에 따라 기질과 역할 및 능력을 구분하여 여성은 약하고 열등하며 책임감이 없고 비합리적, 감정적이며 섬세하여 사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고 남성을 보조하는 일과 육아와 가사노동 등 돌봄 노동에 적합한 반면, 남성은 사회 활동에 적합한 기질, 능력, 역할을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 관(성별특질론)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폭력 문제 및 여성이 겪는 임신·출산·육아·가사노동 등의 문제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보는 공·사 영역 분리론과 여성은 성적으로 정숙해야 하는 반면, 남성은 성욕이 강한 속성을 가진다는 이중적 성윤리기준도 있다.

김치년 눈치보는 경찰...둘중 하나는 죄값을 치룰 수 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한민국 견찰보소 (공감 120, 비공감 23)[134]

댓글 작성자는 사법기관이 거짓말로 조작된 성폭력을 유죄로 만들어냈다는 언표를 사용한다. 연예인인 성폭력 피의자의 무고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된 기사에서 무고 피의자가 경찰을 조종해 '유(성폭력 사실이 있음)'를 창조했다고 서술했다. 현실에서의 성폭력은 성별 위계질서에서 배태한 폭력이자 남성(성)의 권력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폭력(men's power over women)으로 남성성/여성성의 위계적인 질서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폭력(이나영·허민숙, 2014)이다. 즉, 불평등한 성별 위계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약자를 향한 공격이자 폭력이다.

성폭력이 어떤 성격의 폭력인지 공식 통계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9년 기준 검찰에 기소된 성폭력 사건 3만2,029건 가운데 여성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2만8,138건[135]으로 전체의 87.9%이다(대검찰청, 2020). 반대로 같은 기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3만3,551명 중 남성이 3만2,256명으로 96.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성인 남성은 3만180명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89.9%이다. 결론적으로 (성인) 남성이 여성이나 남성, 또는 청소년 등 젠더화된 몸에 감행하는 성별화된 폭력이 성폭력이다.

그러나 댓글 작성자는 성폭력이 거짓말로 조작된 범죄라는 개념에 대항하는 언표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무고 담론 안에서 현실을 재구성한다. 현실에서 '권력이 없는 남성'에 의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성폭력 사건이나 통계는 담론장 안에서 논의되지 못한다.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희박화된다. 무고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이게 나라냐 ㅋㅋ? 지금도 꽃뱀들은 거의 처벌도 안하자나 ㅋㅋㅋㅋㅋ(공감 642,

134) 연합뉴스, 2018년 8월 29일, 경찰 '김홍국 성폭행' 폭로에 무고죄 '무혐의'…검찰, 보완 지시

135) 이 가운데 15세 이상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총 1만6,211건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 사건의 50.6%를 차지한다.

비공감 192)[136]"라는 댓글을 작성한다. 댓글 작성자는 마치 사법기관이 편파적으로 여성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언표만 반복적으로 나열한다.

> 성폭력은 권위의 문제이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자를 낮춰보니 생기는 일로, 이를 단순히 남성 중심의 사회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은 남성은 무조건 성폭력 가해자라는 일반화를 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나와있는 언어성폭력 같은 경우 여성도 충분히 남성에게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자꾸 남녀 성대결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공감3529, 비공감 1346)[137]

위의 댓글도 앞서 다른 댓글과 마찬가지로 '권력이 없는 남성'이 아닌 권력자만이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언표를 반복한다. 권명아(2021)는 여성이나 소수자를 존중하면 남성이나 주류집단이 차별받는다는 역차별론이 거론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성폭력 피해 고소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폭력 형태인 '차별 부인주의'가 나타난다[138]. 댓글 작성자는 역차별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폭력이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담론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무고 담론의 효과는 실존하는 성폭력 사건을 존재하지 않거나 극도로 희소하게 발생하는 일로 축소함으로써 거짓말로 조작된 범죄라는 개념을 형성한다.

---

136) 연합뉴스, 2018년 5월 28일,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137) 경향신문, 2018년 2월 8일, "성폭력, 남성중심 사회 일반의 문제" 문단 내 성폭력 폭로한 김현 시인 인터뷰

138) 코언(2009)은 인권침해와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조장 악화하는 행위로 이론화한 '부인(denial)' 개념을 통해 인권 침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인의 논리를 크게 '문자적 부인(literal denial)' '해석적 부인(interpretive denial)' '함축적 부인(implicatory denial)'으로 유형화했다(코언, 2009: 김명희, 2017에서 재인용). 권명아(2021)는 이 부인주의에 근거해 우리 사회의 '차별 부인주의'를 지적했는데, 여성 차별 부정이나 성차별 자체를 부정하고 음모론 등으로 환원하는 논의가 전형적이다.

4. 전략의 형성: 무고죄 처벌강화와 자력 구제

댓글이 구성하는 무고 담론에서는 무고죄 처벌강화와 자력 구제라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푸코가 담론 분석의 전략 형성 부분에서 지적하듯, 양립 불가능하거나 모순적인 양상들이 특정한 배치를 통해 하나의 진리 개념을 도출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분석할 수 있다(허경, 2016: 123-126). 댓글 이용자들은 법적 처벌이 무거워져야만 '거짓 미투'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게시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서 '진정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과도 대칭 구조를 이룬다. 즉 성폭력이든 무고 피의자이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는 무고죄 형량 강화를 기본으로 "성범죄에 준하는 형벌을 줘야 한다[139]"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무고죄 강화 담론은 차츰 "무고는 무고한 죄의 최고형 2배 선고[140]"에서 "최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는 언표로 확장된다. 무고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담론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엄벌이 곧 피해자 보호'라는 엄벌주의 담론(추지현, 2014)과 맞물린다. 성폭력 사건에서의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며,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 등을 전제한다. 하지만 댓글은 무고죄를 마치 성폭력 범죄와 대등한 범죄처럼 나열한다. 가해자 엄벌은 곧 여성 엄벌로 이어지며, 국가는 피해자 남성을 보호해야 한다.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엄벌주의 담론은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 권력이 없는 남성이라는 자리에 배치된 남성 발화자들이 성폭력 범죄의 해결을 위한 법적 담론들을 상호담론적으로 전유하여 재배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강화 주장은 사법기관을 여성의 편에 서는 편파적인 권력자의 위치로 배치했으므로 비담론적 장에서의 실현을 기대하기

139) 연합뉴스, 2018년 1월 30일,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140) 연합뉴스, 2020년 10월 1일, "강간당했다" 거짓신고 뒤 합의금 뜯은 다방 종업원 실형

어렵다. 권력이 없는 남성은 처벌강화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자력 구제라는 다른 선택도 담론장으로 진입시킨다. 바로 '펜스룰'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주장이다.

수많은 성폭력 무고 기사에는 "펜스룰을 적극 지지합니다(공감 1039, 비공감 543)"[141]라거나 "됐다고요 이제 싫다고요. 그냥 얽히기 싫어요. 펜스룰 하자고요. (공감 754, 비공감 102)[142]"와 같은 댓글이 큰 공감을 얻었다.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없고 국가는 권력이 없는 남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역차별론'에 대응하는 것이다. 권력이 없는 남성이 스스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고 담론의 체계에서 높은 심급을 차지한다. 펜스룰과 같이 "여성을 꺼리는 남성은 스스로를 그런 잠재적 가해자로 낮추는 것"[143]과 같다는 말뭉치는 남성 이용자의 자력 구제를 가로막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뿐이다.

> 회사에서 몰려다니면서 티타임이나 하고 행사지원은 나몰라라 남자들에게 떠넘기고 지들끼리는 언니 동생 겁나 챙기고 위계질서 잡으면서 중간 남자상사들은 X무시하는 XX들. 그러면서 최종 평가자에게 알랑방귀 뀌면서 지 고생한다고 어필하는 어이없는 막걸리같은 X들 더럽게 많다. 헐...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XX. 상종을 말아야 하고 펜스룰만이 답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간사한 계략에 휘말리니 어울리지 않는 게 상책. 에라 이 더러운 X들아! 카악~~~~ 퉤! (공감 371, 비공감 163)[144]

위의 댓글은 주변에서 본 여성의 행실을 비난하며 여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펜스룰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댓글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례를 통해 무고 담론에서 펜스룰을 전략

---

141) 동아일보, 2018년 3월 10일, 한국판 앙시앵 레짐의 종언… 알파걸이 방아쇠 당겼다

142) 동아일보, 2018년 3월 17일, "탁자 아래로 손 내리지 마라, 마주치는 것은 술잔뿐"

143) 한국일보, 2018년 3월 15일, '[논·담]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

144) 연합뉴스, 2018년 3월 29일, '미투운동' 두 달…바뀐 것 그리고 바꿔야 할 것

으로 형성한다. 펜스룰은 단순히 권력이 없는 남성의 자력 구제를 넘어 여성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비담론적 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댓글은 전반적으로 모든 책임을 동의를 뒤집은 여성에게 전가하고, 펜스룰을 적용하겠다는 엄포를 통해 여성을 효과적으로 배제한다.

> 뭐냐;;;;펜스룰이 왜 미투에 걸림돌이냐? 가해자가 계속나와야 지속할 수 있어서? 진짜 뭔 병X같은 소리인지;;;; 여자들보고 성범죄 조심하라는게 성차별이라고 하니 남자들이 규칙 정해서 스스로 조심하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공감 574, 비공감 230)[145]

위의 댓글은 "잠재적 가해자라서 피해준다는데 ... (피)하지말라네 (공감 9497, 비공감 1659)[146]"와 같이 펜스룰을 비판하는 기사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다. 위의 내용이 공감을 많이 받은 데에는 언론 보도 내용과도 무관치 않다. 무고 담론이 구성한 현실 속에서 권력이 없는 남성에게 "지속 가능한 미투운동을 위해선 남성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147]" 라는 식의 전문가 조언은 배제되거나 외부화된다.

> 헛소리 오지네 여성이 우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성범죄자로 몰수있으니까 방어하겠다는게 펜스룰이다 잠재적 성범죄자임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대가리에 총맞았냐? 우리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그 판단 기준은 여성이 정하는게 현실인데 그 방어도 못함? 어디서 헛소리를... (공감 450, 비공감 74)[148]

---

145) 동아일보, 2018년 3월 10일, 한국판 앙시앵 레짐의 종언… 알파걸이 방아쇠 당겼다

146) 한국일보, 2018년 3월 15일, '[논・담]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

147) 동아일보, 2018년 3월 10일, 한국판 앙시앵 레짐의 종언… 알파걸이 방아쇠 당겼다

148) 동아일보, 201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펜스룰' 갑론을박…"위드유 외치며 펜스룰? 언어도단"

이 댓글은 기사 내용 중 펜스룰을 옹호하는 남성을 비판하며 “그(남성)들이 여성 가까이에 있으면 성폭력을 해왔고 할 수 있는 잠재적 성범죄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문장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거짓말로 조작된 범죄라는 개념에 근거해 펜스룰이라는 선택을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펜스룰이 소극적인 자력 구제 실천이라면, 성관계 동의 녹취는 권력이 없는 남성을 구제할 적극적인 담론의 자력 구제 실천으로 받아들여진다.

> 성관계 시작전에 혹시 모르니까 동의문자나 녹음하고 시작한다고 하면 연인사이더라도 할 맛 뚝 떨어지겠다. 남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는 나라.. (공감 201, 비공감 50)[149]

무고 담론에서 동의를 뒤집는 여성은 성관계를 동의했음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대상으로 구성된다.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에 있는 남성은 권력이 없으므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자력 구제 담론으로 녹취를 정당화한다. 무고 담론장이 구성하는 현실은 여성을 우리 사회의 주류이자 권력자의 위치로 재배치한다. 실제로는 담론장 안에서 여성은 발화 권력을 얻지 못하고 대상으로만 구성되므로 권력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여성의 거짓말을 권력 집단인 사법기관이 받아준다는 논리로 무고 담론을 공고하게 구성한다. 불법 촬영물로 고통받는 사건이 신문지상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현실은 당연히 무고 담론의 언표에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된다. 대신 성관계 녹취라는 수단을 통해 권력이 없는 남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리로 통용될 뿐이다.

149) 연합뉴스, 2020년 11월 29일, [이슈 컷] 성관계 상황 몰래 녹음하면 처벌? 성대결로 번진 찬반논쟁

제 3 절 소결

이 장은 댓글의 언표가 언론보다 더 긴밀하게 성폭력 피의자를 말할 수 있는 담론의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우선 포털뉴스 댓글은 성폭력 무고 담론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가정된 성폭력 통념을 통해 담론의 대상을 드러낸다. 바로 거짓말로 남성에게 고통을 가하는 여성이다. 담론 외적으로 존재했던 전형적인 꽃뱀과 같은 여성상은 무고 담론의 대상으로도 형성된다.

모든 여성이 동의를 뒤집는다는 담론의 형성은 담론이 더 높은 심급으로 올라가기 전에 배제될 위험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주체는 '진짜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을 구성한다. 동시에 무고 담론이 구성한 특정 상황과 조건에서만 '진짜 성폭력'을 인정한다. 일부 권력자나 연예인처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거나 흉악범이 가해자라면, 무고 담론의 장 안에서 성폭력을 범죄로 구성한다.

댓글 작성자는 담론장 안에서 권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치를 드러내고 스스로 '권력이 없는 남성'으로 담론 주체의 위치를 정한다. 권력이 없는 남성만이 담론장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무고 담론장에서 성폭력 경험을 발화하는 여성은 거짓이므로 말할 수 없는 대상이다. 발화 권리 자체가 담론장 내에서 권력을 가졌다는 방증이라는 현실은 발화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무고 담론에서의 처벌강화 담론은 권력이 없는 남성이 원하는 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사법기관을 무고 담론장에서 동의를 뒤집는 여성과 같은 위치로 배치해서다. 권력이 없는 남성은 처벌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자력구제라는 다른 선택도 담론장으로 진입시킨다.

결국 포털뉴스 댓글은 언론 보도보다 직접적으로 여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을 구성한다. 댓글 작성자가 언론과 같이 형식적 객관주의를 고수할 필요도 없으므로 '피해자 남성'이라는 주체는 더욱 뚜렷해진다. 아울러 담론 주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이 여성에게만 유리하도록 법을 집행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사법기관과 담론

대상인 여성이 하나로 묶이면서 남성과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 동시에 남성은 무고 담론에서 발화권을 가지면서 '남성-약자' 담론을 넘어 '권력이 없는 남성' 주체를 구축한다.

권력이 없는 남성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가해 경계를 흐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성폭력 의미 자체가 거짓말로 치부되고 해체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여성은 실재하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발화하지 못하는 희박화된 주체로 삭제된다. 요컨대, 권력이 없는 남성 주체의 발화는 불평등한 젠더 위계 속에서 사실상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던 시대로 회귀하려는 불온한 시도이다.

제 4 장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폭력 무고 담론

이 장은 남초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성폭력 무고 담론이 형성하는 대상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체, 개념과 무고의 주제를 분석했다. 동시에 남초 커뮤니티가 언론과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 구성된 성폭력 무고 담론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탐구했다.

제 1 절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 분석

1. 커뮤니티 게시글의 유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했다. 첫 번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남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폭력 무고' 관련 게시글 가운데 호응도가 높았던 글 111건(인벤 66건, 보배드림 45건)을 수집했다. 수집된 게시글은 본인이 작성한 내용보다 다른 곳에 게시된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재가공하여 게시한 유형이 더 많았다. 세부 유형은 표 12와 같이 △SNS 갈무리 △신문 기사 갈무리 △방송 화면 갈무리 △직접 작성 △국민청원 갈무리 △타 커뮤니티 갈무리로 나뉜다.

[표 12] 보배드림과 인벤 게시글 유형(중복 없음)

유형	보배드림		인벤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SNS 갈무리[150]	16	35.6%	7	10.6%
국민청원 무리[151]	1	2.2%	4	6.1%
방송 화면 갈무리[152]	4	8.9%	7	10.6%
신문 기사 갈무리	17	37.8%	20	30.3%
직접 작성	5	11.1%	18	27.3%
타 커뮤니티 갈무리[153]	2	4.4%	10	15.2%
합계	45	100%	66	100%

150)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화면을 갈무

보배드림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게시글의 유형은 ‘신문 기사 갈무리’로 17건(37.8%)이었으며, 그다음이 ‘SNS 갈무리’로 16건(35.6%)이었다. 이외에는 ‘직접 작성(5건, 11.1%)’과 ‘방송 화면 갈무리(4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인벤도 보배드림과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 갈무리’ 게시글이 20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스스로 의견을 개진한 ‘직접 작성’ 게시글이 18건(27.3%)으로 집계됐다. 보배드림보다는 ‘타 커뮤니티 갈무리(10건, 15.2%)’ 형태의 게시글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SNS 갈무리’나 ‘방송 화면 갈무리’도 각 7건(10.6%)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성폭력 피소 경험을 직접 게시한 글이다. 성폭력 피의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무고로 주장하며 게시글을 올렸다. 성폭력 피소 경험을 공유한 일부 커뮤니티 사용자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익명성을 포기했다. 게시글 작성자 대부분은 스스로 신원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본인 이름을 걸고 글을 게시한 사람이 두 명으로 직업과 실명을 밝혔다[154]. 두 사람이 게시한 글은 전체 게시글 33건 중 14건에 해당한다[155]. 이 수치는 전체 수집 글 중 42.4%로 일부 글은 수많은 이용자가 읽고 공감하는 등 큰 이목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과 직업 등을 드러냈다는 자체가 현실 세계 자아와 온라인 자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온라인을 통해 현실에서 무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쓰였다.

리하거나 게시된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은 게시글을 뜻한다.

15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올라온 청원 게시글 갈무리 등을 뜻한다. 국민청원은 누구라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네이버 및 카카오 보유 계정을 이용해 직접 청원 글을 작성하거나, 진행 중인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21년 8월 5일 검색)

152) TV에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과 같은 재연 영상을 갈무리해서 게시글로 작성한 경우이다. 드물게는 드라마 화면 등을 상황에 맞게 편집해 갈무리한 게시글도 있었다.

153) 주로 남초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글의 화면을 갈무리하거나 직접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은 게시글을 의미한다.

154) C 시인은 본인의 이름 그대로 아이디를 ‘Cx’으로 짓고 스스로 “C입니다” 또는 “시인 C 올림”과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드러냈다. 또 ‘장타간서치’란 사용자는 본인을 “00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사 E”라고 소개했다.

155)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벤과 보배드림에서 검색한 결과, 본인 경험담으로 추정되는 글은 총 33건(게시자 11명)으로 모두 보배드림에 공유되었다.

무고 경험을 공유한 11명 중 가장 글을 많이 올린 사람은 8건(아이디: Cx)을 올렸고, 그 뒤를 이어 6건(장타간서치), 4건(낙오된회색인간, 미소천사), 2건(토니토니토니, 563214aa, 하얀박스) 순이었다. 그 외에는 모두 한 차례만 게시했다. 이들 중 본인이 성폭력 피의자이거나 무고 고소인인 사용자는 10명이었으며, 본인의 직계가족(아들, 형, 남동생)이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유한 사용자는 3명이었다. 글 목록은 다수 게시물 순서로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보배드림에 성폭력 무고 경험을 공유한 게시글

아이디	날짜	제목
Cx	2018-09-15	무고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Cx	2018-11-19	허위 사실 유포 범죄의 가중 처벌을 원합니다.
Cx	2018-12-10	제발 저의 시집을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Cx	2018-12-05	문학과지성사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x	2018-12-11	무고는 중대 범죄입니다
Cx	2019-03-29	C 시인 “허위 폭로로 모든 것 잃어…여성이 돈까지 요구”
Cx	2018-12-21	정말 감사합니다
Cx	2021-01-12	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
장타간서치	2020-08-26	제 형은 동해물이 말라도 백두산이 닳아도 강간범이 아닙니다.
장타간서치	2020-09-02	증거1)시의원 성폭행 무고 사건의 시작
장타간서치	2020-09-02	증거2)시의원 성폭행 무고 사건의 시작
장타간서치	2020-12-08	시의원 성폭행 무고 사건의 피고인 최후 진술서(사건의 총체)
장타간서치	2020-12-08	시의원 성폭행 무고 사건 상고기각
장타간서치	2020-12-08	시의원 성폭행 무고 사건 진짜라구요
낙오된 회색인간	2020-12-11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낙오된 회색인간	2020-12-18	성폭행으로 고소당하고 경찰서 다녀온 후기
낙오된 회색인간	2020-12-23	성폭행-무고 고소 후기 (SBS인터뷰)- 3
낙오된 회색인간	2021-01-13	성폭행 고소 당한 거 후기-4
미소천사	2020-07-26	[열차 내 성추행 무고 관련 국민청원]- 동참 부탁

		드립니다
미소천사	2020-08-21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청원 동참 부탁
미소천사	2020-08-25	제 아이의 사건이 제2의 곰탕집 사건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1
미소천사	2020-08-25	제 아이의 사건이 제2의 곰탕집 사건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2
토니토니 토니	2019-08-28	학교 미투의 현실 (1년이 더 지났지만, 용기냅니다.)
토니토니 토니	2019-08-29	만졌다고 모두 성추행은 아닙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얀박스	2020-08-07	저..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멍하니 지켜보다 깜빵인가요
하얀박스	2020-08-10	저를 고소한 알바생.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63214aa	2019-11-30	한여자의 허위고소로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563215aa	2019-12-08	한여자의 허위고소로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추가글입니다.
소드나이트	2020-05-31	여자에게 성추행당해서 고소했는데 무혐의 떳습니다.
약꾸루뚜	2018-09-10	성추행 무고 당해본 경험과 이번 일에 대한 생각
차없는 소시민	2019-10-17	도와주세요ㅠㅠ여자대리기사가 성추행누명을 씌워 고소했습니다.
토로로토	2019-03-25	성추행 무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하늘달별비	2019-09-17	성추행으로 몰렸습니다 조언을 해주세요.

2. 게시글의 주요 형식

보배드림과 인벤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갈무리하거나 내용을 복사해 붙이는 방식이다. 언론 보도가 사실(fact)이라는 전제 아래 언론 기사를 차용해 게시글에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두 커뮤니티의 차이점은 보배드림이 언론 보도 게시글만큼 SNS 갈무리 게시글을 선호했던 데 반해, 인벤은 외부 글을 빌려오지 않고 작성자의 의견 등을 개진한 게시글이 언론 보도 갈무리만큼

이나 많았다. 인벤은 SNS 갈무리보다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을 재게시한 글이 더 많았다. 상대적으로 보배드림 명예의 전당에는 타 커뮤니티 게시글 수가 2건(4.4%)으로 매우 적었다.

커뮤니티 게시글은 언론 보도나 공문서 같이 형식을 갖춘 글과는 결을 달리한다. 타인의 글을 그대로 옮겨오기도 하고 신문 기사나 방송 화면 캡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한다. 그중에서도 보배드림에서 수집된 글은 신문 기사 또는 SNS 화면을 갈무리한 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몇 줄 이내로 적은 형태가 7할을 차지했다.

[그림 1] 보배드림 SNS 갈무리 게시글 예시

게시글 작성자는 그림 1처럼 본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미 쓴 타인의 SNS 화면을 그대로 갈무리해 붙인 채로 올리거나, 혹은 이미지 아래 문장을 일부 보충한다. 작성자는 위의 게시글에 “억울하게 꽃뱀 창녀들한테 당한 남성분들 도움이 되길….[156]”이라는 한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보배드림과 인벤 모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게시글 유형은 신문 기사 갈무리이다. 주로 성폭력을 고소했다가 무고로 피소되거나 형사 처벌받은 여성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룬다.

게시자는 기사 한 건 또는 여러 건을 갈무리한 뒤 주장을 뒷받침하고 본인 주장에 신뢰도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그림 2[157]는 글쓴이가

156) 보배드림, 2020년 11월 3일,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 출범
157) 인벤, 2018년 2월 28일, 한국, ‘성폭력 무고죄’ 세계 1위

수집한 성폭력 무고 기사 네다섯 건과 무고와 관련된 사진(기자회견 등)을 갈무리해 붙인 뒤 본인 의견을 정리했다. 이런 게시글은 글쓴이의 주장에 맞게 재편집되고 가공되므로 사실로 보기 어렵다. 대중은 이미지가 모호하고 쉽게 변경될 수 있음을 알지만, 여전히 사진이 진실한 기록이거나 진실이어야 한다는 편견 때문에 이미지를 사실처럼 믿어버린다(Sturken&Cartwright, 2017 : 27). 디지털 이미지가 쉽게 조작될 수 있음에도 보는 사람에게 사진과 진실과의 연관성을 혼동시킨다.

[그림 2] 인벤 신문 기사 게시물 예시

인벤은 신문 기사 외에 작성자가 직접 글로 써서 의견을 피력한 게시물 비중이 전체의 3할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서너 줄 정도로 짧게 작성한 글도 있으나, 대부분 수십 줄이 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대부분 본인만의 논리를 세워서 성폭력 무고 현상의 부당함을 알리거나, 커뮤니티 이용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성폭력 피소 경험을 공유한 게시글도 모두 '직접 작성' 게시글에 해당한다. 성폭력 피의자는 본인이 겪은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적었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했음을 피력하기 위해 거주지와 나이 등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작성자는 직업과 실명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작성한 글이 진실함을 드러내는 장치로 썼다.

아래 게시글 작성자는 스스로 수집한 몇 가지 근거 자료 등을 들어 본인 주장이 사실임을 피력하는 진실화 전략을 사용한다. 가끔 작성자 스

스로 실명이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 등을 함께 표기하는데, 이런 전략은 성폭력 피소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진실성을 획득하려는 게시글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림 3] '직접 작성' 게시글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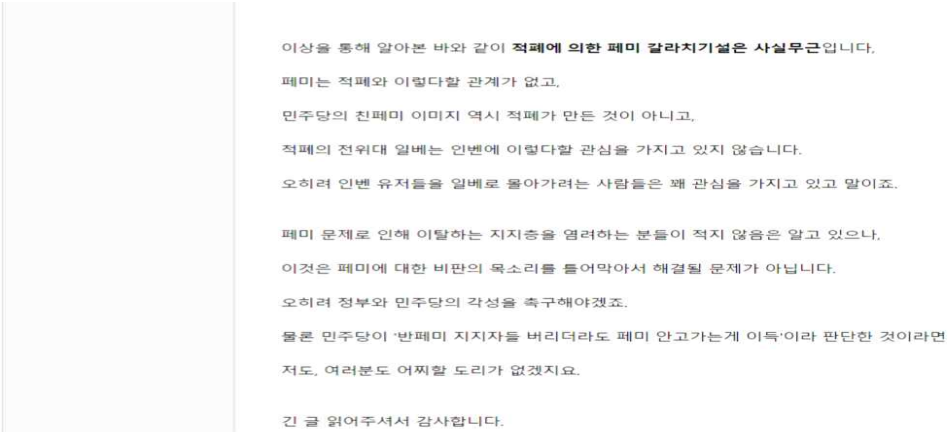
이상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적폐에 의한 페미 갈라치기설은 사실무근**입니다.

페미는 적폐와 이렇다할 관계가 없고,

민주당의 친페미 이미지 역시 적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적폐의 전위대 일베는 인벤에 이렇다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벤 유저들을 일베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은 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페미 문제로 인해 이탈하는 지지층을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은 알고 있으나,

이것은 페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와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해야겠죠.

물론 민주당이 '반페미 지지자들 버리더라도 페미 안고가는게 이득'이라 판단한 것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양쪽 커뮤니티에서 '방송 화면 갈무리' 글을 볼 수 있다. 작성자는 방송에서 성폭력 무고 사례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뉴스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함으로써 무고당할 수 있다는 남성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성폭력 무고로 인해 곤란을 겪은 남성을 조명한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 영상을 갈무리한 게시글 외에도 출처가 불명확한 외국 다큐멘터리 화면 등을 성폭력 무고 사례로 소개한다.

3. 게시글과 댓글 내용의 범주

보배드림과 인벤 사용자는 댓글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편이었다. 보배드림과 인벤 게시글 111건에 달린 댓글 가운데 공감순으로 각 3개씩 총 333건(보배드림 135건, 인벤 198건)을 수집했다. 보배드림과 인벤은 게시판을 운영하는 방식과 댓글 작성자 간의 권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보배드림은 일반 게시판에 게재된 글 가운데 추천 수와 조회 점수가 높은 글을 '명예의 전당' 게시판에 추대한다. 즉 평범한 게시글보다는 이목을 끌고 추천 수를 끌어올려야 명예의 전당 게시판으로 입성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반면 인벤은 주로 게임을 중심으로 게시판이 운영되며,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게시판을 중심으로 게시글을 올린다. 대신 '오픈 이슈 갤러리'에는 사회 문제나 게임 외의 다른 사안과 관련된 게시글을 올릴 수 있으나, 보배드림과 같은 '명예의 전당'과 같은 게시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오픈이슈갤러리' 게시판에서 '3추(게시글 추천 수 3 이상)' '10추(추천 수 10 이상)'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많이 받은 게시글을 별도로 볼 수는 있다.

[표 14] 보배드림과 인벤 댓글 내용의 범주(중복 없음)

보배드림			인벤		
범주	건수	비율	범주	건수	비율
무고 피의자 비판	18	13.3%	무고 피의자 비판	27	13.6%
사법기관 비판	14	10.4%	사법기관 비판	11	5.6%
언론 비판	3	2.2%	언론 비판	10	5.1%
무고 형량 강화	27	20.0%	무고 형량 강화	9	4.5%
정치 비판	11	8.1%	정치 비판	42	21.2%
여성계 비판	8	5.9%	여성계 비판	14	7.1%
여성 비판 및 위협	23	17%	여성 비판 및 위협	38	19.2%
해결방안 제시	3	2.2%	해결방안 제시	7	3.5%
일반남성 비판	2	1.5%	게시글 작성자 비판	20	10.1%
기타	26	19.3%	기타	20	10.1%
합계	135	100%	**합계**	198	100%

인벤 게시글은 보배드림과 같이 높은 조회 수나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수집된 게시글의 추천/조회 수는 인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예컨대 보배드림에서 수집된 게시글의 최소 추천 수가 174였다면, 인벤은 최대 추천 수가 158이었다. 보배드림은 마치 '승자독식'처럼 추천 수가 높은 댓글 순으로 3개가 굳건히 자리해 게시글과 비슷한 논조를 보여준다. 반면 인벤은 추천 수가 상위 3개를 표시하나, 추천 수 자체가 보배드림처럼 높지 않고, 작성자를 비판하거나 커뮤니티 다수와 생각이 다른 '비공감' 댓글도 다수 포진했다. '비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10 이상)을 블라인드 처리가 되나, 원하면 열어볼 수 있으며 이

를 보고 답글이 달리는 구조이다.

분석 대상 게시글 111건에 달린 상위 댓글 333건 중 135건은 보배드림에 달린 댓글이며 198건은 인벤 댓글이다. 보배드림 게시글의 댓글 중 가장 많이 드러나는 내용은 위의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무고 형량 강화'로 27건(20%)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여성 비판 및 위협(23건, 17%)'과 '무고 피의자 비난(18건, 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사법기관 비판(14건, 10.4%)' 댓글도 눈에 띄었다.

반면 인벤 게시글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정치 비판'으로 42건(21.2%)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여성 비판 및 위협'과 '무고 피의자 비판'이 각 38건(19.2%)과 27건(13.6%)으로 집계됐다.

커뮤니티 댓글은 앞서 분석했던 뉴스 댓글 범주와 차이를 드러낸다. 기사 댓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성폭력 피의자 비판' 댓글을 커뮤니티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보배드림에서는 무고 형량 강화를 주장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뤘는데, 이는 새로운 내용 범주로 볼 수 있다. 보배드림은 주로 무고죄 형량 강화를 통해 여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조가 가장 강했다. 보배드림 이용자가 생각하는 형량 범위는 "무고죄는 형량을 정하지 말고 무고를 해서 상대방이 유죄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량과 동등하게 처벌해야함(추천 55, 반대 0)[158]"부터 "살인자로 처벌받아야지(추천 448, 반대 1)[159]"까지, 강력범죄 형량에 따르는 처벌이었다.

법적 처벌이 어려우면 사적 보복을 통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다면 상대 여성을 위협하거나 해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봤던 뉴스 댓글보다 훨씬 공격 수위가 높았다. 댓글 내용은 주로 "남(성)의 인생을 망칠려고 행동했으면, 자신의 인생(여성)도 걸어야지(추천 543, 반대 4)[160]"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여성 일반을 비판하거나 "억울하게 혼자 죽지 말고 죽이고 가라니까...(추천 816, 반대 0)[161]"처럼 여성을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

158) 보배드림, 2020년 8월 21일, 강지환 미투 무고 근황
159) 보배드림, 2019년 1월 11.일, 속보)A 검찰 무고죄 조사받다
160) 보배드림, 2018년 7월 8일. 무고죄에 빠친 청년.(남자가 약자)
161) 보배드림, 2019년 1월 19일, 성추행 무고의 마지막.jpg

인벤 사용자는 보배드림보다 현직 대통령과 정치권 등 집권 세력을 주로 비판한다.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 되었더라도 여성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문재인이 바라던 나라가 되어가네 ㅎㅎ(공감 31, 비공감 10)[162]” 같은 댓글이 달린다. 이런 댓글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상상하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현직 대통령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워 현 정부를 비판한다. 미투운동 이후 “앞으로 여자는 무조건 ‘무죄’시대 열리나”처럼 무고를 우려하는 게시글에는 “그런 무고죄조차도 없애버리려는 민주당 꼴페미 추종자님의 말씀이었습니다(공감 20, 비공감 1)[163]”와 같은 현 정권 비판 댓글로 호응한다.

전반적으로 두 커뮤니티 댓글은 무고 피의자를 비난하고 일반여성을 위협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차지했으나, 권력을 비판하는 대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벤이 정치 비판, 그중에서도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당을 겨냥한 비판에 주력했다면, 보배드림은 정치 비판 댓글이 인벤처럼 압도적인 편은 아니었다. 이는 현 정부를 가장 낮은 비율로 지지하는 20대 남성[164]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인벤의 특성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 정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0~40대 이상 청장년층 중심인 보배드림에서는 정치 비판이 다른 댓글에 비해 덜 두드러졌다.

제 2 절 ‘남초 커뮤’가 구성한 무고 담론

1. 대상의 형성: 발화가 금지된 꽃뱀

앞서 보수·중도 언론이 형성한 무고 담론의 대상이 무고 피의자였다면, 네이버 뉴스 댓글이 형성한 대상은 동의를 뒤집는 여성이었다. 남초 커뮤니티는 언론이나 댓글보다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언표인 “꽃뱀”으로

162) 인벤, 2019년 6월 16일,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
163) 인벤, 2018년 11월 29일, 앞으로 여자는 무조건 ‘무죄’ 시대 열리나.
164) 2021년 7월 기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6%,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36.1%이었다. 만 18~29세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5.1%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4.9%였다. 같은 연령대(18~29세)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42.1%로 국민의힘 지지율(22.5%)의 두 배였다(조선일보, 2021년 7월 30일).

성폭력 무고 담론의 대상을 구성한다.

한국일보가 2018년 3월 15일 보도한 “[논·담]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기사는 네이버 뉴스 댓글이 7,627개 달렸으며, 인벤에도 기사 원문이 갈무리되어 게시글로 소개되었다. 이때 기사에 달린 댓글은 “이상 무고혐의 잠재적 범죄자였습니다. (공감 9013, 비공감 1549)[165]”이었는데, 인벤 게시글 댓글은 “닌 잠재적꽃뱀이냐?(공감 30, 비공감 0)[166]”이었다. 제목만 보고 인터뷰 대상자에 대항하는 언표를 사용한다는 기조는 비슷하나, 커뮤니티에서는 “꽃뱀”이라는 언표를 사용해 더 직접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비난한다[167].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는 무고 담론에 대응하지 않는 발화를 더 강경하게 배제한다. 성폭력 고소인 보호 법안을 제출한 여성 국회의원의 발화는 “시벌년이 지랄(공감 32, 비공감 1)[168]”한다는 댓글만으로도 손쉽게 담론장 바깥으로 배제된다. 꽃뱀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발화는 커뮤니티 담론장 안에 들어올 수 없다.

> 니도 모르게 실수로 여성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좆같이 썩어가며 널 고소한다고 해. 그때 어떻게 할거냐? 정답은 이왕 스친거 그대로 그냥 존나패면 된다 (중략)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바에 그냥 폭행범 되는게 훨씬 이득이다 우리나라 지금 법이 이따구다 꽃뱀년한테 물린거 같다 싶으면 그냥 존나패라 개씨발 이게 나라냐?[169]

남초 커뮤니티에서 꽃뱀은 위험에 빠뜨리려는 여성과 동일어로 쓰인

165) 한국일보, 2018년 3월 15일, ‘[논·담]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

166) 인벤, 2018년 3월 16일,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

167)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뷰 대상자는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성희롱・성폭력을 피한답시고 여성을 꺼리는 남성은 스스로를 그런 잠재적 가해자로 낮추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한 내용이었으나, 기사 제목은 위처럼 재편집되었다.

168) 인벤, 2018년 4월 5일,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169) 인벤, 2019년 12월 12일, 페북) 무고 꽃뱀녀 대처법.

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꽃뱀년한테 물린 거 같다”는 언표를 통해 여성을 동등한 인간라기보다는 사물로 환원하고 담론의 대상으로 형성한다. 이때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꽃뱀에게 폭력을 써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댓글 내용에서 형성된 무고 담론은 권력자나 연예인처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거나 흉악범이 가해자일 때에 한정해서 무고 담론의 장 안에서 성폭력을 범죄로 구성했다. 그런데 남초 커뮤니티는 유명인의 성폭력 피소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다. 유명인 남성의 부와 명예를 모두 무너뜨린 성폭력 고소인을 진정한 꽃뱀이라는 대상임을 드러내는 언표가 일관되게 집결된다.

> (중략) 3줄 요약 1. 강지환 만취 상태에서 2. 집구경하고 돈봉투 구경하다가 3. 경찰에 감금됐다고 신고[170]

연예인 강지환은 2020년 11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171]. 누구보다도 법이나 사실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식의 언표를 활용하지만, 실제로 법 담론에서의 피/가해 구분은 무고 담론의 장에서 희박화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게시글이 게재된 시점 이전인 2020년 6월 강지환은 항소심까지 성폭력 유죄판결을 받은 후였다. 그런데 성폭력 피의자보다 고소인을 꽃뱀으로 형상화하는 담론이 구성된 데에는 언론이 있었다. 한 언론사는 같은 해 8월 성폭력 피의자가 제출한 사건 기록 중에서 일부를 편집해 보도했다[172]. 이 게시물은 성폭력 피해자가 “돈봉투 구경하다가” 경찰에 성폭력으로 신고했다는 기사의 특정 내용만을 요약했다. 남초 커뮤니티는 성폭력 피해자를 전형적으로 돈을 노리고 경찰에 신고한 꽃뱀이라는 언표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무고 담론을 형성했다.

여성이 남성을 무고하는 이유가 금전이었다는 확증이 생기면, 커뮤니

170) 보배드림, 2020년 8월 21일, 강지환 미투 무고 근황
171) 연합뉴스, 2020년 11월 5일,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72) 스포츠조선, 2020년 8월 19일, [단독]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강지환 CCTV-카톡 입수…피해자몸→DNA無, 카톡도 터졌다

티 이용자는 '꽃뱀'이 누군지 적극적으로 특정한다. 일례로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성폭력 불기소 경험을 SNS에 공유한 여성의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며 "미투코인 탑승시도[173]"한 여성을 비난한다. 이 여성이 성폭력 고소 이후 생활고를 호소하고 후원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무고가 아니었음을 판단 받았다[174]. 몇 년간 고통받던 무고 피의자는 자신의 신상을 SNS에 게재한 성폭력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175]. 그러나 한번 무고 담론의 장에서 꽃뱀이 된 여성은 담론을 공고하게 만드는 토대로 굳어진다.

인벤은 꽃뱀이 아닌 여성을 담론의 대상에서 따로 구분하려고 시도한다. 뉴스 댓글이 '진짜 성폭력 피해자'와 꽃뱀을 분리한다면, 인벤은 꽃뱀이나 "페미(니스트)가 아닌 '일반' 여성[176]"을 분리한다. "대한민국 대다수 남성, 그리고 온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177]"이 페미니스트나 꽃뱀과는 다르게 담론의 주체와 "정상적인 남녀평등[178]"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참/거짓의 척도로 여성을 나누고 대립적인 의미를 형성한다(황슬하·강진숙, 2014). 무엇이 '정상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성 집단을 양분해 차별 대우하는 담론은 과거부터 여성 비난 담론에서 자주 쓰인다. '정상적'인 여성 집단을 담론의 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무고 담론에서 꽃뱀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2. 언표 작용의 양태: 진정한 피해자인 남성

남초 커뮤니티가 구성하는 무고 담론의 장에서 발화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는 "진짜 피해자[179]"인 남성이다. 이들은 이른바 "무고녀(년)[180]"에

173) 보배드림, 2018년 12월 18일, C 시인 성폭행 무고녀 미투코인 탑승시도
174)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26일, 'C 무고 98년생 D' 오명 지운 법원 "공익 목적의 폭로"
175) CBS노컷뉴스, 2021년 7월 30일, [단독] "무고녀 낙인" C 성희롱 폭로자, '2차 가해' 경찰 고소
176) 인벤, 2018년 8월 6일, 근래의 범죄 공포는 거의가 인위적임
177) 인벤, 2018년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해야함
178) 인벤, 2018년 4월 5일, 페미에 무관심해지면 벌어지는 일
179) 인벤, 2018년 5월 26일, A 이년으로 인해 여성들이 힘든 점

게 “남자라서 당했다(공감 28, 비공감 0)[181]”며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앞서 장삼이사의 성폭력 피소 기사의 댓글에서 나온 언표와 비슷한 말뭉치로 묶인다. 무고의 ‘진짜 피해자’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커뮤니티 이용자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당사자성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이용자는 무고 담론에서 부상한 주체의 위치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다. 일례로 한 남성이 겪은 무고 사례[182]는 남초 커뮤니티마다 반복적으로 게시되었다. 이런 게시물은 몇 년째 수많은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무고 담론을 증폭하는 데 활용된다. 무고 담론에서 진정한 피해자로 발화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무고 담론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므로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무고 담론의 외재적 효과로 안티 페미니즘 단체의 성행과 남성 권익 보호 담론 생성을 촉발시켰다. 2020년 8월 안티 페미니즘 시민단체인 당당위는 “수많은 무고 피해자[183]”가 될 억울한 남성을 위한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184]’를 개소했다. 또 특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일면식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면 성폭력 피의자로 몰린다는 믿음을 강화한다. 일례로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2013년 신문 기사[185]를 캡처하여 2020년 아래와 같이 재정리해서 공유했다.

> 한 미성년자 여자애가 우연히 얻은 핸드폰 번호 가지고 “이사람이 절 성폭행했어요” 하고 전혀 본적조차 없는 사람을 고소해서 그남성은 직장 다 짤리고 보상도 못받고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 당시 증거 목록 : 3초도 안되서 아무 말도 없이 끊은 전화 기록, 일괄된 진술, 눈물 끝[186]

---

180) 보배드림, 2020년 11월 25일, 성추행 무고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써라
181) 인벤, 2018년 4월 5일, 헬스장 여성 탈의실 잘못 들어간 썰
182) 보배드림, 2019년 1월 29일, 무고죄 실제 사례
183) 인벤, 2020년 8월 19일,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출범”
184) 문성호 당당위 대표는 2020년 8월 18일 당당위 페이스북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발족했다고 공고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자체 상담으로 수집한 사례를 ’성무고피해 보고서‘로 작성하고 2021년 11월 1일 성범죄무고 사례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185) 법률신문, 2013년 5월 7일,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186) 보배드림, 2020년 9월 7일, 성폭행 무고 레전드.jpg

위의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번 게시되어 남성이 진짜 피해자임을 논증하는 극소수의 사례 중 하나로 쓰였다[187].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폭력을 수사한 경찰이나 기소한 검찰을 향한 분노보다는 거짓말하는 여성을 향한 분노만이 담론의 장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여성이 거짓말한다는 증거는 단 하나라도 무고 담론의 증폭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내용이 설혹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도 커뮤니티 이용자는 개의치 않는다. 누가 작성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글이라도 마치 실제로 경험한 내용처럼 구성한다면 담론의 장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 모텔알바가 말하는 요즘 여자들이 모텔 CCTV를 확인하는 소름돋는 이유 (중략) 요즘 여자를 머리 좋아요. 증거 있으면 안 가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남자를 엿맥입니다. 남성분들 만약 여성분들하고 자고 싶으시면 작은 녹음용 기기 하나 장만하세요.[188]

위의 글 원본 작성자는 마치 모텔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한 내용처럼 공유한다. 비슷한 시기에 보배드림과 인벤에 모두 올라왔으며 나란히 추천 게시물로 집계되었다. 누가 썼는지 이 글이 사실인지 의문을 품거나 지적하는 댓글은 없다.

온라인 공론장에 이른바 '진짜 피해자'가 나타나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한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들의 발화를 적극적으로 공감하거나 호응한다. 성폭력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으면 스스로 '무고 피해자'로 정의함으로써 발화권을 독점하고 무고 담론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인 C이다. 그는 보배드림을 비롯한 주요 남초 커뮤니티에 실명(아이디 Cx)으로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림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피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성폭력 고소인의 신상을 직접 공개하거나 본인의 성폭력 피소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감

187) 보배드림, 2019년 1월 29일, 무고죄 실제 사례
188) 보배드림, 2019년 10월 12일,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jpg: 인벤, 2019년 10월 12일,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

행했다[189]. 이를 통해 스스로 억울한 '진짜 피해자'이며 결백한 시민임을 주장했다.

성폭력 피소 경험을 공유한 또 다른 작성자(아이디 소드나이트)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방식을 활용한다[190]. 본인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부산에 살고 있는 남자"로 소개한다. 또 사건 증거 중 하나인 집 내부 CCTV 사진을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음을 알리는 등 스스로 신원을 일부 드러낸다[191]. 이와 같은 게시글 작성자는 담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 남성이라는 입장을 강화한다. 또 위와 같은 특수 사례가 무고 담론에서 대표 사례로 반복 유통되면서 보편적인 경험으로 치환된다.

남초 커뮤니티는 성폭력 피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를 진짜 피해자의 표상으로 보고 공분한다. 대표적인 예는 학생의 성추행 제기로 해직된 D 교사의 사망 사건이다[192]. 안정적인 직업인 교직을 잃고 사망하게 된 사건은 커뮤니티의 공분이 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D의 아내는 개인 블로그에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둔갑하여 신고되었습니다[193]"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D의 아내는 해당 교육청 징계 절차에서 부당하게 구제받지 못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파적인 사고로 국민을 대한다고 규탄했다[194]. 그러나 무고 담론장에서 D의 아내는 (미성년자라도) 꽃뱀의 거짓말로 희생된 대표적인 대상으로 재배치된다.

D의 아내처럼 '진실한' 여성 군집은 꽃뱀과 대립하는 존재이자 무고 담론의 개념을 강화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가 아닌 '일반여성'도 담론장에서 발화할 자격을 얻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남성'의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발화도 진짜 피해자인 주체(피해자 남

189) 보배드림, 2021년 1월 12일, 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
190) 보배드림, 2020년 5월 31일, 여자에게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무혐의 떴습니다.
191) 위와 같음.
192) 보배드림, 2018년 9월 11일, 성추행 무고에 자살
193) 인벤, 2018년 3월 14일, 고 D교사 부인이 쓴 글
194) 네이버 블로그, 2018년 2월 3일, 故 D 교사 미망인 E씀

성)의 보조적 위치로 활용될 뿐이다[195].

3. 개념의 형성: 남성을 파탄낸 중범죄

앞서 언론과 뉴스 댓글을 거쳐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동할수록 무고 담론에서의 개념은 사용되는 언표에 따라 극단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무고 담론에서 언론이 '맞고소'나 '역고소'라는 개념을 형성했다면, 댓글 이용자는 성폭력이 거짓말로 조작된 범죄라는 담론의 개념을 증폭시킨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발 더 나아가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중범죄로서 (성폭력) 무고죄를 담론의 개념으로 좌표화한다. 그 근거로 커뮤니티는 언론에 보도된 숫자를 내세운다. "인구 대비 무고 사건 세계 1위가 한국[196]"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500배가 넘는 성범죄 무고가 발생[197]"과 같은 문구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무고 사건,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사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수치는 마치 여성의 거짓말로 발생하는 성폭력 무고가 진정한 범죄로 흔하게 발생한다는 언표의 집합으로 포함된다.

사실 인구 대비 무고 사건 세계 1위라는 수치는 이 게시자가 인용한 신문 기사 제목인 "'무고 범죄' 세계 1위…부끄러운 자화상[198]"에서 유래했다. 이 신문 기사가 국내 무고 범죄율을 세계 1위로 규정한 데에는 이른바 전문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 기사에서 "인구 대비 무고 사건 비율은 한국이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단정했다. 이 기사(연결 기사[199] 포함)에는 위의 발언 외에 한국이 무고 비율이 세계 1위인 근거는 없다.

---

195) 성폭력 무고로 인해 생을 마감한 남성의 아내나 여동생 등 여성 가족 구성원의 발화만이 무고 담론장에서 힘을 발휘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인벤, 2018년 3월 14일, 고 D교사 부인이 쓴 글" 참조.

196) 인벤, 2018년 2월 28일, 한국, '성폭력 무고죄' 세계 1위

197) 보배드림, 2018년 1월 12일, 성폭력 무고죄

198) 한국경제, 2016년 8월 19일, '무고 범죄' 세계 1위…부끄러운 자화상

199) 한국경제, 2016년 8월 19일,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보배드림이나 인벤 게시글에서도 위의 수치를 인용하게 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마치 숫자와 사실관계를 신봉하는 듯한 언표나 수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커뮤니티가 구성하는 무고 담론을 뒷받침하는 특수한 사례나 확인되지 않는 경험담,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통계 등만이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되면서 무고 담론장으로 진입하였다. 위와 같은 언표의 집합만이 무고 담론을 형성하는 주된 원인은 성폭력 무고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라는 담론의 상황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짓말로 성폭력을 신고한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커뮤니티 사용자는 무고를 일반화하고 한국 여성을 비난할 수 있다.

게시글 댓글 작성자는 성폭력 무고를 "합의하에 떡치고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한거부터가 이미 허위사실[200]"로 정의한다. 이런 진정한 무고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동원된다. 또 무고로 누명을 쓰고 숨지거나 해고 등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특정 무고 사례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 그로 인해 사실상 같은 사례임에도 마치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처럼 여겨지면서 커뮤니티 사용자의 확증편향을 부추긴다.

여기에 본인을 성폭력 피의자라는 작성자가 직접 경험했다는 피소 상황을 공유하면서 무고야말로 '진정한 범죄'임을 강조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무죄임을 호소하거나, 피의자의 가족(어머니 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무고야말로 진짜 범죄라는 호소력을 얻는다.

> 저는 한 여자의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무고와 다른 한 여자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1년동안 경찰 조사 5회와 검찰 조사 1회를 받고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중략) 하나밖에 없는 저희 어머니가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아 이제 어머니를 이제 조만간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201]

---

200) 인벤, 2019년 6월 15일, 무고죄 사실상 폐지
201) 보배드림, 2019년 11월 30일, 한여자의 허위고소로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윗글의 작성자(아이디 563214aa)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상고심 와중에 본인의 모친이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결백한 자신이 한 여성으로 인해 모친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구성한다. 작성자는 “3심에서 무죄확정되어도 고소한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너무나 어렵다[202]”고 하소연한다. 게시글 작성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법정 구속됐다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커뮤니티 이용자가 느끼는 무고 담론의 공포를 가중시킨다. 위의 글에 동조하는 커뮤니티 이용자는 “제 지인도 연예인인데 비슷한 일을 당해서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나고 풀려났어요. 그 동안 사업체는 부도나고, 일감 모두 끊기고 엄청난 시간들을 보냈었죠.(중략) (추천 75, 반대 0)[203]”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험담을 공유한다. 무고 담론이 구성한 현실은 무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는 언표를 통해 진실처럼 통용된다.

게시글 작성자의 성폭력 피소와 모친의 건강 악화라는 사건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사건(이) 있기 전에 건강하시던 모친은 담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204]”라는 말로 마치 두 가지 상황을 인과관계로 묶는다. 1심에서는 유죄였으나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성폭력 피의자는 이 상황을 모두 성폭력 고소인과 기소한 사법기관의 잘못으로 돌리며 무고 담론의 개념을 형성한다.

4. 전략의 형성: 사법기관과 정치권 불신

온라인 커뮤니티는 담론장 외부에 존재하는 정치 비판 담론을 무고 담론과 결합하면서 상호담론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언론과 댓글이 형성한 무고 담론과 비교하면 담론장 안에 놓이는 담론 간의 배제와 선택을 통해 또 다른 담론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구성하는 담

202) 위와 같음
203) 위와 같음
204) 위와 같음

론은 여성을 향한 사적 보복이나 정치권 비난 담론으로 출현한다.

보배드림이 주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사적 보복을 주장한다면, 인벤은 정부 비난과 같은 정치 권력과 대척한다. 두 커뮤니티는 주로 방문하는 이용자의 연령대가 다르므로 정치적 성향에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205]. 이 때문에 두 커뮤니티는 성폭력 무고와 관련해 비슷한 내용을 게시함에도 다른 전략으로 무고 담론을 형성한다.

남초 커뮤니티는 무고 담론의 대상인 꽃뱀 외에 담론 외적 대상인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방식을 통해 무고 담론을 구성한다. 동시에 현 정부가 페미니스트 집단에 힘을 실어준다는 언표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면서 현 정부가 곧 페미니스트라는 결론을 내린다. 댓글이 형성한 언표 작용의 양태에서 국가와 대척점에서 말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를 구성했던 양상과 비슷하다. 그 결과 진정한 피해자인 남성이라는 자리에 배치된 발화자는 현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을 공격하면서 외부 담론인 정치 비판 담론을 전유하고 재배치한다.

> 여성우대가 가면갈수록 더해지고 혜화역시위라든가 이야기는 잘들어주면서 남자의 목소리는 묵살 곰탕집 6개월이라든가 진지한 답변 ㄴㄴ(거부) 여자도 군대가라는 청원 참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허허 성범죄 무고 처벌 강화 그딴건 없고 수사끝날때까지 여자 무고로 조사 ㄴㄴ(중략)[206].

위의 글은 현 정부가 여성을 우대한다는 근거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성폭력 무고 담론과 연계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곰탕집 성추행’ 피의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게시자는 국민청원 33만명이 넘었음에도 청와대가 진지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당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청

---

205)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5%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긍정 47%, 부정 51%), 40대(긍정 61%, 부정 37%), 50대(긍정 49%, 부정 47%)는 전체 긍정 답변 45%보다 높게 나온다. 반대로 20대는 긍정 36%, 부정 58%로 평균보다 1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한국일보, 2021년 9월 16일)

206) 인벤, 2018년 11월 11일, 문재인이 언제 소통과 화합을 잘한적 있음?

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207]"고 답했으나 위 게시글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현 정부가 여성만을 우대하는 '페미(니스트)'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성범죄 무고"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담론을 구성했다.

보배드림은 성폭력 피소로 직장을 잃고 나아가 생명까지 잃은 사례에 감정을 이입한다. 동시에 무고 피의자, 그리고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살해 위협하는 주장을 게시한다. 예컨대 앞 절에서 언급한 교사 자살 사건은 언론 기사나 D 아내의 글 등을 캡처한 게시물로 보배드림에 널리 공유되었다. 성폭력 신고로 인해 파면된 남성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므로 무고 담론에서는 가장 억울한 사례로 꼽혔다. 위와 같은 사례는 무고 담론에서 피해자 남성으로 구성된 담론장에서의 발화자는 담론 대상인 여성 집단을 비난하는 차원을 넘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 게시물에 "억울하게 혼자 죽지 말고 죽이고 가라니까...(추천 816, 반대 0)[208]"이나 "이러니 남자들이 열받으면 여자를 죽여버리는거지(추천 46, 반대 2)[209]"로 호응했다.

정작 이 사건의 쟁점은 학생의 성추행 신고 이후 관련 기관의 조사과정과 징계 절차에서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또 사법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10]. 그러나 무고 담론에서 이런 내용은 모두 삭제된 채 유통되었다.

두 커뮤니티 중에서는 보배드림 게시글과 댓글에서 여성 살해 위협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난다. 보배드림 이용자는 무고 담론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될 바에야 여성을 공격해야 한다는 담론을 조성한다. 성폭력 피의자로 몰려 자살하는 사례에서는 커뮤니티 이용자의 공격성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남성이 억울한 사안에 몰려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결론에 비통해하며 "자살할 거면 이렇게 만든 놈들 다 죽이고 가는 게 낫지 않을

207) 중앙일보, 2018년 10월 12일, 청원 33만명 넘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靑 "답변곤란"
208) 보배드림, 2019년 1월 19일, 성추행 무고의 마지막.jpg
209) 위와 같음
210)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6일, [단독] "학생들과 신체접촉 신빙성 높아"...자살 교사 유족 손배 기각

까 생각(추천 44, 반대 0)[211]"과 같은 댓글이 달린다. 피해자의 위치에서 생을 마감하는 선택보다 무고를 조장한 여성을 살해하는 쪽을 권고한다.

성폭력 피의자가 고소인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보배드림 이용자는 피의자를 옹호하며 그의 억울함에 더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살해당한 여성은 "무고년[212]"이기 때문에 응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 또 "진짜 피해자[213]"를 보호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도 대상화되어 조롱거리로 축소된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임에도 무고 담론의 지형 안에서는 여성 집단과 동일시되며 멸시의 대상으로 재현된다.

> (중략) 성범죄 무고만으로도 남자 직장에 통보돼 잘려 주위 사람들에게 쓰레기 돼 무죄가 밝혀져도 무고년은 처벌도 솜털 나같아도 무고한 년 찾아가 죽이것다(죽이겠다) 앞으로 무고한 년들 많이 죽어나가길 바란당 김학의, 장자연 등 진짜 피해자들은 보호하지도 않아요 씨벌 보지가죽부~[214]

위의 게시글 작성자를 비롯한 댓글 작성자는 살해 위협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마저도 정당하다고 서술했다. 이 게시글의 한 댓글은 "억울하다고 혼자 자살하지 말고 반드시 보복을 해야 (추천 52 반대 0)[215]" 한다고 동조했다. 이처럼 보배드림과 인벤에서는 무고 관련 게시물과 댓글 곳곳마다 여성을 위협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가출 청소년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획득하여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 게시물에는 "저라면...목 땁니다..그여자, 경찰, 검사, 판사 (추천 77, 반대 0)[216]"라는 댓글이 달린다. 같은 내용을 게시한 또 다른 글의 댓글도 "무고죄도 무겁게 처벌해야 해요. 미투했는데 자기는 그런적 없다면 신고했던 거짓가해자 살해당할까 걱정됩니다. 또다른 범죄가 생길듯 싶네요. (추천 45, 반대 0)[217]"처럼 '거짓 가해자'인 청소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

---

211) 보배드림, 2019년 8월 13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무고죄 레전드
212) 보배드림, 2020;년 11월 25일, 성추행 무고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써라
213) 위와 같음
214) 위와 같음
215) 위와 같음
216) 보배드림, 2020년 9월 7일, 성폭행 무고 레전드.jpg

한다. 위와 같은 게시물에서 피해자 남성은 이른바 '명문대' 출신으로 교직원으로 취업했거나, 위의 D 사례처럼 안정된 직장을 이룬 중산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은 진정한 피해자가 꽃뱀에 의해 인생이 파탄 나는 서사를 무고 담론으로 배치했다.

앞서 본 뉴스나 포털뉴스 댓글과 달리 남초 커뮤니티는 펜스룰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 여성을 성욕을 배설하는 도구로 축소한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섹슈얼리티를 활용해 남성 인생을 위협할 수 있는 성기일 뿐이다. "그래서 요즘 여자를 안 만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성욕은 풀어야 하니 성인완구시장이 커진거고 (중략) (추천 387, 반대 9)[218]"처럼 거짓말하는 여성 대신 성인 완구 용품으로 성욕을 해결할 것을 추천한다. 여성을 성기로 물화(Reification)한 담론적 선택은 무고 담론장 안에서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재구성된다.

보배드림은 인벤보다 여성을 성기로 인지하는 표현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여성은 "보지달고 있는 게 무기가 아니란 걸[219]" 알려줘야 하는 대상이다. 남성 이용자가 "보헤미안[220]" 같은 여자를 발견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댓글을 단다.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 "ㅅㅏ(사)먹는 게 제일 안전(공감 310, 반대 12[221])"한 물건이자 젊은 여성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인형 "리얼돌[222]"과 다른 바 없는 대상이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은 물건이므로 금전으로 교환하는 대상이며, 물건인 여성이 성폭력을 주장하면 분노와 함께 금전적 손실을 본다고 느낀다. 즉, 물화 대상이 성적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할 때 남성 이용자는 극한 분노를 표출하며 여성을 비난한다.

현 정부를 페미니스트로 비판하는 게시글에서 댓글 작성자는 "좆 같은 페미, 그걸 밀어주는 언론과 정치계. 방관하는 대통령. 이게 나라가 맞긴 함? 난죽택(난 죽음을 택하겠다)이 진짜 농담식의 인터넷 용어가 아니라

217) 보배드림, 2019년 1월 29일, 무고죄 실제 사례
218) 보배드림, 2019년 10월 12일,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jpg
219) 보배드림, 2020년 8월 21일, 강지환 미투 무고 근황
220) 보지(여성 성기) 헤/프게 쓰고 미/투하면 안/전하다 라는 신조어
221) 보배드림, 2019년 10월 12일,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jpg
222) 위와 같음

현실화 중인듯?? (공감 11, 비공감 2)[223]"으로 페미니스트와 현 정부의 연결 고리를 강조한다. 이런 언표는 무고 담론의 지형에서 남성이 피해자의 입장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다. 권력자인 정부가 여성 집단을 우대하므로 여성을 더는 약자 위치에 둘 수 없다. 반대로 현 정부로 대표되는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남성이자 커뮤니티 사용자야말로 바로 진정한 피해자이다.

제 3 절 소결

이번 장은 남초 커뮤니티가 성폭력 무고 담론을 형성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앞서 보수·중도 언론이 형성한 무고 담론의 대상이 무고 피의자였다면, 네이버 뉴스 댓글이 형성한 대상은 동의를 뒤집는 여성이었다. 남초 커뮤니티는 언론이나 댓글보다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언표인 "꽃뱀"으로 성폭력 무고 담론의 대상을 구성한다.

남초 커뮤니티가 구성하는 무고 담론의 장에서 발화할 수 있는 주체의 위치는 "진짜 피해자"인 남성이다. 무고의 진짜 피해자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커뮤니티 이용자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당사자성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이용자는 무고 담론이 형성한 주체의 위치를 공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무고죄를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중범죄라는 담론의 개념으로 좌표화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마치 숫자와 사실관계를 신봉하는 듯한 언표나 수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커뮤니티가 구성하는 무고 담론을 뒷받침하는 특수한 사례나 확인되지 않는 경험담,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통계 등만이 규칙적으로 반복 배열되면서 무고 담론장으로 진입하였다. 커뮤니티 게시글은 전반적으로 빈약한 근거만으로도 강력한 진실처럼 구현되었다. 커뮤니티 이용자는 다수 게시글의 논증 오류도 개의치 않고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언표를 사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구성하는 담론적 전략은 비담론적 장에서의 실천인

223) 인벤, 2018년 10월 20일, 대한민국에 페미가 최근 난리치는 이유

사적 보복이나 정치권 비난으로 나타난다. 보배드림이 주로 사적 보복에 치중한다면, 인벤은 정부 비난과 같은 정치 권력과 대항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언론이나 뉴스 댓글이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 '펜스룰'을 주요 전략으로 활용했다면, 커뮤니티는 성욕을 푸는 수단으로써 여성을 물화하여 성기로 환원한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섹슈얼리티를 활용해 얼마든지 남성 인생을 위협할 수 있는 성기일 뿐이다. 무고 담론의 지형에서 '진실한' 여성도 결국 성기의 또 다른 형태이다.

요약하면, 남초 커뮤니티는 진정한 피해자인 남성만이 말할 수 있는 발화 자격을 얻고 여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을 구성한다. 게시글은 믿기 어렵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근거만으로도 주장을 정당화하는 허약한 논리 체계를 보여줬다. 그런데도 사실관계나 논리보다는 애초에 믿으려는 전제를 재논증하는 오류를 불사하며 여성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 5 장 결론

이 연구는 언론과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무고 담론을 증폭시키는 주요 장으로 기능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담론은 자유주의적인 법 권리 담론에서 말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권리 충돌 문제로 왜소화(신상숙, 2001)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개념 자체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써 성폭력 무고 담론이 강력하게 부상함을 확인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공간과 언론이 있었다.

첫째, 연구 대상이 된 언론사 4개 사 가운데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를 비롯한 한국일보와 연합뉴스는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의자를 담론 주체의 위치로 배치해 성폭력 무고 담론을 구성한다. 무고 피의자를 발화할 자격이 있다고 보고 대항 담론을 생성하는 언론사는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위의 세 언론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담론을 구축한 배경에는 형식적 객관주의적 보도 방식에 있다. 이런 보도 관행은 무고 피의자의 발화를 배제하거나 희박화하는 방식으로 무고 담론을 형성했다.

성폭력 무고 담론은 페미니즘 재부상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남성의 반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언론도 형식적 객관주의란 허울 아래 무고 담론의 증폭에 가세했다. 일례로 양쪽 균형을 맞춘다는 형식적 객관주의 아래 성폭력 피의자와 무고 피의자의 발화를 모두 인용하거나, 성폭력 피의자의 관점을 투영한 수사기관의 발언 등을 함께 보도한다. 성폭력과 같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도 언론은 마치 성폭력을 동일선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사건처럼 대립 구도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병렬식 보도는 무고 피의자가 실제 경험하는 불평등을 삭제하거나 희미하게 만들었다.

둘째, 포털뉴스의 댓글에서 구성되는 성폭력 무고 담론은 언론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권력이 없는 남성이라는 주체의 위치를 구성한다. 댓글이 언론 보도와 다른 부분은 실재하는 성폭력 범죄까지 부정하는 방향으로 무고 담론을 확장한다는 점이다. 댓글 작성자는 무고 피의자의 주

장을 의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대상화한다. 성관계에서도 동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림으로써 남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이다. 이때 모든 여성을 비난하는 주장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진짜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구성한다.

셋째, 남초 커뮤니티는 '진정한 피해자 남성'에게만 발화 자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무고 담론의 생산과 확산에 앞장선다. 커뮤니티가 구성한 담론은 여성 주체의 발화를 앞서 나타난 댓글이나 언론 보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배제하며, 무고 피의자를 비롯한 모든 여성을 과거 성폭력 통념이 구성한 '꽃뱀' 담론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폭력 무고 담론의 개념이 마치 남성의 인생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규정됨으로 인해 커뮤니티 사용자는 여성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 언론이나 뉴스 댓글이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 '펜스룰'을 담론적 실천 방안으로 주장했다면, 커뮤니티는 성욕을 푸는 수단으로써 여성을 물화하여 성기로 환원하는 전략을 형성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묘사되는 여성은 섹슈얼리티를 활용해 언제든 남성 인생을 위협하는 성기일 뿐이다.

언론사는 기사에서 무고 담론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무고 피의자로 대표되는 여성으로 상정하지 않으나, 포털뉴스 댓글은 다르다. 댓글 작성자는 여성을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선량한 약자인 남성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담론 주체의 위치를 구성한다. 이 부분은 남초 커뮤니티 정서와 상당 부분 맞닿아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남초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과의 차이가 드러난다. 댓글 작성자는 표면상으로는 무고 담론 안에서의 성폭력 피의자와 거리를 둔다. 순공감순 댓글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성폭력 사건에 공감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반면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게시글마다 당사자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며, 분노를 표출하는 강도도 댓글보다 훨씬 세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폭력 무고 담론에서 사실관계를 근거로 주로 참조하는 자료 중 상당수는 언론 보도였다. 그중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원사건인 무고죄 판결의 유무죄 여부가 자주 인용되었다. 무고죄가 유죄로 나오면 피고인인 여성을 맹비난하는 데 반해, 무죄로 나오면 사법기관과

정부를 비난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초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법적 판단을 마치 사실을 가르는 절대적 잣대처럼 신봉하나, 막상 이용자가 원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으면 판단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커뮤니티 게시글은 이른바 '팩트'를 신봉하는 언표를 자주 활용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근거만으로도 주장을 정당화하는 허약한 논리 체계를 보여줬다.

반대로 연구 대상이 된 언론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참조하여 보도하는 기사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보배드림 등 남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폭력 피의자와 주변인의 게시글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성폭력 무고 담론의 진리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한 포털뉴스 댓글 작성자는 무고 담론에서 무고 피의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남성 주체를 부각하는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마치 다수 여론처럼 조성한다. 이 연구를 통해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의 의제 설정자의 위치를 점유했으며, 온라인 공간과 언론 보도가 상호 담론을 구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댓글이 여론으로 인지된다는 점은 우려될만한 부분이다. 이번 연구에 수집된 기사 134건 중 네이버 댓글 작성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알 수 있는 기사는 110건으로 전체의 82%였다. 전체 댓글 작성자 중 평균 26%만이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평균 74%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평균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26%)와 50대(18%) 순이었다. 이 수치를 통해 네이버 댓글 작성자 중 상당수는 3~40대 남성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부 30~40대 남성의 견해가 여론으로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커뮤니티에서 구성된 무고 담론은 하위문화를 넘어 언론과 정치권에서의 진리 구성에도 영향력을 끼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2021년 10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 신설"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224]. 성폭력 무고 담론이 사회 규제로 실현될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미이다. 윤 후보의 국민캠프는 "무고죄 처벌 강화를 추가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상습 무고 행위자

224) 윤석열 국민캠프, 2021년 10월 21일,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합니다"

들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225]"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담론장에서 발생시킨 언표의 양태인 '진짜 피해자 남성'과 담론의 대상인 거짓말하는 여성이라는 언표가 정치권의 언어로 흡수되었다. 이는 성폭력 무고 담론이 피해자 남성에게 발화 자격을 부여하면서,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담론을 발생시키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의미이다.

언론은 무고 담론에서 주체의 위치를 '진정한 피해자 남성'으로 보고 발화 자격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은 여성을 사법기관 등 권력 기관만큼이나 동등한 위치의 권력자로 상정하면서 '권력이 없는 남성'이라는 담론 주체의 위치를 형성했다.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간의 상호 담론이 매개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발화는 담론장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우리 사회는 무고 담론에서 말할 수 있는 발화자의 권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식 생산 과정을 재편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현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게재되는 언론 보도는 커뮤니티 담론을 무분별하게 매개하면서 성폭력 무고 담론을 마치 진실처럼 구성한다. 동시에 포털 사이트 뉴스에 호응하는 댓글과 커뮤니티도 무고 담론을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데 앞장선다. 커뮤니티 담론이 다수의 의견처럼 배치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젠더 기반 폭력의 실재를 드러낸 우리 사회의 합의와 성과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이라는 한정된 기한 안에 수집된 언표를 통해 형성된 무고 담론의 일부만을 드러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을 고려하면 이 시기의 무고 담론은 현재 구성되는 담론의 현실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연구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전체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 일부에만 국한된 담론적 사실을 분석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를 통해 무고 담론에서 발화 자격을 부여하거나 젠더 불평등한 담론이 재생산되는 근원을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225) 윤석열 국민캠프, 2021년 10월 23일, [국민캠프 장예찬 청년특보 논평]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한 양성평등 공약을 매도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참 고 문 헌

강경화, 2012,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죄 적용 요인 분석: 검찰 수사과정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문봉, 2017,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무고사건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명아, 2021, “성폭력 부정주의의 정동적 힘과 대안적 정동 생성의 ‘쓰기’”, 여성문학연구, 52, 230-262.

권인숙, 2015, “성폭력 피해에 관한 다양한 통념비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엮음,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성폭력 통념비판과 피해 의미의 재구성」, 한국성폭력상담소.

권인숙·이건정·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김보명, 2018,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한국여성학, 34(1), 1-31.

김보화, 2018,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 연대”, 여성학논집, 35(2), 113-153.

_____, 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페미니즘 연구, 19(2), 3-43.

_____, 2021,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선해, 2020, 안티 페미니즘 조직의 정당성 획득 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선호·김위근·박아란·양정애, 2018,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8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선호·김위근, 2019,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성태·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0(3), 175-204.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_____, 2018,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의 미투 운동에 관한 담론 분석”, 여성학논집, 35(2), 3-35.

_____, 2020, “지식의 편향 구조와 혐오: 국내 위키 서비스 ‘여성혐오’ 논란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5(1), 141-183.

김수아·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33(3), 67-107.

김엘림, 2015, “여성차별에 관한 사법의 동향” 저스티스, 146(3), 539-578.

김위근·황용석, 2020, 「한국 언론과 포털 뉴스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은미·조윤용·임영호·송보영, 2015, “다문화 범죄 보도에서 기사 구성 방식과 출신국에 대한 태도가 댓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6), 107-136.

김은경·이나영, 2015, “성폭력, 누구에 대한 어떤 공포인가”, 미디어, 젠더 & 문화, 30(2), 5-38.

김은주·방정배, 2010, “뉴스통신사 선거 보도 뉴스 프레임 변동 연구”, 한국방송학보, 24(5), 90-125.

김태명, 2018, “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서울법학, 25(4), 365-400.

김학준, 20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효인, 2017,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00_내_성폭력’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4), 5-70.

남궁석, 20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4481호) 검토 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남승현, 2019,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아내 발화의 효과. 여성학논집, 36(1): 27-58.

대검찰청, 2020, 「2020 범죄분석」.
민가영, 2017, “생존의 개인화 시대에 십대 가출 여성의 자기 보호”, 여성학논집, 제34권, 29-59.
박무늬·민혜영·장태훈, 2019, “청년 세대(20~30대) 남성의 여성 혐오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역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1), 85-111.
박찬성, 2019, “‘무고죄’ 맞고소의 문제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그리고 그 너머”, 공익과 인권, 19, 351-388.
배은경, 2019, “한국사회의 젠더와 젠더갈등: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대환·방민호·한준·김원섭·김왕배·배은경·강원택 공저, 「막힌 사회와 그 비상구들」, 아시아.
변혜정, 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 20(2), 41-74.
_____, 2009, “성폭력 사건들이 개인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 여/성이론(20), 216-235.
신상숙, 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13), 6-43.
_____, 2018,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연속선”, 페미니즘 연구, 18(1), 267-301.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10-45.
심현정·라광현, 2018, “국내 미투운동의 형사사법학적 함의”, 한국경찰학회보, 20(4), 85-108.
안상욱, 2011, 한국 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현아, 2011, “젠더(gender)에 관한 법적 추론의 여러 방식들”, 젠더법학, 3(2), 209-223.
엄기호, 2017, “보편성의 정치와 한국의 남성성” 권김현영 엮음,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서울: 교양인.

엄혜진, 2009, “운동 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페미니즘연구, 9(1), 31-78.

오생근, 1995, “특집 : 성과 사회 <성의 역사>와 성, 권력, 주체”. 사회비평, 13, 57-76.

원미혜, 2011, “여성의 성 위계와 창녀 낙인”, 아시아여성연구, 50(2), 45-84.

유효선·이재국, 2021, “청와대 국민청원의 속성과 이용자 관여, 언론보도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35(1), 115-153.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 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건호, 2006, “디지털 시대 의제 설정 효과로서의 점화 이론: 인터넷 매체가 수용자의 인식과 가치 판단 설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50(3), 367-392.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3), 106-145.

이나영·허민숙, 2014,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가족과 문화, 26(4), 58-90.

이동환·강내원·전종우, 2017, “SNS를 통한 시민 사회운동의 공론화 과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4(2), 83-123.

이미경, 2007, “판례바꾸기운동, 새로운 시작”,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운/동 열두번째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12)」.

_____,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종걸, 1995, “여성과 인권”, 저스티스, 28(2), 168-184.

이헌아·류석진, 2013,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과 제도”, 정보사회와 미디어, (27), 25-55.

임종섭, 2019, “언론 위기 국면에 국제 뉴스 통신사들의 사례 분석을 통한 연합뉴스의 역할 고찰”, 언론과학연구, 19(2), 112-153.

장다혜, 2018, “형법상 성폭력 법체계의 개선 방향: 성적 자기 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2), 37-86.

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2012년 성폭력 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 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63.

장미혜·이미정·고현승, 2019, 「2019년 전국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정낙원·김성욱, 2020, “네이버, 다음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여론조사 뉴스 댓글에 나타난 댓글 여론과 적대적 언어 분석”, 언론문화연구, 28, 58-106.

정은경, 2017, 성폭력 피해 여성의 무고피소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185-219.

천정환, 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역사비평, 353-381.

최이숙·김은진, 2019,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하였는가?: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본 미투운동 초기 TV 보도의 양상”, 미디어, 젠더&문화, 34(2), 147-189.

추지현, 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30(3), 45-84.

_____, 2017,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2000,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허경, 2016,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허민숙, 201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32(2), 1-29.

_____,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한국여성학, 33(3), 1-31.

_____, 2018,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한국여성학, 34(4), 69-97.

_____, 2019, “보통의 강간 :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 상담일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5(4), 1-30.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4개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3, 186-218.

홍찬숙·한정숙·오현미·김보명, 2019, 「개인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한국사회 변동의 방향: 촛불혁명과 미투운동(#me too)을 중심으로」, SBS 문화재단 제출 연구보고서.

황슬하·강진숙, 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8(4), 356-388.

Anderson, K. J., 2015, *Modern misogyny: Anti-feminism in a post-feminist era,* Oxford University Press(김청아·이덕균 역, 여성혐오의 시대—페미니즘은 끝났다는 모함에 관하여, 서울: 나름북스)

Belknap, J. 2006,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3rd Edition)*, Cengage Learning.(윤옥경 외 역, 2009, 여성범죄론: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제3판),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_____. 2010, Rape: Too hard to report and too easy to discredit victims. *Violence Against Women*, 16(12), 1335-1344.

Campbell, R., Wasco, S. M., Ahrens, C. E., Sefl, T., & Barnes, H. E. 2001, Preventing the “Second rape”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community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2), 1239-1259.

Du Mont, J., & Myhr, T. L., 2000, So few convictions: The role of client-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legal processing of sexual assaults. Violence Against Women, 6(10), 1109-1136.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New York: Edward Arnold (이원표 역, 「대중매체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_____, 2001, *Language and power*, Pearson Education.

_____, 2003. *Analysing Dis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김지홍 역, 「담화분석방법: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광명: 경진).

_____,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Routledge.

Feezell, J. T., 2018, Agenda setting through social media: The importance of incidental news exposure and social filtering in the digital er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1(2), 482-494.

Foucault, M., 1969, *L'Archéologie du Savoir*(이정우 역, 2000,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_____, 1971a,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이정우 역, 1993,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_____, 1971b, *L'ordre du discours: lecon inaugurale au Collège de France prononsée le 2. décembre 1970*, Paris: Editions Gallimard(허경 역, 2020, 「담론의 질서」. 서울: 세창출판사)

Han, J., Lee, S., & McCombs, M., 2017, The attribute agenda-setting influence of online community on online newscast: investigating the South Korean Sewol ferry tragedy,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7(6), 601-615.

Kreis, A., 2020, Defensive glass ceilings,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88(1), 147-203.

Lee, B., Lancendorfer, K. M., & Lee, K. J., 2005, Agenda-setting and the Internet: The intermedia influence of Internet bulletin boards on newspaper coverage of the 2000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5(1), 57-71.

Lim, J., 2006, A cross-lagged analysis of agenda setting among online news media,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2), 298-312.

Lerner, G. 1986. *The creation of patriarchy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강세영 역, 2018, 「가부장제의 창조」, 서울: 당대).

Lisak, D., Gardinier, L., Nicksa, S. C., & Cote, A. M., 2010, False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An analysis of ten years of reported cases, *Violence against women*, 16(12), 1318-1334.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McCombs, M. E. ,2014, *Setting the Agenda: The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2nd edition.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Rogstad, I., 2016, Is Twitter just rehashing? Intermedia agenda setting between Twitter and mainstream medi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13(2), 142-158.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USA.

Sturken, M., & Cartwright, L., 2017, *Practices of looking : a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Third edi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Weeks, J, 1986, Sexuality, Tavistock Publications(서동진·채규형 역, 1994,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Weiser, D. A, 2017, Confronting myths about sexual assault: A feminist analysis of the false report literature, Family relations, 66(1), 46-60.

Wodak, R, 2002, “Friend or foe: the defamation or legitimate and necessary criticism? Reflections on recent political discourse in Austria.”, *Language&Communication*, 22, 495-517.

多賀 太, 2016, *男子問題の時代? : 錯綜するジェンダ-と教育のポリティクス*, 學文社(책사소 역, 2017, 「남자문제의 시대 : 젠더와 교육의 정치」, 파주: 들녘)

언론 기사

경향신문, 2018년 2월 1일, 문제는 '미투' 이후다 어김없는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경향신문, 2018년 2월 8일, "성폭력, 남성중심 사회 일반의 문제" 문단내 성폭력 폭로한 김현 시인 인터뷰

경향신문, 2018년 2월 24일, 성폭력 피해자 위한 법, 있지만 없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27일, [미투] '상사 성추행' 폭로했다 무고 몰린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무죄

경향신문, 2018년 3월 3일, "나는 꽃뱀이 아니다" 2차 가해를 막아라

경향신문, 2018년 3월 3일, "내 딸들은 죽었는데 가해자들과 경찰은 잘만 살더라"

경향신문, 2018년 3월 11일, [미투] "7년 전 다 기억하면 천재" 피해자 2번 울리는 '성폭력 통념'

경향신문, 2018년 4월 25일, [미투의 혁명, 혁명의 미투] (4) 성추행 고발서 남과 여 일상화된 모순 흔드는 바람으로

경향신문, 2018년 5월 6일, '성인지 감수성' 결핍된 법정 피해 여성은 두 번 운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19일, 청, '성폭력 무고죄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청원에 "적절한 방법 아니다"

경향신문, 2018년 10월 25일, '곰탕집 성추행' 맞불시위 나선 '남자 페미'들 "남성집단 안에서 균열 내겠다"

경향신문 2019년 1월 29일, "미투 '2차 가해' 여전 모든 걸 불살라야 하는 비정상 끝나야"

경향신문, 2019년 4월 3일, '강간죄 → 비동의 간음죄' 요구 다시 거세진다

경향신문 2020년 4월 24일, [성범죄법 잔혹사 ⑤] 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국민일보, 2020년 12월 12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무고상

담센터'로 전화주세요"
뉴시스, 2016년 4월 22일, 네이버, 뉴스 댓글 성별·나이 통계 서비스
뉴시스, 2021년 12월 20일, 경찰, 조두순 집으로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구속 송치
동아일보, 2018년 1월 24일, "박시후, 성폭행 논란 이후 인간관계 깔끔히 정리"
동아일보, 2018년 2월 8일, "약 먹여 환각 상태 빠트려 성폭행 진술 불구, 박근혜 총애받는다고 무혐의"
동아일보, 2018년 3월 5일,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C 시인, 2년 전 '성폭력 누명' 쓰고 법정 싸움
동아일보, 201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펜스룰' 갑론을박…"위드유 외치며 펜스룰? 언어도단"
동아일보, 2018년 3월 10일, 한국판 앙시앵 레짐의 종언… 알파걸이 방아쇠 당겼다
동아일보, 2018년 3월 15일, 김흥국 "성폭행·성추행 No, 성관계도 없었다…무고혐의 법적 대응"
동아일보, 2018년 3월 17일, "탁자 아래로 손 내리지 마라, 마주치는 것은 술잔뿐"
동아일보, 2018년 3월 17일, 희롱 아니면 여성과 말 못 하나? "펜스룰은 울타리가 아니라니까요"
동아일보, 2018년, 4월 4일, 표창원 "김흥국 성폭행 의혹, 유죄 확인된 자 '가중처벌'"
동아일보, 2018년 4월 17일, 김흥국 2번째 '성추행 폭로자' 입장 번복… 누리꾼 "미투 변질"
동아일보, 2018년 6월 20일, 미투 폭로뒤 실직 40명중 1명만 복직… 생활고에 또 운다
동아일보, 2018년 7월 9일, A 사건' 스튜디오 실장, 무고 맞고소→헌법소원→북한강 투신
동아일보, 2018년 7월 19일, 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에 "상응하는

처벌 받도록 더 면밀한 수사가 타당”
동아일보, 2018년 9월 12일, 스튜디오 실장 동생 추정 A “A 낚시 사진 경악, 우린 지옥인데…”
동아일보, 2019년 1월 25일, C 시인 “손석희 앵커님, 여럿 인생 파탄내 놓고 안녕하셨습니까”
동아일보, 2019년 4월 1일, 김형준 통편집…‘성폭행 혐의’ 피소, 31일 복면가왕서 삭제
동아일보, 2020년 7월 10일, ‘박원순 미투 의혹’ 피해자 신상털이 2차 가해 우려
동아일보, 2020년 10월 20일, 청산될 수 없는 인간이기에[2030 세상/도진수]
동아일보, 2020년 12월 14일, 남편의 조카 성폭행 알고 이웃 주민에 뒤집어씌운 50대 주부 징역 7년 선고
동아일보, 2021년 4월 24일, 이준석 “길 가는 이대남에게 물어봐라, 反페미인지 아닌지”
리얼뉴스, 2020년 8월 21일, 그는 왜 성추행 징계에 맞서기로 했나
법률신문, 2013년 5월 7일,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법률신문, 2013년 6월 18일,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 객체 ‘부녀→사람’”
세계일보, 2018년 11월 12일, 상대 여성 거짓말에 ‘성범죄자’ 낙인… 남성에게만 유죄추정원칙?
스포츠조선, 2020년 8월 19일, [단독]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강지환 CCTV-카톡 입수…피해자몸→DNA無, 카톡도 터졌다
연합뉴스, 1991년 10월 11일, 의사 간호사에 대한 성폭행 무죄
연합뉴스, 1997년 6월 11일, <聯合時論> 誣告사범 뿌리뽑아야
연합뉴스, 2005년 12월 22일, 대구·경북, 무고·위증사범 증가
연합뉴스, 2017년 2월 16일, 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 될 것”
연합뉴스, 2018년 1월 30일,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2018년 3월 12일, 도 넘은 ‘미투’ 2차 가해…“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변해야”
연합뉴스, 2018년 3월 13일, [카드뉴스] “여직원은 내 주변 60㎝ 안에 들어오지 마라”…황당한 ‘펜스 룰’
연합뉴스, 2018년 3월 25일, ‘90년생 김지훈’ 등장…男女대결로 몰아가는 ‘유투운동’
연합뉴스, 2018년 3월 29일, ‘미투운동’ 두 달…바뀐 것 그리고 바꿔야 할 것
연합뉴스, 2018년 5월 8일, 경찰 “김흥국 성폭행 혐의 없어”…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18년, 5월 25일 성매매 혐의 연예인,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 진술
연합뉴스, 2018년 5월 28일,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연합뉴스, 2018년 5월 29일, 스튜디오 실장, A 맞고소… “무고·명예훼손”
연합뉴스, 2018년 5월 31일, ‘A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매뉴얼 헌법소원
연합뉴스, 2018년 6월 1일, 유튜버 A 사진 최초촬영자 확인…경찰, 유출혐의 조사
연합뉴스, 2018년 8월 29일, 경찰 ‘김흥국 성폭행’ 폭로에 무고죄 ‘무혐의’…검찰, 보완 지시
연합뉴스, 2018년 12월 13일, 각박한 사회, 무고·모욕 판친다… 법원·검찰은 ‘철퇴’
연합뉴스, 2019년 2월 6일, A,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모욕 고소…“악플은 범죄”
연합뉴스, 2019년 4월 9일, 김학의, 반격 나섰다…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혐의 고소
연합뉴스, 2019년 5월 1일, ‘성추행 보도 반박’ 정봉주 “미투 열풍 속

희생양됐다”
연합뉴스, 2019년 8월 16일, 직장 후배 성폭행하고도 경찰에 무고로 고소한 ‘나쁜 상사’
연합뉴스, 2019년 12월 17일, 법원 “성폭력 허위고소는 중대 범죄”…항소 기각
연합뉴스, 2020년 9월 17일,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
연합뉴스, 2020년 10월 1일, “강간당했다” 거짓신고 뒤 합의금 뜯은 다방 종업원 실형
연합뉴스, 2020년 10월 17일, ‘미투 무고 피해’ C “손석희는 지금쯤 어떤 기분일까”
연합뉴스, 2020년 11월 5일,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연합뉴스, 2020년 11월 29일, [이슈 컷] 성관계 상황 몰래 녹음하면 처벌? 성 대결로 번진 찬반 논쟁
연합뉴스, 2020년 12월 18일, 또 구속 면한 오거돈…다른 성추행 혐의 추가됐는데도 영장 기각(종합2보)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6일, [단독] “학생들과 신체접촉 신빙성 높아”...자살 교사 유족 손배 기각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26일, ‘C 무고 98년생 D’ 오명 지운 법원 “공익 목적의 폭로”
조선일보, 1995년 10월 18일, [李圭泰 코너] 誣告 三傑
조선일보, 1998년 7월 24일, 제자에 성(性)추행 혐의 국립무용단장 영장
조선일보, 1999년 10월 19일, 무고 급증
조선일보, 2021년 7월 30일, 20대 남성, 野지지 55% 與 15%…여성은 與 42% 野 22.5%
한겨레21, 1997년 5월 10일, 성희롱에 희롱당하는 서울대
한국경제, 2016년 8월 19일, ‘무고 범죄’ 세계 1위…부끄러운 자화상

한국경제, 2016년 8월 19일, [경찰팀 리포트] 죄 없는 사람 잡는 무고…진실 밝혀져도 인터넷엔 주홍글씨
한국기자협회보, 2021년 1월 13일, 신문·디지털 분리 매체들, 실시간 대응팀 고민
한국기자협회보, 2021년 6월 22일, ‘실검 보도’ 사라진 자리 꿰찬 ‘온라인 커뮤니티 보도’
한국일보, 2018년 2월 6일, [사설] ‘미투’ 결실을 보려면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 많아
한국일보, 2018년 2월 7일,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항소심서 유죄
한국일보, 2018년 3월 8일, “내 잘못이 아니라 ‘성범죄’였다고 인정해 주세요”
한국일보, 2018년 3월 15일, ‘[논・담]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
한국일보, 2018년 3월 26일, “당신도 성범죄 무고 피해자 될 수 있다” ‘유투 운동’ 논란
한국일보, 2018년 7월 9일, ‘억울해’ ‘A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투신
한국일보, 2018년 9월 27일, “성폭행 당했다” 사귀던 직장상사 무고 50대 집행유예
한국일보, 2018년 10월 8일, [단독] 미투운동 영향 올해 성폭행 신고 14% 증가
한국일보, 2019년 4월 9일, 김학의의 반격 성폭력 주장 여성 무고로 고소
한국일보, 2019년 4월 10일, 김학의 수사 ‘피해 여성 3인 입’에 성패 달렸다
한국일보, 2019년 10월 14일, ‘윤석열 논란의 진원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한국일보, 2019년 12월 12일, [시시콜콜Why]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

죄 확정, 왜?
한국일보, 2020년 1월 8일, 김건모, 폭행피해 주장 여성 명예훼손 고소
한국일보, 2020년 7월 12일, “박원순만한 남사친” “역시 펜스룰”… 2차 피해 확산 우려
한국일보, 2020년 9월 17일, 내연관계 발각되자 성폭행 주장한 여성… 대법 “무고 아니다”
한국일보, 2020년 10월 1일, “강간당했다” 허위신고 후 합의금 뜯은 여성 2명 실형
한국일보, 2020년 11월 23일,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에… “무고 입증 최후 수단” 반발도
한국일보, 2021년 9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45%…2주 연속 40%대
CBS노컷뉴스, 2021년 7월 30일, [단독] “무고녀 낙인” C 성희롱 폭로자, ‘2차 가해’ 경찰 고소
YTN, 2019년 9월 4일, [팩트와이] ‘거짓말 문화’ 한국인의 국민성일까?

온라인 자료

국가법령전문센터, 형법 156조 전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7%AC%AC156%E6%A2%9D (2021년 5월 2일 검색)
네이버 블로그, 2018년 2월 3일, 故 D 교사 미망인 E씀
https://m.blog.naver.com/ygjei/221200032702 (2021년 9월 16일 검색)
당당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angDangWe/ (2021년 4월 20일 검색)
보배드림 명예의 전당 게시판
https://www.bobaedream.co.kr/list?code=best&vdate=h (2021년 4월 2일 검색)
보배드림, 2018년 1월 12일, 성폭력 무고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48009 (2021년 9월 3일 검색)
보배드림, 2018년 7월 1일,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0592 (2021년 9월 14일 검색)
보배드림, 2018년 7월 8일, 무고죄에 빠친 청년. (남자가 약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1305 (2021년 8월 20일 검색)
보배드림, 2018년 9월 11일, 성추행 무고에 자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692 (2021년 9월 11일 검색)
보배드림, 2018년 9월 12일, “A 사건 관련 실장 동생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6513 (2021년 5월 12일 검색)
보배드림, 2018년 12월 18일, C 시인 성폭행 무고녀 미투코인 탑승시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91827 (2021년 9월 11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1월 11일, 속보)A 검찰 무고죄 조사받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95102&vdate=h (2021년 8월 30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1월 19일, 성추행 무고의 마지막.jpg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96171 (2021년 8월 31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1월 29일, 무고죄 실제 사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46435 (2021년 9월 11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3월 29일, C 시인, 자신을 무고했던 여성 신원공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59656 (2021년 9월 15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4월 21일, 무고녀에게 사이다 참교육중인 C 시인 트윗.jpg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12010 (2021년 9월 15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8월 13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무고죄 레전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35027 (2021년 9월 15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9월 28일, A 무고 무혐의 처분 항고도 기각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49665 (2021년 9월 12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10월 12일,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jpg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55513 (2021년 9월 11일 검색)
보배드림, 2020년 8월 21일, 강지환 미투 무고 근황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40927 (2021년 4월 24일 검색)
보배드림, 2020년 9월 7일, 성폭행 무고 레전드.jpg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46435 (2021년 9월 15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10월 12일,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jpg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55513 (2021년 9월 15일 검색)
보배드림, 2019년 11월 30일, 한여자의 허위고소로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863971 (2021년

9월 20일 검색)
보배드림, 2020년 5월 31일, 여자에게 성추행 당해서 고소했는데 무혐의 떳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156762 (2021년 9월 20일 검색)
보배드림, 2020년 10월 21일, C 가짜 미투 무고자는 어떻게 됬냐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59656 (2021년 9월 15일 검색)
보배드림, 2020년 11월 3일,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 출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64141 (2021년 8월 18일 검색)
보배드림, 2020년 11월 25일, 성추행 무고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써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70030 (2021년 9월 15일 검색)
보배드림, 2021년 1월 12일, 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85582 (2021년 9월 23일 검색)
얼룩소, 2021년 10월 18일, [Datalook] 온라인 커뮤니티가 출입처가 된 기자들
https://alook.so/posts/YytD0e (2021년 12월 29일 검색)
https://alook.so/posts/YytD0e (2021년 11월 4일 검색)
오늘의 베스트, 월간 커뮤니티 순위
https://todaybeststory.com/ranking_monthly.html (2021년 4월 4일 검색)
오세욱, 2020, “네이버 댓글 개편 이후 이용 변화와 향후 댓글 정책 제안”,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정책리포트웹진, 3호, 1-16.
https://www.kpf.or.kr/commonfile/fileidDownLoad.do?file_id=00050260E95BA256F2F1C8A426A451ED&board_id=246&contents_id=60ba51802ff04bbc872275a785137b69 (2021년 6월 28일 검색)

윤석열 국민캠프, 2021년 10월 21일,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합니다”
https://blog.naver.com/yoonsukyeol/222543773164 (2021년 11월 5일 검색)
윤석열 국민캠프, 2021년 10월 23일, [국민캠프 장예찬 청년특보 논평]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한 양성평등 공약을 매도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https://www.facebook.com/kukmincamp/posts/197152385849929 (2021년 11월 5일 검색)
인벤, 2018년 2월 28일, 한국, ‘성폭력 무고죄’ 세계 1위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904122?iskin=webzine (2021년 8월 18일 검색)
인벤, 2018년 3월 14일, 고 D교사 부인이 쓴 글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912221?iskin=webzine (2021년 9월 15일 검색)
인벤, 2019년 3월 29일, C시인 무고 미투녀 신상 공개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178176?iskin=webzine (2021년 9월 15일 검색)
인벤, 2018년 4월 5일, 페미에 무관심해지면 벌어지는 일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925885?iskin=webzine (2021년 9월 5일 검색)
인벤, 2018년 4월 5일,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2021년 9월 5일 검색)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926362?iskin=webzine (2021년 9월 5일 검색)
인벤, 2018년 4월 5일, 헬스장 여성 탈의실 잘못 들어간 썰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926151?iskin=webzine (2021년 9월 15일 검색)
인벤, 2018년 5월 26일, A 이년으로 인해 여성들이 힘든 점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963692?iskin=webzine (2021년 9월 15일 검색)
인벤, 2018년 8월 6일, 근래의 범죄 공포는 거의가 인위적임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040047?iskin=webzine (2021년 9월 15일 검색)
인벤, 2018년 9월 8일, 이번정권 페미 안버리면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058657?iskin=webzine (2021년 8월 29일 검색)
인벤, 2018년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해야함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060110?iskin=webzine (2021년 9월 15일 검색)
인벤, 2018년 11월 11일, 문재인이 언제 소통과 화합을 잘한적 있음?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097278?iskin=webzine (2021년 9월 15일 검색)
인벤, 2019년 4월 20일, C 시인 사이다 레전드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191531?iskin=webzine (2021년 9월 15일 검색)
인벤, 2019년 6월 15일,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죄 사실상 폐지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222410?iskin=webzine (2021년 8월 29일 검색)
인벤, 2019년 10월 12일,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290859?iskin=webzine (2021년 9월 10일 검색)
인벤, 2019년 12월 12일, 페북) 무고 꽃뱀녀 대처법.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321967?iskin=webzine (2021년 9월 11일 검색)
인벤, 2020년 8월 19일,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 센터 출범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474907 (2021년 5월 19일 검색)

청와대 국민청원, 2018년 5월 25일,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021년 10월 11일 검색)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9 (2022년 1월 29일 검색)
한국기자협회,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2022년 1월 29일 검색)
한국언론재단, 2021, 언론산업 사업체와 매체 수(2014~2019)
http://hannun.or.kr/2021/1-1/ (2022년 1월 20일 검색)

부록 1.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수집 목록

인벤		보배드림	
게시일자	제목	게시일자	제목
2020-11-12	김현중 근황	2020-11-03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출범
2020-04-18	성폭행 무고 女 방송인 근황	2020-09-09	범죄 무고 상담센터 근황
2020-02-10	약고전) 무고죄 역관광 레전드	2020-08-18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출범
2020-02-09	前 여친의 무고로 인생을 망친 남자	2020-04-26	무고로 인생 조진 남자배우 강은일
2019-12-18	미국 장교가 강간 혐의 무고 죄로 95억 받아냄	2019-10-12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jpg
2019-12-17	남편이 괴로워해서" 내연남을 '성폭행범' 무고한 여성.	2019-04-21	무고녀에게 사이다 참교육중인 C 시인 트윗.jpg
2019-12-17	미국의 "무고죄" 처벌 수위.	2019-03-29	C 시인, 자신을 무고했던 여성 신원공개
2019-12-12	페북) 무고 꽃뱀녀 대처법.	2019-02-17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답변하는 자세.jpg
2019-12-09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첫 시동	2019-02-15	A 성추행 무고죄 무혐의뜸 ㅋㅋㅋ
2019-11-08	아르헨티나의 동의 콘돔	2019-01-19	성추행 무고의 마지막.jpg
2019-10-23	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2019-01-11	속보) A 검찰 무고죄 조사받다
2019-10-12	모텔 성폭행 무고죄 역이용하는 여자들	2018-12-18	C 시인님 무고녀 근황
2019-07-10	광주 데이트 폭력사건의진실	2018-10-17	여성부 "무고죄는 폐지해야"
2019-06-17	성관계 뒤 남성 잠적하자 허위로 경찰에 진정서 제출한 여성…법원 "무고죄 성립 안돼"	2018-09-08	보배드림 성추행 무고 기사뜸!!
2019-06-16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	2018-07-08	무고죄에 빠친 청년.(남자가 약자)
2019-06-15	무고죄 사실상 폐지	2018-07-01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 성관계 축구선수 무고한 여성

			실형
2019-04-20	C 시인 사이다 레전드	2018-01-12	성폭력 무고죄
2019-03-29	C시인 무고 미투녀 신상 공개	2019-09-28	A 무고 무혐의 처분 항고도 기각
2019-02-25	현재 논란중인 기업은행 강간 무고죄사건	2018-12-11	무고는 중대 범죄입니다
2019-02-22	대한민국 사실상 남자한테 “사형선고”	2020-10-21	C 가짜 미투 무고자는 어떻게 됐냐고?
2019-02-20	정치글많네요..이십대가 왜 그리까는지 좀 알고싶네	2018-09-05	A 무고죄 처벌 청원 떳습니다
2018-11-29	앞으로 여자는 무조건 ‘무죄’ 시대 열리나.	2018-09-11	성추행 무고에 자살
2018-11-11	문재인이 언제 소통과 화합을 잘한적 있음?	2018-09-14	곰탕집 무고 사건 와이프분 초코파이님 꼭 쪽지좀 봐주세요
2018-11-11	성폭행 무고죄 꿈도 꾸지 말아라	2020-11-17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정식 출범
2018-11-09	무고죄로 인생망친 내 지인.SSUL	2020-11-03	한국 성범죄 무고상담센터 출범
2018-10-25	무고죄 언냐의 때늦은 후회	2020-08-08	천조국 무고죄 처벌수준
2018-10-22	현재 대한민국 남자상황	2018-09-10	성추행 무고 당해본 경험과 이번 일에 대한 생각
2018-10-20	대한민국에 페미가 최근 난리치는 이유	2019-12-28	이거 무고죄로 쳐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2018-10-19	4년 연속 범인 검거율 1위 경찰	2020-11-25	성추행 무고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써라
2018-10-17	대한민국.... 또 또 또 또 해냈다.	2020-08-21	강지환 미투 무고 근황
2018-10-17	보배 곰탕사건 거의 모든자료를 찾아본거 같습니다..	2018-09-09	김흥국 성폭행 무고죄 고소당한 女, 무혐의
2018-10-15	보배시위 헛다리 짚는거같은데	2018-07-07	미국 무고죄 처벌 수위
2018-10-12	자꾸 이번 답변 쉴드 치시는데	2018-03-08	정치인 미투 무고 피해자 나옴
2018-09-12	펌) 펌) 원나잇후 강간당했다고 협박 고소후	2020-03-05	분노주의) 누명벗어도 인생망치는 무고죄
2018-09-10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2020-09-07	성폭행 무고 레전드.jpg

	사과 해야함		
2018-09-09	아니 시바 여기에 댓글 공작부대가 있냐?	2020-04-28	무고죄를 더블로 줘야하는 이유
2018-09-08	이번정권 페미 안버리면	2018-12-18	C 시인 성폭행 무고녀 미투코인 탑승시도
2018-08-06	근래의 범죄 공포는 거의가 인위적임	2019-01-29	무고죄 실제 사례
2018-07-19	청와대 무고죄와 성폭력 매뉴얼 답변	2020-08-04	박원순사건 대리인 김재련 무고죄 고발.jpg 런닝사진.
2018-05-31	3번수정)법안 발의하면 무고죄 수사 안한답니다.	2018-12-23	무고 가해자로 고소당했는데 지원 받는 현실…
2018-05-30	'페미니즘 갈라치기' 이론에 대해	2018-03-01	무고죄 강화 처벌 청원 올라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2018-05-26	A 이년으로 인해 여성들이 힘든 점	2018-09-08	대한민국 남성분들 이번 무고 성추행 사건 가벼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2018-05-26	무고범죄자 A 똥줄 타들어가는중	2018-02-08	대만의 무고죄
2018-05-26	무고죄 특별법 청원 등장	2019-08-13	다시 생각하게 되는 무고죄 레전드
2018-05-21	뷔페니즘/이중잣대의 현실	2020-01-21	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무고죄 징역형
2018-05-13	시국이 엄중한데 페미가 웬 말이냐?	2019-06-15	[기타] 성폭행 무혐의 결정, 무고죄 직접 증거 안돼
2018-05-13	여자라서 당햇다 청원 14만 돌파		
2018-05-08	[루리웹펌,초장문,암주의] 여성계 단체 간부에게 직접들은 한국 페미의 현주소.txt		
2018-04-18	펌)애인외에 술먹고 ㅅㅅ하지마라		
2018-04-09	무고민국이 또 해냈다.news		
2018-04-05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2018-04-05	페미에 무관심해지면 벌어		

	지는 일		
2018-04-05	헬스장 여성 탈의실 잘못 들어간 썰		
2018-03-26	천운으로 3년 만에 밝혀진 무죄		
2018-03-21	김현중 여자친구 사건 전말		
2018-03-19	한국에서 남자에 의한 미투가 안 돼는 이유		
2018-03-16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		
2018-03-14	고 D교사 부인이 쓴 글		
2018-03-01	강간 무고로 고소당한 년 근황.twit		
2018-02-28	미투운동이 반발이 많은 이유		
2018-02-28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오해		
2018-02-28	한국, ‘성폭력 무고죄’ 세계 1위		
2018-02-26	JTBC가 손석희함		
2018-02-26	오달수 무고 팩트떴음		
2018-02-26	오달수 측 무고 고소 가능..		
2018-02-26	요즘 미투운동 오달수 건 보면서 생각나는 짤.jpg		
2018-01-18	혼돈의 무고 사건		

부록 2. ‘단순보도’ 기사의 내용 분류 기준

코딩	내용	기준
1	성폭력 피해자 무고 피소	① 성폭력 피해자 주변인 무고 고소(예: 정봉주) ② 유명인의 성폭력 피소 후 무고 주장(예: 이윤택) ③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인의 무고 고소 및 이후 법적 절차(예: 김흥국, 김기덕, 김학의) ④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된 성폭력 사건에서 일반인이 무고로 피소(예: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
2	성폭력 피해자 무고 유죄	①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죄 재판 결과(예: 이진욱) ② 동성 간 성폭력 무고 판결 포함
3	성폭력 피해자 무고 무혐의	① 유명인이 성폭력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했으나, 피의자 불송치/불기소(예: 김흥국, 신승남) ② 유명인의 성폭력 무고 피고인 무죄(예: 박유천) ③ 유명인이 성폭력 고소인을 무고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불송치 및 민사 패소(예: 김기덕)
4	성폭력 가해자 무고 피소	① 성폭력 고소인의 가해자 무고 고소(예: 정봉주) ② 검찰의 성폭력 가해자 무고죄 추가(예: 오거돈)
5	성폭력 가해자 무고 유죄	①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죄 재판 결과(예: 조덕제) ② 여성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 무고 판결 포함
6	성폭력 가해자 무고 무혐의	①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죄 재판 결과(예: 김학의) ②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죄 불송치/불기소(예: 우건도 전 충주시장)
7	정부/국제기구의 무고 대응	① 행정부의 성폭력 대응 정책(예: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무고·명예훼손 혐의 피소 대책) ② UN 여성 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보도
8	수사기관의 무고 대응	① 검찰의 무고·위증사범 검거 실적 보도자료 ② 경찰, 검찰의 무고 수사 경과 보도
9	성폭력 무고 현상 비판	① 성폭력 피해자 대상 무고 고소 비판(예: 한국여성의전화 보도자료 및 집회) ② 성폭력 무고 관련 학계 동향(예: 역고소 연구)
10	기타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사(예: 불편한 용기와 당당위 맞불 집회)

부록 3. 네이버 댓글 1,000개 이상 기사 목록

연번	언론	게재일자	온라인 제목	댓글 수
1	연합	2018-03-25	‘90년생 김지훈’ 등장…男女대결로 몰아가는 ‘유투운동’	17178
2	한국	2018-03-15	[논・담] “여성을 피하는 펜스룰은 스스로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셈”	7627
3	연합	2018-03-13	[카드뉴스] “여직원은 내 주변 60㎝ 안에 들어오지 마라”…황당한 ‘펜스 룰’	6371
4	연합	2018-03-27	‘정봉주 성추행’ 폭로자 “당시 호텔 카페에 있었던 증거있다”(종합)	5466
5	경향	2018-03-03	“내 딸들은 죽었는데 가해자들과 경찰은 잘만 살더라”	5306
6	연합	2018-05-26	‘A 카톡’ 보도에 수사관계자 “2차가해” 이례적 공개비판	3943
7	동아	2018-03-17	희롱 아니면 여성과 말 못 하나? “펜스룰은 울타리가 아니라니까요”	3850
8	연합	2019-02-06	A,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모욕 고소…“악플은 범죄”	3357
9	동아	2018-02-20	이윤택 공개사과했지만… “성폭행 당하고 낙태” 추가 폭로	3350
10	연합	2018-02-07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3316
11	연합	2019-02-07	A 측 “악플러 100여명 이어 추가 고소…공익 차원”	3190
12	연합	2018-10-27	“유죄추정 규탄” vs “2차 가해”…곰탕집 성추행 판결에 맞불집회(종합)	2450
13	경향	2018-03-30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은 왜 용서 못 하냐고 저를 비난합니다”	2360
14	경향	2018-10-25	‘곰탕집 성추행’ 맞불시위 나선 ‘남자 페미’들 “남성집단 안에서 균열 내겠다”	2246
15	연합	2019-12-13	김건모측 “성폭행 고소한 여성 누군지도 몰라”…무고로 맞고소	1918

16	연합	2019-03-31	‘김학의 성폭력 의혹’ 변수 돌출…진상조사, 뇌물규명에 중점	1795
17	한국	2018-04-23	“성폭행, 무죄로 만들어 드려요” 돈벌이 수단 된 성범죄	1639
18	연합	2019-04-09	김학의, 반격 나섰다…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무고혐의 고소	1531
19	연합	2018-03-29	‘미투 운동’ 두 달…바뀐 것 그리고 바꿔야 할 것	1482
20	경향	2018-02-08	“성폭력, 남성중심 사회 일반의 문제” 문단 내 성폭력 폭로한 김현 시인 인터뷰	1476
21	한국	2019-12-13	[속보] 성폭행 피소 김건모 맞고소 “고소인 누군지도 몰라”	1463
22	연합	2018-04-21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로 돈 뜯은 부부공갈단 집행유예	1187
23	연합	2020-08-13	“격려” vs “추행” 어깨 손 올린 부산시의원 CCTV 영상 공개	1170
24	한국	2019-04-27	‘곰탕집 성추행’ 피의자는 진술을 왜 번복했나?	1098
25	동아	2018-06-20	미투 폭로뒤 실직 40명중 1명만 복직… 생활고에 또 운다	1078
26	동아	2020-07-22	조국, 박원순 사건에…“성범죄 피의자, 유죄추정 안돼”	1072
27	연합	2018-06-01	유튜버 A 사진 최초촬영자 확인…경찰, 유출혐의 조사	1031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focusing on media and online discourse

Sung, Seh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emerging as a discursive means of neutralizing sexual violence crimes, focusing on online and the media. As an extension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is paper acknowledges some conflicts between two opposite discourses. On the one hand, it is miserable that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suffer from the perpetrator's counter-accus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inequitable that a man accused of sexual violence should defend himself with innocence. It is conducted under the hypothesis that the discourse of 'good men-the weak' and moved in the direction of reinforcing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The discourse is constructed and spread through which anti-feminist texts combine with the media and online spaces.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expands the influence of discourse based on the inter-textuality of online and the media. Recently, the online community has become a stronger agenda-setter than the media.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explores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that is composed of interactions with online space and the media. The research data are articles from four Korean major media companies reported for three years from 2018 to 2020, news comments from web portal for the articles and posts from two Korean online communities including user com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three of the four media companies construct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centered on the sexual assault perpetrator. In contrast, The Kyunghyang Shinmun constructs a counter-discourse centered on the victim of sexual assault. The media contributes to the amplification of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under the formal objectivity. For instance, under the formal objectivity of balancing both sides, the media cites both sources of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or report the statements of federal investigative agencies reflected on the perpetrator's standpoint.

Also, news comments on web portal construct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which the male figures occupy the discursive position of subjects. News comments not only allege the sexual assault victims, but also objectify women as untrustworthy beings. At the moment, the argument blaming all women would be difficult to justify, the discourse is constructed which separates from 'real victims' among all women.

Furthermore, the male online community (or the men-oriented community) establishes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that the men, which mean real victims, only can speak and criticize the women. Rather than fact-checking or logical arguments, it focuses on blaming the women without grounds to argue in the patriarchal premises the men want to believe in the first place. Although the community users utilize texts which believe in so-called "facts," actually they show a weak logical system that the "facts" are actually unfounded.

Thus, it is confirmed that the misogynistic discourse spreading into the male online communities reproduces and reinforces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through the media and online. The media and online adapt a conflicted approach as if sexual assault must be judged on the same line. At the same time, it is revealed that the discourse of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is an anti-feminism phenomenon which denies the reality of sexual assault grounded in gender based violence.

Keywords : online,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the media, anti-feminism, online community, web portal

Student Number : 2018-25498